

農產物流通改善對策

('84~'99)

1999. 8

농림부 자료실
등록번호: 6285
등록일: 2001년 6월 20일
기증:

農 林 部

목 차

I. 1984년	3
II. 1985년	23
III. 1989년	35
IV. 1990년	73
V. 1991년	105
VI. 1994년	131
VII. 1997년	167
VIII. 1998년	211
IX. 1999년	321

I. 1984년

農水產物流通構造의 問題點과 改善對策

1984. 12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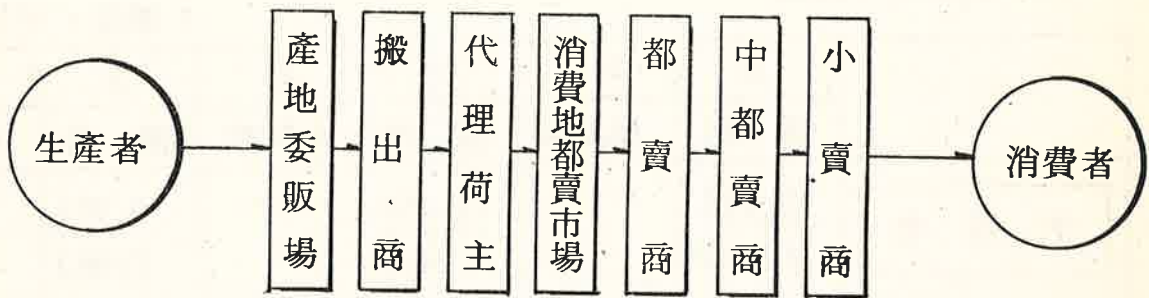
- I. 農水產物 流通現況及 問題點 9
- II. '84農水產物 流通構造 改善內容 17
- III. '85 推進計劃..... 22

I. 農水產物流通現況과問題點

水產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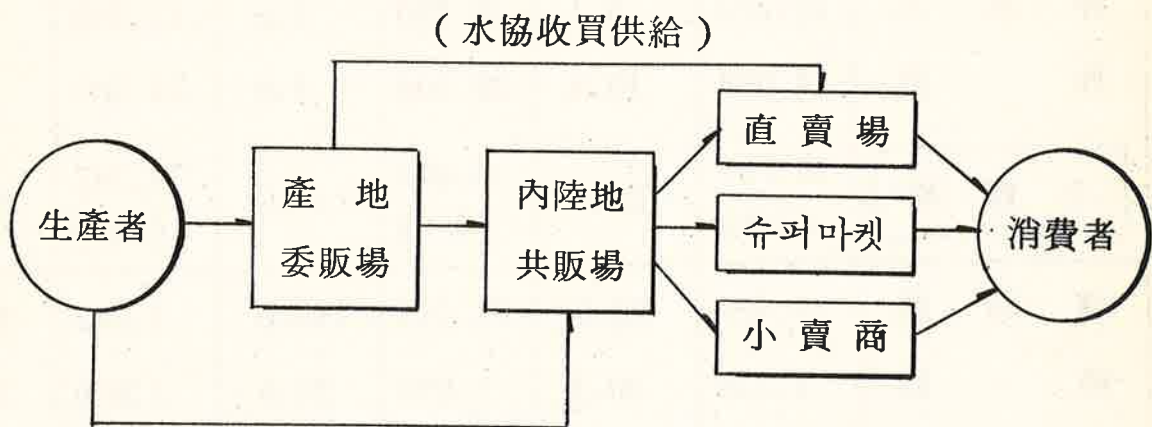
1. 流通段階 및 利潤

가. 一般出荷



○ 流通段階 : 8 段階, 流通利潤 : 70 ~ 110 %

나. 系統出荷



○ 流通段階 : 3 ~ 4 段階, 流通利潤 : 40 ~ 80 %

2. 流通追跡調査 事例

가. 調査對象

魚 種	單 位	調 查 區 間
고 등 어	20 kg	釜山 → 서울 鷺梁津 水産市場
갈 치	20	群山 → 서울 淸涼里 共販場
오 징 어	8	束草 → 서울 鷺梁津 水産市場

나. 段階別 利潤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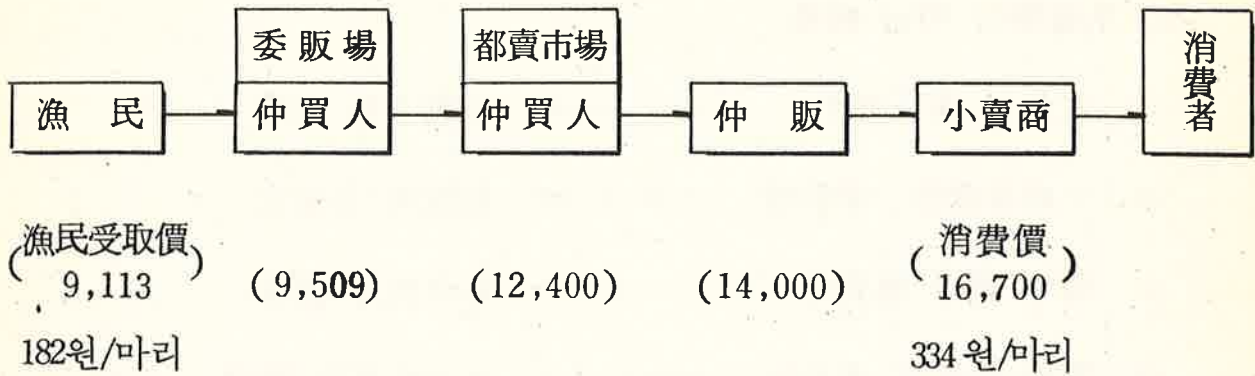
(單位 : 원 / 箱子)

	고 등 어		갈 치		오 징 어	
	價 格	利潤率	價 格	利潤率	價 格	利潤率
生産者	9,113 (182)		14,459 (240)		9,974 (498)	
委 販 場	9,509	4.3	15,300	5.8	10,390	4.2
仲 買 人	11,747	24.6	17,118	12.6	12,839	24.5
都 賣 市 場	12,400	7.2	18,000	6.1	13,500	6.6
仲 買 人	12,772	4.1	18,720	5.0	13,905	4.1
仲 販	14,000	13.5	20,000	8.9	14,500	6.0
小 賣 商	16,700 (334)	29.6	36,000 (600)	110.6	17,247 (862)	27.5
總 利 潤	7,587	83.3	21,541	149.0	7,273	72.9
經 費	2,756	30.3	3,696	25.6	3,690	37.0
實 利 潤	4,831	53.0	17,845	123.4	3,583	35.9

()는 마리당 價格임.

다. 段階別 經費內譯

고 등 어



〈 漁 民 〉 〈 委販場, 仲買人 〉 〈 仲 販 〉 〈 小 賣 商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委販手數料 : (3.1%): 295 원 · 揚陸費 : 68 · 陳列費 : 29 · 其他經費 : 4 <p>計 : 396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仲買人手數料 : (3%) 285 원 · 選別 및 結縛 : 241 · 箱子 : 316 · 얼음 : 245 · 上·下車費 : 120 · 輸送 : 535 · 公課金 및 通信費 : 41 · 上場手數料 (4.9%): 652 · 實利潤 : 456 <p>計 : 2,891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仲買人手數料 (3%): 372 원 · 實利潤 : 1,228 <p>計 : 1,600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上車費 : 140 · 輸送 : 200 · 얼음 : 220 · 店舖賃貸 및 管理 : 128 · 其他經費 : 184 · 實利潤 : 1,828 <p>計 : 2,700 원</p>
--	--	--	--

總 利 潤 率	經 費	實 利 潤
83.3 %	30.3 %	53 %

3. 水產物 流通의 問題點

가. 水產物이 지닌 特性

- 生産의 非任意性 ————— 計劃生産 至難
- 一時多獲性, 季節性 ————— 魚價의 不安定
- 強한 腐敗 變質性 ————— 鮮度維持 困難
- 魚種, 品質의 多樣性 ————— 去來規格化 隘路

나. 產地委販制度의 矛盾

- 產地 強制上場에 따른 弊端
 - 經濟環境變化에 따른 새로운 流通經路 開發 沮害
 - 流通의 劃一性 強要로 漁民 不利益 招來

다. 內陸地 共販場 直出荷體制 未洽

- 共販場 開設 日淺으로 販賣基盤 微弱
- 產地水協의 系統出荷 積極性 缺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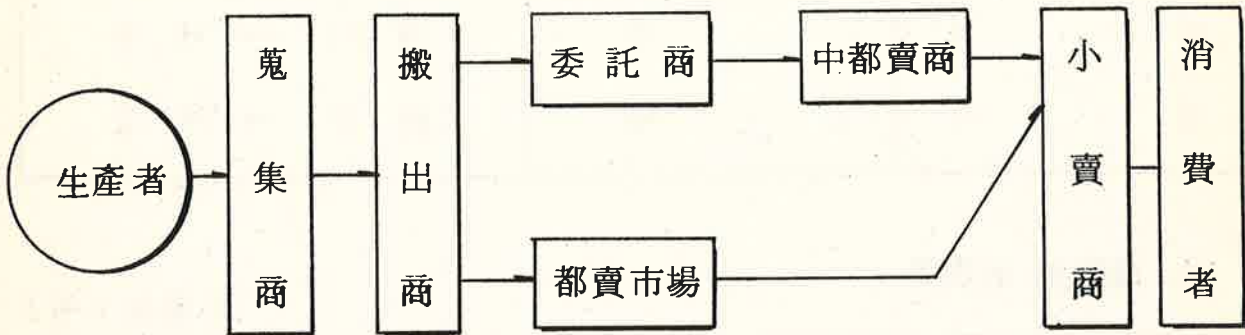
라. 都賣市場의 施設不足 및 陰性去來盛行

- 都賣市場이 12 個所에 不過, 委託商의 去來比率이 높음.
- 開設者에 依한 公共投資 不足
- 傳統的 商慣習에 密着, 非合理的 去來 恣行

農 產 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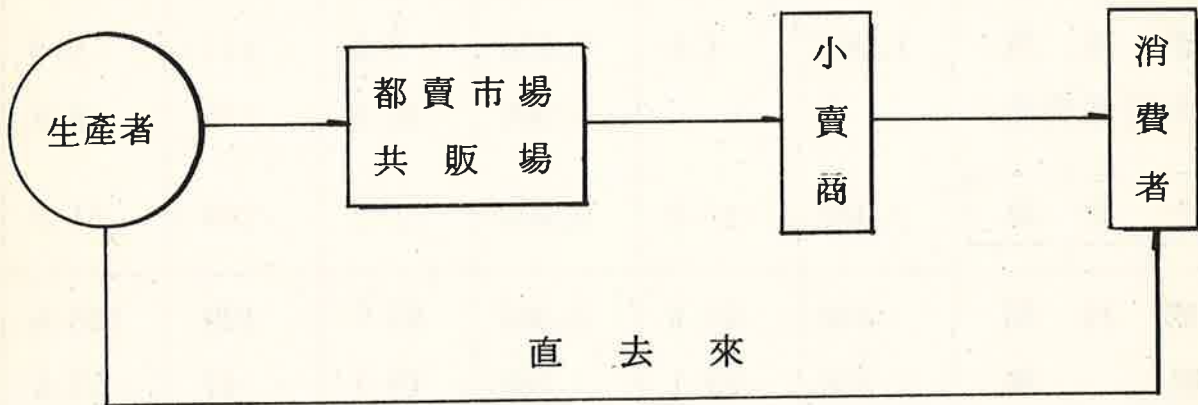
1. 流通段階 및 利潤

가. 一般出荷



○ 流通段階 : 5 ~ 6 段階, 流通利潤 : 50 ~ 120 %

나. 系統出荷



○ 流通段階 : 3 段階, 流通利潤 40 ~ 50 %

2. 流通追跡 調査事例

가. 調査對象

品 目	單 位	調 查 區 間
고 추	600 g	英 陽 → 서 울
마 늘	접	瑞 山 → 서 울
양 파	kg	務 安 → 서 울

나. 段階別 利潤率

(單位: 원)

	고 추		마 늘		양 파	
	價 格	利潤率	價 格	利潤率	價 格	利潤率
生 産 者	<u>1,600</u>		<u>6,000</u>		<u>121</u>	
蒐 集 商	1,770	6.3	6,400	6.7	163	34.7
搬 出 商	1,830	8.1	6,882	8.0		
委 託 商	1,900	4.4	7,400	8.6	175	9.9
中間都賣商			8,000	10.0	188	9.8
小 賣 商	2,400	31.2	9,300	21.3	250	51.2
總 利 潤	800	50.0	3,300	55.0	129	106.6
經 費	306	19.1	785	13.1	67	55.4
實 利 潤	<u>494</u>	<u>30.9</u>	<u>2,515</u>	<u>41.9</u>	<u>62</u>	<u>51.2</u>

다. 段階別 經費內譯

마 늘



蒐集商	搬出商	委託商	中都賣商	小賣商
원	원	원	원	원
選別作業費: 24	選別作業費: 8	委託手數料: 518	選別作業費: 12	選別作業費: 40
上・下車費: 6	上・下車費: 19		運搬費: 13	上・下車費: 6
運送費: 17	運送費: 55		減耗: 130	運送費: 25
諸雜費: 10	諸雜費: 10			減耗: 400
實利潤: 343	實利潤: 390		實利潤: 445	諸雜費: 10
				實利潤: 819
計 400 원	計 482 원	計 518 원	計 600 원	計 1,300 원

總利潤率	經費	實利潤
55 %	13.1 %	41.9 %

3. 農產物流通의 問題點

가. 農產物이 지닌 特性

- 氣象條件에 따른 豐凶의 差가 甚해 生産 및 供給의 不安定
- 生産의 季節性으로 價格變化에 對한 需給調節 困難
- 貯藏의 어려움으로 收穫期에 洪水出荷

나. 產地出荷體制 未洽

- 產地出荷組織 未備
- 出荷規模 零細로 中間商人의 出荷支配
- 農協의 系統出荷機能 微弱
- 產地集荷 및 貯藏施設 不足

다. 都賣市場施設未備로 機能脆弱

- 都賣市場施設의 零細性 및 落後로 迅速한 物量處理 困難
- 類似都賣市場의 都賣流通主導로 公正去來 期待難

라. 包裝規格化 未定着

- 段階마다 再選別 包裝으로 流通費用 增大
- 輸送過程中的의 物量減耗로 商品性 低下

Ⅱ. '84 農水產物 流通構造 改善內容

水 產 物

1. 流通段階 縮小

가. 生産漁民의 直出荷制度 實施 (去來段階 8 → 4 段階)

- 釜山, 束草, 仁川, 群山 4 個地域에 對하여 產地委販場 强制 上場制를 任意上場制로 轉換, 서울市內 都賣市場으로 直出荷可能 토록함. (水產廳 告示 改正 : '84.4.1)
- 自立組合에 于先實施後 漸次 對象地域 擴大計劃

나. 主要 消費地에 直販場 設置

- ('83) 1 個所 (清涼里) → ('84) 6 個所 (清涼里, 新沙洞, 大邱, 大田, 全州, 晉州)

2. 系統出荷 擴大

- 共販場別, 組合別 目標賦與로 積極 推進
- 實 積 : ('83) 38 千% → ('84) 65 千% (71 % 增)

3. 產地, 消費地間 去來動向 迅速傳達로 漁民의 價格對處能力提高

- 都賣市場, 共販場價格을 當日 無線으로 傳播
- 產地, 消費地間 晝시밀리設置 (17 個所)

農 產 物

1. 產地流通

가. 協同出荷組織育成: ('83) 4,500 個 → ('84) 7,600 個

- 優秀組織에 育成資金 291 億원 支援
- 營農技術教育 및 流通情報 集中提報
- 出荷組織生産物의 流通量擴大를 爲하여 都賣市場 上場手數料 1%引下

나. 主產地 集荷場設置擴大로 產地 流通支援

- 產地 競賣實施로 農民所得向上 및 中間商人 排除
- ('83) 30 個所 → ('84) 64 個所

다. 農協의 系統出荷機能 擴大

- 農民은 生産에 專念, 組合은 販賣專擔 體系構築
- 實 積: ('83) 6,202 億원 → ('84) 8,300 億원 (34 %增)

優 秀 事 例

〈京畿, 漣川, 靑山單協 協同出荷班〉

- 生産, 出荷計劃을 協議會에서 決定
- 收穫後 一定時期(午後8~9時), 一定場所에 共同運搬(오이, 참외等)
- 組合車輛蒐集: 龍山農協共販場, 仁川都賣市場에 販賣
- 다음날 精算完了, 農家別 通帳으로 販賣代金 支給

2. 消費地 流通

가. 公營都賣市場 建設擴大

- 可樂洞 都賣市場 : 現在 99 % 工程 ('85.2 開場)
- 大田 : 建築工事中, 大邱 : 敷地買入中

(效 果)

- 競賣價格을 통한 公正去來 誘導
- 去來段階 縮小로 流通費用節減 (6 → 4 段階)
- 農漁民의 受取價格 提高 및 販路擴大

나. 主要消費地에 直販場 設置

- 農水協 및 農開公 直販場 增設

區 分	'83	'84
個 所 數	3	13

- 輸入農產物 小包裝 供給擴大 (고추, 마늘, 양파)로 價格 安定 圖謀
- 直販場運營으로 物價安定 寄與
(隣近市場 價格對比 10 % 內外 廉價供給)
- 生産者 團體의 物量吸收 容易
(協同出荷班 直販코너 設置)

다. 產地 消費地 直去來 積極推進

- 產地 와 아파트團地 및 加工業體 等 大量需要處와 直去來
- 郡 및 農協을 통한 直去來 斡旋 (자매결연 等)
- 直去來實績 : ('83) 69 千噸 → ('84) 148 千噸 (115%增)

라. 김장菜蔬 需給圓滑을 爲한 김장市場 開設

- 農水産部の 김 장狀況室 設置로 產地價格支持 및 消費地 價格 安定 誘導
- 김 장市場 開設現況

區 分	行政機關	農 協	農 開 公	計
個所數 (서울)	300(90)	205(47)	5(1)	510 (138)

3. 流通豫告制 및 流通情報 傳達

가. 過剩, 過小生産을 防止하기 爲한 豫告制 實施

- 農産物, 畜産物의 栽培意向 및 飼育動向의 調査結果 傳播로 生 産調節 誘導

나. 主要都賣市場 價格動向을 每日 全國에 傳播

- 農水協 系統組織 및 KBS-TV 活用

4. 農水產物 規格化 擴大推進

가. 오이, 호박, 복숭아, 딸기 등 37個 主要品目の 標準去來單位
設定 ('84.3)

- 都賣市場 및 共販場에서 優先販賣 實施
- 農水產物の 流通能率向上 및 商品性 提高

나. 쌀, 보리쌀 등 穀類에 對해 追加實施('85)

5. 流通教育으로 專門人力養成

가. 農民, 市場從事者에 對한 流通教育 實施

- 農民, 單協任職員 (175千名) : 共同出荷, 農水產物 規格化 等
- 市場從事者 (2,800名) : 公正去來秩序 確立 等

나. 可樂洞 都賣市場 入住豫定者 教育

- 競賣士, 仲買人 等 2,200名
- 時 期 : '84.12 ~ '85.1
- 教育擔當 : 精神教育 — 새마을運動中央本部
流通實務教育 — 農漁村開發公社 (專門家 招請)

Ⅲ. '85 推 進 計 劃

1. 持續的인 流通從事者 教育訓練 強化

- 國內·海外研修機會擴大(可樂洞 都賣市場內에 農水產物 流通 教育院 設置)
- 日本, 臺灣에 競賣士 8名派遣 訓練

2. 農·水·畜協 流通業務 關聯組織 再整備

- 現流通關聯組織을 再檢討하여 農·水·畜協의 系統出荷가 擴大 되도록 流通機能을 強化

3. 規格出荷를 爲한 對農漁民 支援擴大

4. 主要都市에 公營都賣市場 建設擴大

- '85 : 仁川, 光州, 清州 ('84 : 大田, 大邱)
- 道廳所在地 以外 主要 中小都市까지 漸次擴大

5. 流通情報 蒐集分散 “온라인” 體系構築

- 郡統計出張所와 農水產部間 “온라인” 化

6. 農水產物 流通政策審議會 設置

- 政策開發(學界, 言論界, 農漁民 等 參與)
- 效率的인 推進方案 樹立推進

II. 1985년

農水產物流通改善施策

1985. 4

農水產物流通改善施策

1. 農水產物 流通與件的 變化

가. 都市人口 急增으로 流通量 增大

都市人口 : ('60年) 1千4百萬 → ('80年) 3千萬

나. 國民所得 向上으로 食品消費 高級化 (果菜類, 肉類 消費增加)

('70年) : 菜蔬 10 kg, 肉類 7 kg → ('80年) : 菜蔬 16 kg, 肉類 11 kg

다. 自給營農 (單純營農) → 商業營農 (多樣性, 規模擴大)

2. 農水產物이 지닌 特性으로 因한 流通上의 어려움

가. 腐敗性

나. 氣象與件에 따라 豐凶이 심하여 需給調節이 어려움

다. 生産의 季節性에 의한 洪水出荷로 價格變動이 심함.

라. 國民食生活과 直結되기 때문에 社會的 重要性 (價格, 物量, 質)

3. 現 農水產物 流通實態 및 問題點

- 產地 : 生産 및 出荷規模 零細로 產地中間商 去來主導
- 消費地 : 法定 都賣市場 規模 및 施設落後로 類似 都賣市場 去來主導
- 流通助成 : 標準去來單位 未定着으로 流通能率 低位

[流通段階 複雜하고 流通費用 過多發生]

※ 流通段階

- 農産物 : 生産者 → 蒐集商 → 搬出商 → 委託商 → 中間都賣商
→ 小賣商 → 消費者 (5 ~ 6 段階, 마진 : 50 ~ 120 %)
- 水産物 : 生産者 → 産地委販場 → 搬出商 → 代理荷主
→ 消費地 都賣市場 → 都賣商 → 中都賣商 → 小賣商
→ 消費者 (6 ~ 8 段階, 마진 : 70 ~ 110 %)
- 畜産物 : 生産者 →

家畜市場
蒐集搬出商
産地組合

 →

産地屠畜場
都賣市場
共販場

 → 精肉店 → 消費者
(4 ~ 5 段階, 마진 : 12 ~ 24 %)

4. 流通改善 方向

가. 基本方向

- 産地 出荷體制 強化로 中間商人 段階縮小
- 公營 都賣市場 建設로 競賣制에 依한 公正去來 確立
- 包裝規格化 定着으로 流通能率 提高
- 流通情報 迅速傳達로 農漁民 販賣能力 向上

나. 細部改善施策

- 1) 産地 流通機能 擴充
 - 協同出荷班 育成
 - 組合販賣事業 擴大
 - 産地 流通施設 擴充

2) 消費地 流通

- 公營 都賣市場에 依한 大量物量 迅速處理로 生産者와 消費者 保護
- 主要消費地 直販場 運營으로 隣近地域 物價安定에 寄與
- 產地 消費地間 直去來 推進으로 流通段階 縮少

3) 流通 助成

- 農水産物 標準規格 早期定着
- 流通情報의 內實化 推進
- 流通豫告制 定着으로 計劃生産 誘導 (需給安定)
- 收買備蓄 擴大
- 流通從事者 敎育으로 資質向上
- 流通組織 補強 (地方自治團體 및 農·水·畜協)

5. 流通事業 推進實績 및 向後計劃

가. 產地 流通改善事業

1) 協同出荷班 組織 育成

- 組織計劃 : ('84) 7,700 → ('85) 10,000 → ('86) 12,000個
- 育成施策
 - 資金支援 : ('84) 291 → ('85) 300 億원
 - 營農技術 및 流通情報 集中提供

2) 農·水協의 販賣機能 強化

- 買取事業 持續推進 : ('85) 20 億원
- 販賣損失 補填實施 : 40 億 支援 (農協 30 億, 水協 10 億원)

3) 產地 流通施設 擴充

○ 產地 集荷場

- 既 存 : 65 個所
- '85 : 30 個所
- 向後計劃 : 單協當 1 個所 目標로 擴大支援

○ 輸送車輛

- 既 存 : 1,214 台
- '85 : 40 台
- 向後計劃 : 單協當 2 台目標로 擴大支援

○ 水產物 委販場

- 既 存 : 17 個所
- '85 建設 : 6 個所
- '86 計劃 : 7 個所

○ 水產物 綜合魚市場

- 既 存 : 1 個所 (忠武)
- '85 建設 : 1 個所 (木浦)
- '86 計劃 : 3 個所

나. 消費地 流通改善事業

1) 公營 都賣市場 建設擴大

- '84 年
 - 可樂洞 都賣市場 完工
 - 大邱, 大田 ('85 竣工 豫定)
- '85 年
 - 仁川, 光州, 水原, 清州, 蔚山
- '86 年 計劃
 - 全州, 春川, 馬山, 浦項, 濟州
- '87 以後 : 中小都市에 擴大建設

2) 主要消費地 直販場 建設擴大

- 既 存 : 13 個 (農協 5, 水協 6, 農開公 2)
- '85 計劃 : 10 個 (農協 6, 水協 1, 農開公 3)

다. 計劃生產體制 確立

1) 流通豫告制 實施

- 對象品目 擴大
 - '84 : 5 個品目 (고추, 참깨, 땅콩, 소, 돼지)
 - '85 : 8 個品目 (양파, 마늘, 닭 追加)
- 分期別 豫告制 實施로 過大, 過小生產 止揚

2) 適正生産 誘導

- 地域別 生産調整 協議會를 거쳐 適正生産 誘導
- 契約栽培 擴大實施

3) 豊・凶을 對備한 農・水産物 需給調節

- 農作物에 對한 輸出市場 確保 (양과, 사과등)
- 凶作時 消費節約, 代替品目 活用등으로 가능한 輸入抑制
- 價格豫示制 實施로 輸入農産物 抑制 및 國內供給 擴大 (참깨, 땅콩)

라. 收買備蓄事業 擴大推進

區 分	'84				'85			
	物 量	金 額			物 量	金 額		
		計	農安基金	農水協資 金		計	農安基金	農水協資 金
計	千% 3,709	百萬원 444,182	209,191	234,991	千% 3,855	百萬원 492,668	229,297	263,371
政府備蓄	79	83,606	83,606	-	55	110,659	110,659	-
民間備蓄	930	158,814	62,168	96,646	991	135,540	56,450	79,090
出荷調整	2,700	201,762	63,417	138,345	2,809	246,469	62,188	184,281

마. 流通助成事業

1) 標準去來單位 定着事業

- 既存運用品目 : 37 個 品目 (農產物 23, 水產物 10, 畜產物 4)
- '85 擴大計劃 : 穀類 9 個品目 追加豫定
- 示範事業 支援 : ('84) 15 → ('85) 26 億원

2) 流通情報 傳達體系 確立

- 既存 傳達體系
 - 系統組織 利用傳達
 - 農水產部 統計電算網 利用傳達
- '85 計劃 : 大邱, 大田에 中繼施設 設置로 市·郡單位까지
統計電算網 온라인化

3) 農水產物 小包裝센터 建設 : 農開公 1 個所

Ⅲ. 1989년

農水產物流通構造改善

1989. 3

目 次

I. 流通의 意義와 役割	41
II. 農水産物流通의 特性과 問題點	42
III. 主要農水産物の 流通經路와 流通마진	44
IV. 農水産物流通改善 推進狀況	47
1. 政府介入의 必要性	47
2. 流通改善體制 整備狀況	47
3. 重點 推進方向	48
4. 細部推進施策	49
가. 產地流通改善	49
나. 消費地流通改善	51
다. 流通助成 機能強化	53
라. 加工産業育成	55
V. 今後 流通改善 推進方向	56
VI. 參 考	64

I. 流通의 意義와 役割

1. 流通의 意義

- 商品이 生産者로부터 消費者에게 이르는 過程에서 일어나는 一連의 經濟行爲, 즉 生産者로부터 消費者에로의 商品 및 서비스의 흐름
- 流通活動은 그 機能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各種 效用을 增大시키는 經濟活動임.

2. 流通의 役割과 重要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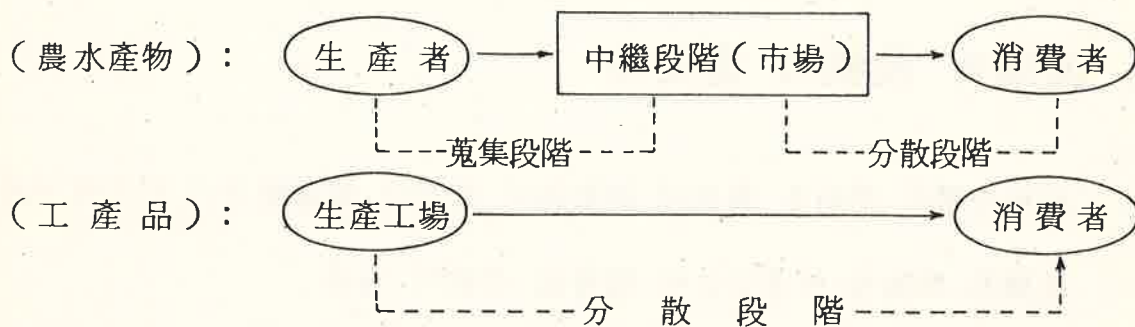
- 經濟全體의 需給을 適切히 調節하여 資源의 最適配分이 이루어지게 하고, 經濟的 均衡을 이룩하는데 窮極的 目的이 있음.
 - 生産과 消費의 連結을 통한 需給調節機能 및 價格形成을 통한 資源配分機能 遂行
- 經濟成長과 國民所得의 增大에 따라 流通서비스에 대한 改善과 流通需要의 質的·量的 重要性 增大
 - 都市化에 따른 流通의 廣域化, 所得增大에 따른 食品消費構造의 多樣化, 高級化 → 流通需要增大
- 특히 우리나라의 境遇 都·小賣機關의 零細性, 流通經路의 複雜, 多端性, 流通機關의 前近代性 등에 따라 流通改善이 時急

II. 農水產物 流通의 特性과 問題點

1. 農水產物 流通의 特性

— 工產品에 비해 本質적으로 流通段階가 많고 流通마진이 높음 —

- 生産이 自然條件에 直接的 影響을 받으며, 季節性, 腐敗性, 부피성을 띤.
- 長期保管, 貯藏이 어려우며, 取扱하기 不便하여 流通費用 過多
- 標準化, 等級化가 困難하고, 去來條件이 複雜하며 零細한 多數生産者 存在로 市場交涉力이 弱함.
- 需要·供給이 價格變化에 非彈力的임.



2. 農水產物 流通改善 問題點

가. 供給構造 및 流通上의 脆弱性

- 生産의 季節性, 腐敗, 變質性 등으로 新鮮度 維持 困難
- 製品의 標準化, 等級化困難 및 去來形態나 條件이 複雜
- 生産, 出荷 (共同) 機能이 未洽하고, 非 專門的인 零細多數 商人 存在로 未來豫測 어려움
- 流通施設 老朽 및 不足으로 物的 流通費用이 過多하고 都賣市場 機能의 脆弱
- 小賣機構의 後進性과 流通從事者의 資質이 낮음.
- 價格, 去來動向 등 流通情報나 專門的 知識의 蒐集·分散體系 未洽

나. 短期的 解決의 어려움

- 農水産物의 特性과 流通構造의 脆弱性으로 인해 短期的 果敢한 解決은 어려움
- 國民經濟安定次元에서 問題 認識 努力 必要
 - 小賣市場의 大型化, 近代化는 零細 多數 商人의 生計危脅
- 流通制度는 傳統的 國民의 商去來 慣習과 關聯되어 있어 急速한 改善은 社會的 問題 惹起

다. 流通費用과 마진에 대한 認識問題

- 流通마진이 높은 것이 바로 中間商人의 利潤이 많은 것으로 착각
 - 流通마진은 流通諸費用+流通參與者의 利潤으로 構成
 - 段階別 流通機能과 서비스를 考慮않은, 無條件的인 中間商人의 排除 또는 流通段階 縮小는 流通에 새로운 非能率과 浪費招來
 - 따라서 流通마진에 대한 올바른 認識은 不必要한 流通機能과 서비스에 대하여 過多하게 發生하는 流通費用을 줄이는 方向으로 接近해야 함.
 - 流通마진이 낮을수록 流通效率이 높은 것으로 認識
 - 直去來에 의한 마진率 低下도 去來의 混雜과 浪費로 社會的 費用 誘發 憂慮
 - 多數의 中間商人의 介入이 높은 流通마진을 招來
 - 經濟發展, 專門化에 따른 消費者慾求의 增大로 中間商人은 增加
 - 누가 流通業者의 機能과 서비스를 擔當해도 流通費用 發生
 - 높은 流通마진이 農家受取價格을 低下시킨다는 認識
 - 價値와 費用을 農業生産에 附加하므로 반드시 農家受取價格을 低下시키지 않음
 - 流通費가 높다는 것은 中間商人의 過多 介入보다는 生産者와 消費者의 격리를 意味
 - 經濟가 發展한 先進國일수록 流通마진이 높음
- ⇒ 商品價値와 物量의 變動, 價格變動 등을 綜合的으로 考慮한 流通의 概念으로 認識轉換 必要

Ⅲ. 主要 農水産物の 流通經路와 流通마진

1. 流通經路의 多樣性

- 農水産物の 流通經路는 매우 複雜하고 多段階로 되어 있으며, 流通마진은 品目, 分類基準, 分類方法 및 調査機關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음.
- 一般的으로 農産物の 流通段階는 5~6 段階이나, 區別이 段階別로 確實히 되는 것은 아니며 兼하고 있는 境遇도 많음.

가. 米穀(別表 1)

- 米穀의 流通經路는 商人組織을 통한 流通經路, 農協組織을 통한 流通經路, 政府管理糧穀의 流通經路로 대별
 - 商人: 生産者 - 產地蒐集商 - 產地搬出商 - 中央都賣市場(都賣商) - 中間都賣商 - 小賣商 - 消費者
 - 農協: 生産者 - 產地農協 - 共販場 - 販賣店 - 消費者
 - 政府: 農協共販場 - 地區組合 - 一般小賣商 - 消費者

나. 靑果物(別表 2)

- 商人
 - 生産者 - 產地蒐集商 - 產地搬出商 - 委託商 - 中間都賣商 - 小賣商 - 消費者
 - 生産者 - 蒐集商 - 產地搬出商 - 仲買人(法定都賣市場) - 中間都賣商 - 小賣商 - 消費者
- 農協
 - 生産者 - 產地農協 - 農協共販場 - 指定去來人(仲買人) - 中間都賣商 - 消費者

다. 畜産物 (別表 3)

- 生産者 - 産地蒐集商 - 屠畜場 (都賣市場) - 精肉店 (直賣場)
- 消費者
- 輸入肉 - 畜協畜産物共販場 - 直賣場 (精肉店) - 消費者

라. 水産物 (別表 4)

- 鮮 魚
 - 生産者 - 仲買人 (産地委販場內) - 搬出商 (産地仲買人) - 仲買人 (消費地都賣市場內) - 中販 (中間都賣商) - 小賣商 - 消費者
 - 生産者 - 蒐集商 (産地) - 類似都賣商 (消費地) - 小賣商 - 消費者

2. 流通費用과 流通마진

가. 品目別 現況

- 米穀 (一般米)의 境遇 都賣市場 經由時, 總流通마진率은 11.6 %
 - 蒐集段階 3.6, 都賣段階 1.8, 小賣段階 6.2
- 青果物의 境遇, 總流通마진率은 44.7% (流通費用 23.2%, 利潤 21.5%)
 - 菜蔬類 (56.7%) : 蒐集段階 36.0%, 分散段階 32.4%
 - 양념類 (41.0%) : " 22.8, " 23.5
 - 果實類 (42.1%) : " 19.5, " 28.0
- 畜産物의 境遇 (소, 쇠고기)는 14.2% (流通費用 11.3%, 利潤 2.9%)
- 水産物의 境遇 명태 60.8%, 고등어 57.4%, 갈치 57.2%,
其他 15 ~ 50% 水準임.

나. 流通마진分析(靑果物)

- 流通段階別 마진率은 靑果物의 境遇 品目, 地域에 따라 차이가 많이나나, 平均的으로 高추(33~36%), 마늘(36~39%), 양파(52~52%), 사과(50~55%), 배(48~52%)水準임.(別表5)
 - 流通마진을 構成하는 主要 要素로는 包裝費, 精選作業費, 運賃, 上下車費, 委託手數料, 保管貯藏費, 減耗, 利潤, 其他 諸費用임.
 - 靑果物의 境遇 販賣方法은 個別出荷가 90%를 차지하고, 都賣市場 去來量도 60%水準이며, 都賣市場 機能이 脆弱하고 公正去來도 定着되지 않으며, 特히 크기, 品質, 모양, 新鮮度 및 等級 賦與主體가 商人인 點, 小賣機能이 脆弱한 點 등으로 流通마진이 他品目에 비해 多少 높은 水準임.
 - 그러나 靑果物은 特性上 當然히 流通마진이 높으며 (先進國) 流通마진은 市場構造, 價格變化, 流通施設, 流通技術, 社會間接資本, 社會經濟體制 등 流通外的 要因에 의해 影響을 받으며, 流通마진 節減에 限界가 있음.
 - 어느나라의 境遇에나 각기 特性에 알맞는 流通經路와 마진이 存在. 우리나라의 流通經路와 마진은 外國에 비해 複雜하거나 높은 편이 아님(別表6)
- 流通마진率('82) : 韓國(50~70%), 日本(50~80%), 臺灣(50~70%), 美國(50~90%)

Ⅳ. 農水產物 流通改善 推進狀況

1. 政府介入의 必要性

- 公益性이 强하고 投資規模가 방대하여 民間部門 投資不能
 - 都賣市場, 共販場 建設
- 投資에 對한 受惠者가 限定되어 있지않아 個人投資를 期待할 수 없음.
 - 流通情報, 研究 調查事業, 流通教育事業
- 流通改善을 위해 반드시 必要하나, 事業收益性이 낮거나 認識不足으로 落後된 分野 存在
 - 貯藏, 保管, 加工施設
- 公正去來 秩序確立과 國民經濟 安定을 위해 公權力이 必要
 - 法律의 制定, 制度改善 등

2. 流通改善體制 整備狀況

- '60年代: 農業生産增加에 重點 支援하였으며 流通部門에 대한 投資 支援 未洽
- '70年代: 流通部門의 重要性을 認識하였으나 協同組合中心의 流通支援 實施, '70年代 後半에 와서 法令整備, 綜合都賣市場 建設 計劃樹立 등 推進
 - 1976: 農水產物 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 制定 및 綜合都賣市場 建設計劃 樹立
- '80年初: 市場機能의 重要性 勘案, 大規模 農水產物 綜合都賣市場 建設(1983. 서울) 및 產地協同出荷 集中支援

○ '80年代 後半

- 產地共同出荷體系 強化, 消費地 公營都賣市場 建設, 流通助成 機能強化
- 農水產物 流通公社 機能 改編('86)
 - 公社法 改正(農漁村開發公社 → 農水產物 流通公社), 資本金增額(100 → 800 億원)
 - 流通關聯組織과 機構의 補強 等
- 韓國食品開發研究院 設立('88.5)
 - 農流公 綜合食品研究院과 韓國科學技術院 食品研究部 統合
 - 農水產物의 處理・貯藏・加工 技術開發研究 및 普及推進

3. 重點 推進方向

- 產地 共同出荷 基盤 擴充으로 市場對應力 提高
 - 共同出荷 實踐組織으로 協同出荷班 育成
 - 單位農協의 共同選別, 蒐集, 輸送 等 共同出荷 支援機能 強化
- 圈域別 公營都賣市場網 構築
 - 首都, 中部, 湖南, 嶺南 圈域別로 據點都賣市場 建設
 - 全額 公共投資로 運營의 公益性 確保
 - 都賣市場 및 共販場의 建設擴大로 公正去來 秩序 確立

○ 流通助成機能強化

- 生産調整協議會 設置 運營으로 自律的 生産調整 體制 確立
- 規格出荷 促進 및 市場情報의 內實化
- 農水產物流通教育의 持續的 擴大, 內實化
- 農水產物 價格安定 基金運營 擴大

○ 加工食品開發과 品質向上

- 韓國食品開發研究院의 設立 育成
- 加工食品 標準化(KS) 事業의 擴大 推進
- 生産者 및 生産者團體의 加工産業 參與와 傳統食品 開發

4. 細部推進施策

가. 產地流通改善

1) 協同出荷班 育成

- 生産, 出荷調節 및 共同出荷 實踐 組織體로 育成
- 主產地 中心의 마을單位(20 ~ 50戶)로 品目別 育成

	'83	'86	'87	'88	'89(P)
組 織 數	4,500 個	10,346	11,708	11,000	11,000
參與農家數	95 千戶	225	271	270	270
資金支援	30 億원	340	440	500	500

— 生産, 出荷調節 및 產地 共同出荷 實踐 組織體로 育成 —

2) 產地流通施設 擴充

○ 集荷場, 改良貯藏庫, 輸送車輛, 鐵浮船 등 共同利用 施設支援

	'88 까지	'89 計劃		備 考
		事業量	支援額	
集 荷 場	168 個所	15	百萬원 559	補助 70 %
改良貯藏庫	106	12	420	補助 70 %
輸 送 車 輛	2,020 臺	204	907	補助 50 %
鐵 浮 船	4 隻	2	90	補助 30 %, 融資 50 %
計			1,976	

今後推進計劃

○ 協同出荷班 中心의 마을單位 共同作業場, 小中型 輸送車輛 等 支援
強化

	'89 (追更)		'90		'91		'92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共同作業場	個所 2,750	百萬원 6,738	2,750	6,738	2,750	6,738	2,750	6,738
共同貯藏庫	2,750	96,250	2,750	96,250	2,750	96,250	2,750	96,250
輸 送 車 輛	臺 2,750	10,010	2,750	10,010	2,750	10,010	2,750	10,010
計		112,998		112,998		112,998		112,998

나. 消費地 流通改善

1) 公營都賣市場 建設

- 首都, 中部, 湖南, 嶺南 圈域別로 公營都賣市場 建設
 - 據點市場 9 個所, 補完市場 6 個所
- 全額 公共投資로 運營의 公益性 確保
- 既存都賣市場, 類似市場吸收 移轉

長期計劃

	據 點 市 場	補 完 市 場
首 都 圈	서울(3), 仁川(1)	水原, 春川
中 部 圈	大田(1)	清州
湖 南 圈	光州(1)	全州
嶺 南 圈	釜山(2), 大邱(1)	蔚山, 昌原
計	6 大都市 (9 個所)	6 個所

推進狀況

○ 開場運營

- 서울가락동 (敷地 166 千坪, 建物 60, 事業費 933 億)
- 大 田 (" 22 " 6, " 85)
- 大 邱 (" 23 " 5, " 63)
- 清 州 (" 10 " 4, " 51)

○ 建設中

— 光州(敷地 14千坪,建物 6千坪,事業費 57億)

— 蔚山(" 12 , " 5 , " 63)

○ '89 推進:釜山,水原,全州

開場效果

- 大量 迅速 流通의 實現으로 流通의 效率化
- 競買制度 確立으로 公正去來 秩序確立
- 指定都賣人의 出荷促進 強化와 生産者 販路保障
- 類似都賣市場 機能吸收, 市場機能의 吸收

2) 中小都市 直・共販場 建設支援

- 産地農協의 流通機能 活性化
- 公正去來와 商去來秩序 確立으로 中小都市 地域의 流通改善 先導

支援計劃

	'89		'90		'91	
	物 量	金 額	物 量	金 額	物 量	金 額
共 販 場	個所 3	百萬元 600	5	1,330	6	1,596
直 販 場	7	700	6	600	5	500
計	10	1,300	11	1,930	11	2,096

3) 農產物 集配센터 設置支援

- 大都市의 大量需要處와 契約栽培, 直去來, 直接供給 等으로 流通段階縮小
- 消費地流通의 據點役割로 流通改善의 示範事業
- 都賣市場에 대한 競爭的 流通經路 開發
- 主要施設 : 냉장, 冷凍倉庫, 物品保管, 配送施設 等

'89 支援計劃 : 서울시 양재동 1 個所

	規 模	單 價	總 事 業 費	支 援 基 準
地 坪	3,400	1,050 千원	3,570 百萬원	自擔
建 物	1,700	1,100	1,870	國庫 50%, 融資 20%
計			5,440	

- 長期的으로 釜山, 大邱 等 大都市 地域으로 擴大

다. 流通助成 機能強化

1) 農水產物 規格出荷 및 包裝改善

- 標準去來單位의 制定施行 (農水畜產物 46 個品目)
- 規格出荷 示範事業의 推進으로 流通能率向上과 商品性 提高
 - 包裝資材費 (40%) : 복숭아, 딸기, 참외, 토마토, 감자, 당근 等
 - 規格出荷先渡金融資 (60%) : 풋고추, 양파, 가지, 마늘, 건고추 等

2) 流通情報의 收集·分散 機能의 強化

- 主要 農水產物 92 個品目の 產地·消費地 去來價格 去來量 等 調查
 - 農水產統計 電算網을 통하여 入力
 - 自動應答電話(134 回線), 農水畜協電算網 및 各種 情報紙 活用 傳播

3) 農水產物流通教育 實施

- 農流公率下 教育院에서 組織的이고 體系的인 流通專門 教育實施
- 流通關聯 公職者, 市場從事者 等('89 : 1,900 名)

4) 生産調整協議會의 設置 運營

- 過剩·過小生産을 防止하고 適正生産體制 確立
- 마을, 邑面, 市郡, 中央 等 各級別로 協議會 構成
- 作目別 參與農家 總會에서 農家協議에 의한 栽培面積 自律調整
 - 過去栽培面積, 植付意向 等 勘案 自律的 調整
 - 對象品目 : 고추, 마늘, 양과, 무우, 배추 等

5) 農安基金의 擴大造成

- 流通改善과 價格安定的 實效性 保障을 위한 農安基金 擴大造成
('89 運營計劃 別添 7)
 - ('88) 4,700 億 → ('92 까지) 1 兆원 으로 造成
- 流通額의 20 % 水準까지 擴大支援

라. 加工産業育成

－ 農水産物の 새로운 需要開發과 附加價値 提高로 農家所得増大와 食品産業 發展 圖謀 －

1) 傳統食品開發 示範事業 (1 段階)

○ 地域特性에 알맞는 傳統食品開發 事業支援

	'89		'90		'91	
	物 量	金 額	物 量	金 額	物 量	金 額
	個所	百萬원				
中 規 模	9	356	10	445	14	623
小 規 模	17	384	16	384	20	480
計	26	740	26	829	34	1,103

○ 고추장, 유자차, 감식초등 地域特性에 알맞는 製品開發支援 強化

○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法 制定推進

－ 關係部處와 協議, 財政, 金融, 稅制上的 支援 強化

• 許可節次의 簡素化, 部處間 業務調整등 推進

2) 加工産業育成 (2 段階)

○ 傳統食品開發 事業을 育成, 發展시켜 一般加工産業으로 擴大

3) 農水畜産 加工食品 標準化 (K S) 事業 實施

○ 加工食品의 品質向上과 生産性 提高로 消費者 生産者 同時保護

○ 韓國食品開發研究院을 中心으로 技術支援, 研究強化등 本格 推進

○ '89 計劃 : 토마토케찹, 과실통조림加工技術, 과당, 醱酵類, 어묵, 된장등

V. 今後 流通改善 推進方向

— 現行體制을 改善, 補完 發展시켜 나가되 重點的으로 다음 事項 支援 —

1. 基本方向

- 農水産物價格은 農水産物의 需要와 供給에 의해 決定되도록 하며, 이를 위한 有效競争을 促進시켜 流通經路를 體系化하고 公定去來를 誘導
- 農水産物價格을 安定시킴으로써, 物價安定에 寄與하고, 國民經濟의 安定的成長에 이바지하며, 이를 위한 不必要한 流通段階를 除去하여 流通費用을 節減
- 流通參加者의 能率向上을 위하여 規模의 適定化誘導, 流通參加者의 教育을 통하여 經營의 合理化推進, 流通速度의 迅速과 流通期間의 단축, 地域發展을 위한 流通施設의 均衡的 配置
- 政府의 投資는 民間部門의 公定한 去來를 誘導하기 위하여 社會 間接資本 形成에 重點支援
- 地方自治團體에서 流通業務의 能動的 對處 誘導
- 良質의 農水産物을 適正한 價格으로 適期適所에 效率的으로 流通시키며, 産地와 消費地로 나누어 段階的으로 解決하기 쉬운것부터 年次的으로 改善. 불요불급한 流通費用의 節減

2. 重點 支援事項

가. 流通改善 推進體系의 整備

- 農林水産部, 市道, 農流公, 生産者團體의 機能強化

나. 流通改善 示範事業의 實施

- 示範集配센터運營, 標準化 示範事業推進
- 새로운 技術 導入

다. 流通情報 및 調查業務의 補強

- 流通公社 機能의 活性化
- 農水産統計施設 및 裝備補強, 消費地 市場參與增大
- 農業觀測 및 流通豫告 機能 強化

라. 流通教育 訓練事業의 本格的 推進

- 가락동 都賣市場과 教育院의 連繫
- 중매인 등 流通從事者 教育強化
- 海外先進地視察로 專門知識 強化

마. 流通施設에 대한 支援強化

- 流通施設 投融資(國費·地方費)擴大 支援
- 市場新設, 改補修에 必要한 資金支援
- 綜合都賣市場管理 및 參與方案 마련
- 貯藏加工業 支援과 併行推進
- 委販場, 綜合魚市場 등 產地流通施設의 擴充(水産物)

바. 農水産物流通秩序의 維持

- 公正去來 秩序 定着
- 產地去來 및 委販制度 改善(水産物)

사. 加工産業의 育成支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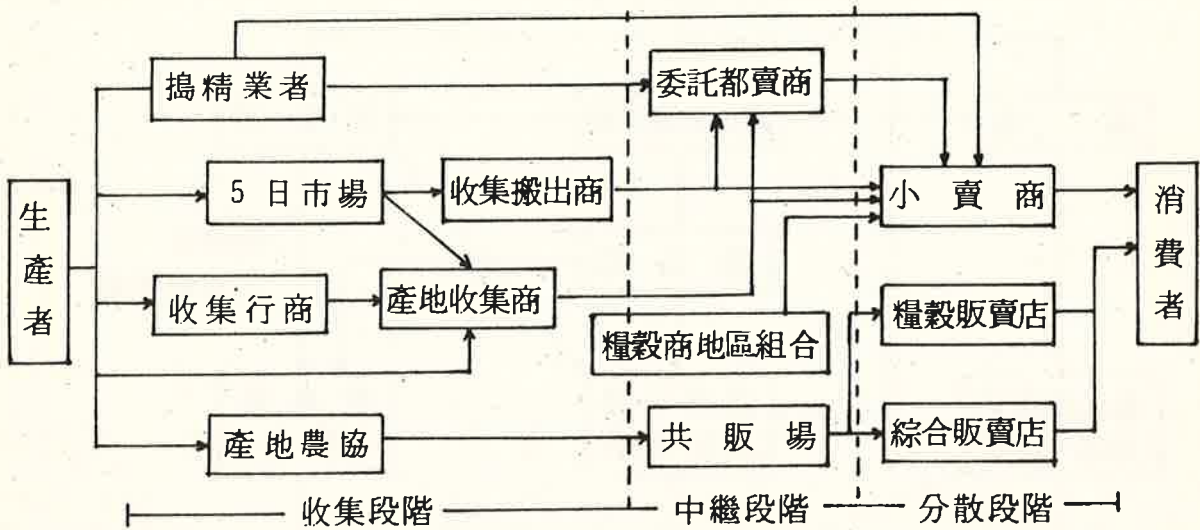
- 한식연을 中心으로 集中 支援

아. 流通改善 制約點의 認識

- 農水産物流通은 多數의 零細商人 및 流通參與者의 이해관계가 개재됨.
- 流通制度는 傳統的 商去來慣習과 關聯됨.
 - 零細商人의 生計威脅 勘案
- 따라서 急速한 流通改善 施策은 社會的으로 問題가 提起될 餘지가 많으므로 段階的 改善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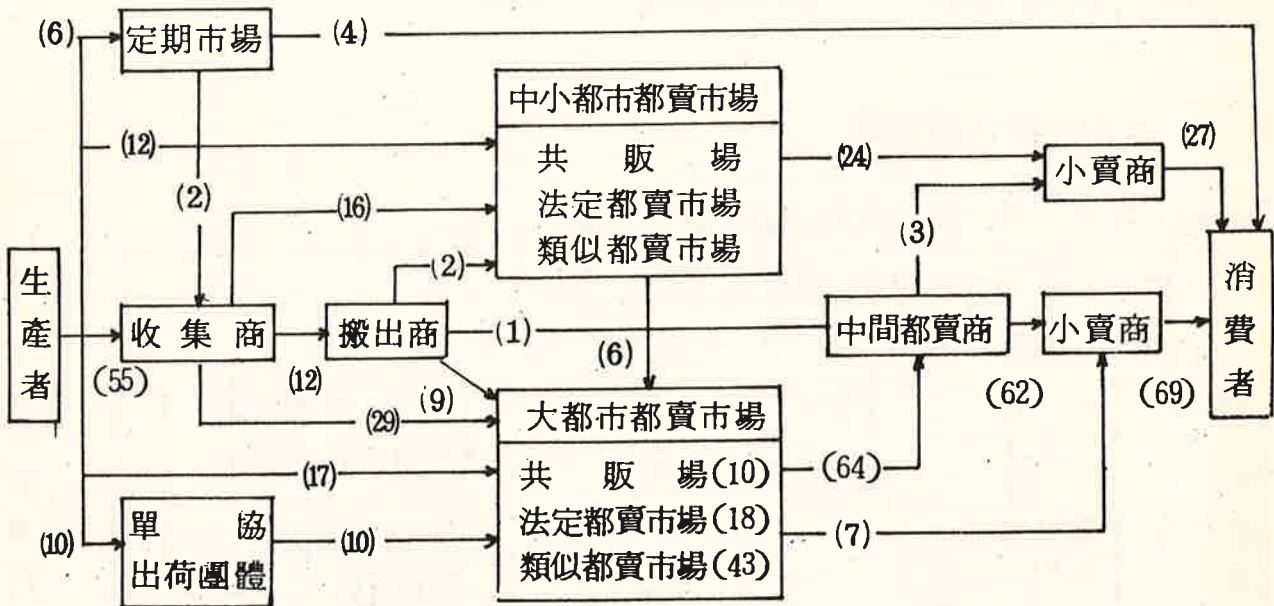
〈參考〉

1. 米穀의 流通經路



資料：농협중앙회, 「農產物流通政策의 現況과 課題」, 1981.

2. 青果物の 流通經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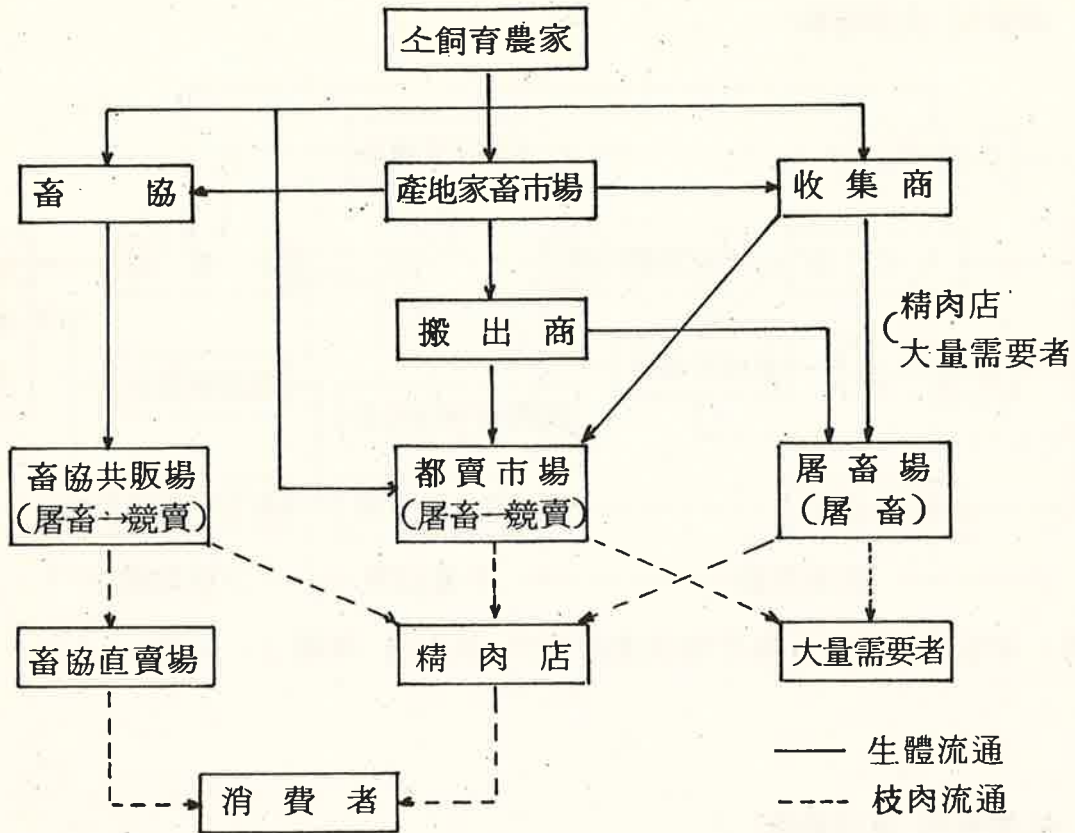
() 안의 數値는 流通經路別 比重(%)임.

1) 主要品目 20個의 流通經路別 比重을 物量에 의해 加重平均한 것임.

2) 大都市는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大田, 光州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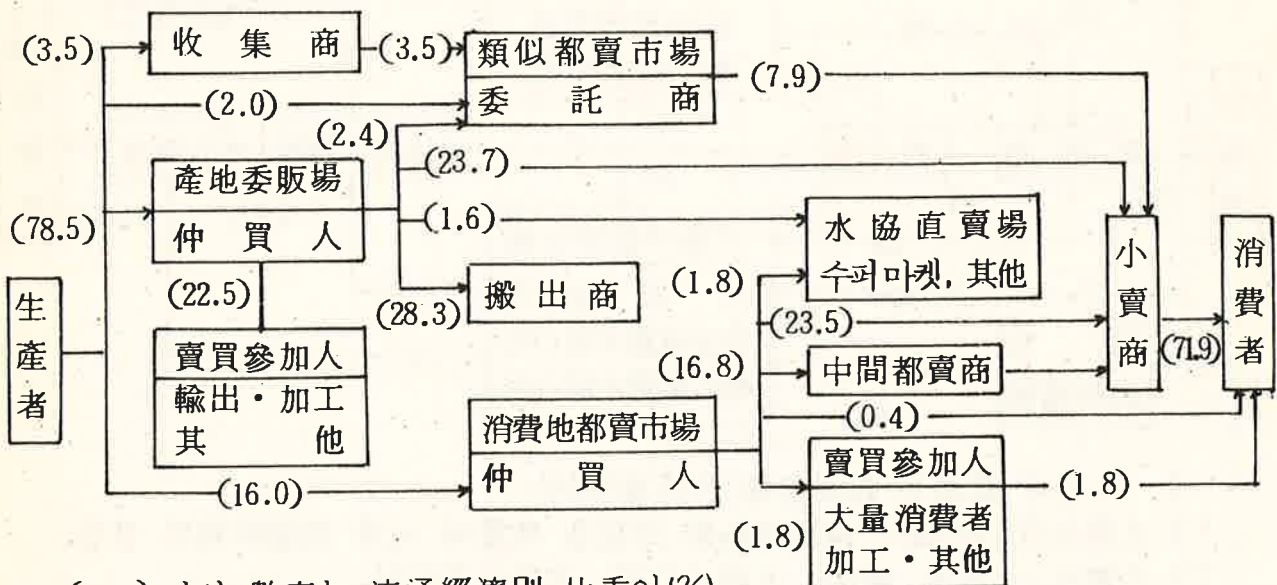
資料：成培永外, NMMPS,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3. 소 및 쇠고기 流通經路



資料：축협중앙회, 「축산물유통현황」, 1982.

4. 水産物の 流通經路



() 안의 數直는 流通經濟別 比重임(%)

資料：成培永 外, NMMPS,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5. 青果物の 流通마진

	出荷段階			都賣段階			小賣段階			總마진	
	費用	利潤	小計	費用	利潤	小計	費用	利潤	小計		
	%										
고 추	10.6	18.1	28.7	0.7	8.1	8.8	26.9	35.6	62.5	100.0	
마 늘	4.5	22.2	26.7	4.7	29.2	33.9	14.6	24.8	39.4	100.0	
양 파	24.7	7.8	32.5	1.9	17.5	19.4	25.1	23.0	48.1	100.0	
사 과	12.0	23.7	35.7	2.3	25.6	27.9	6.3	30.1	36.4	100.0	
배	21.2	11.2	32.4	1.4	3.8	5.2	13.5	48.9	62.4	100.0	
감 귤	30.2	17.5	47.7	0.7	40	4.7	12.6	34.9	47.5	100.0	

6. 外國과의 流通마진 比較 (1982)

	무우	배추	당근	양파	양배추	상치	오이	토마토	감귤	사과
韓國	68.2	72.8	67.9	46.5	78.0	44.5	58.3	52.0	-	-
日本	71.6	74.8	71.3	80.2	66.7	57.7	56.7	61.6	76.1	57.4
臺灣	76.3	66.8	64.1	58.7	72.3	-	-	-	-	-

* 美國의 境遇 (1982) 新鮮菜蔬 69%, 加工菜蔬 83%, 빵 및 穀物 88%, 畜產物 및 加工品 50%, 酪農製品 50% 水準임.

7. 農安基金 運營計劃

(單位：百萬원)

	'87	%	'88	%	'89(計劃)	%
I. 價格安定事業	259,007	74.0	392,019	83.0	410,624	82.1
1. 政府價格安定	86,364	(24.7)	201,342	(42.6)	185,287	(37.0)
○ 備蓄事業	51,364	-	167,452	-	154,499	-
○ 生產獎勵	18,000	-	25,890	-	30,788	-
○ 價格調節	17,000	-	8,000	-	-	-
2. 民間價格安定支援	172,643	(49.3)	190,677	(40.4)	225,337	(45.1)
○ 收買支援事業	79,453	-	83,711	-	100,435	-
○ 輸出促進	20,613	-	19,476	-	23,852	-
○ 生產者(團體)出荷調節	40,077	-	53,490	-	64,550	-
○ 都賣市場出荷促進	32,500	-	34,000	-	36,500	-
II. 流通構造改善支援事業	83,116	23.8	69,587	14.7	72,811	14.6
○ 流通施設擴充	27,117	-	6,811	-	7,346	-
○ 產地流通改善	49,644	-	61,054	-	63,500	-
○ 流通助成	6,355	-	1,722	-	1,965	-
III. 事業助成	7,594	2.2	10,794	2.3	16,565	3.3
○ 備蓄事業管理費	5,819	-	8,244	-	6,720	-
○ 備蓄事業設備費	1,655	-	1,767	-	7,644	-
○ 借入金利子	120	-	783	-	2,201	-
計	349,717	100.0	472,400	100.0	500,000	100.0

Ⅵ. 参 考

(流通改善에 관한 설문調査結果 : 農流公 2,000 名 對象, 1984)

1. 政府의 流通改善施策의 成果

- | | |
|--------------------|------------------|
| 1 多少 成果 있음 (44.8%) | 2 잘모름 (22.1%) |
| 3 별 成果없음 (21.2%) | 4 매우 成果있음 (9.0%) |
| 5 전혀 成果없음 (2.9%) | |

2. 流通上 問題點이 많은 段階

- | | |
|------------------|------------------|
| 1 產地出荷段階 (39.2%) | 2 中間都賣段階 (29.3%) |
| 3 都賣段階 (18.4) | 4 小賣段階 (12.6%) |

3. 產地出荷時 問題點

- | | |
|----------------------------|---------------|
| 1 選別, 精選不良 (60.3%) | |
| 2 商品性이 低下된 農水産物 出荷 (17.6%) | |
| 3 包裝, 狀態不良 (12.9%) | 4 단량不足 (9.0%) |

4. 產地流通改善에서 가장 時急한 課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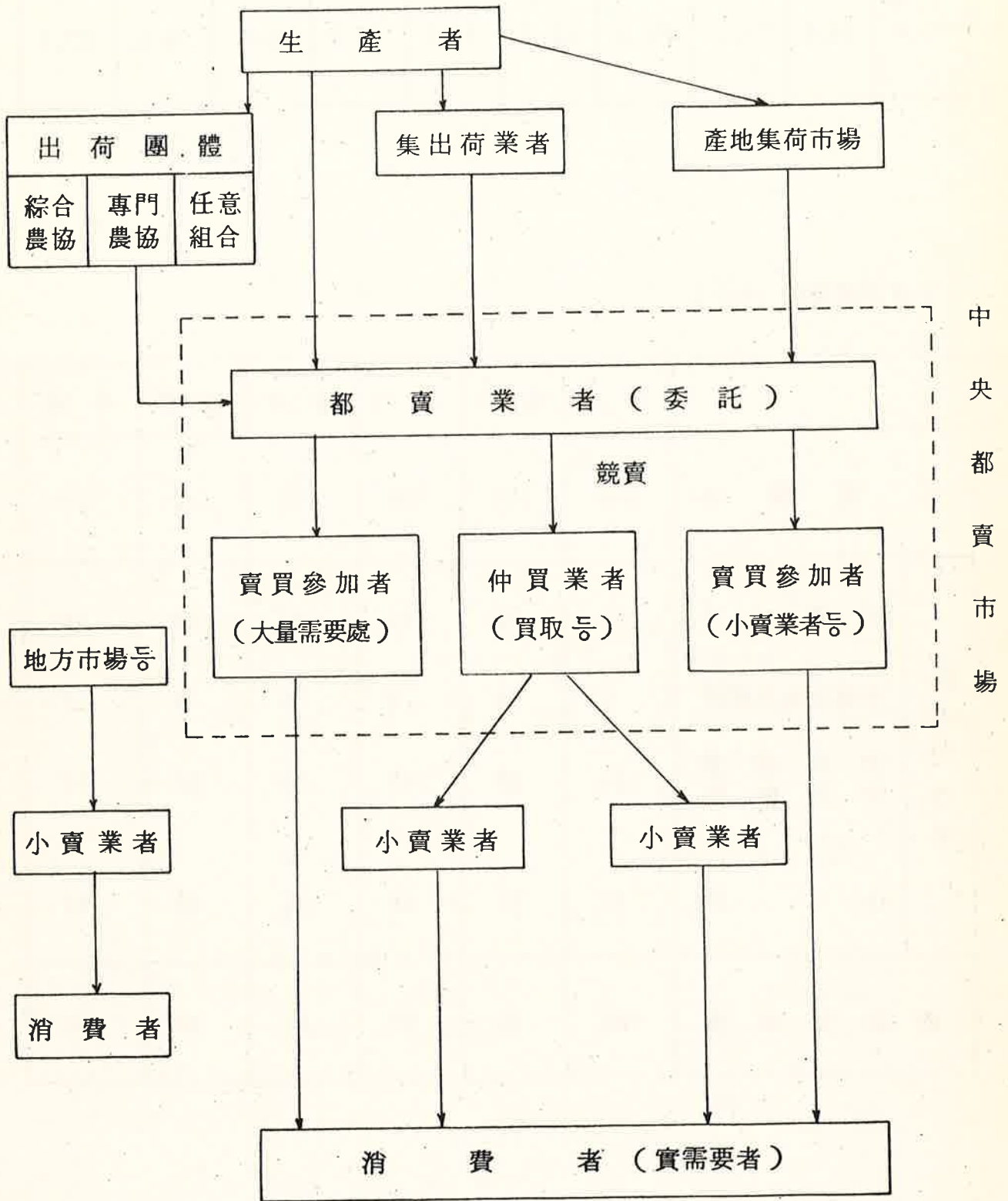
- | | |
|--------------------|----------------------|
| 1 產地出荷組織育成 (30.4%) | 2 出荷指導強化 (18.5%) |
| 3 產地流通施設擴充 (15.7%) | 4 貯藏, 加工施設擴充 (12.5%) |
| 5 流通情報擴充 (12.5%) | 6 經營指導強化 (9.1%) |

5. 都賣段階에서 가장 時急한 事項

- | | |
|--------------------------------------|----------------------|
| 1 施設現代化 및 栽培地 (30.1%) | |
| 2 類似都賣市場의 制度市場化 및 類似都賣市場行爲禁止 (24.1%) | |
| 3 去來制度改善 (20.5%) | 4 指定都賣人 機能強化 (10.2%) |
| 5 其 他 (15.1%) | |

(日本の青果物流通経路)

○ 消費地 都賣市場이 核心的인 位置에 있음.



(品目別 流通마진)

무우	배추	당근	양파	양배추	상치	오이	토마토	감귤	사과
% 71.6	74.8	71.3	80.2	66.7	57.7	56.7	61.6	76.1	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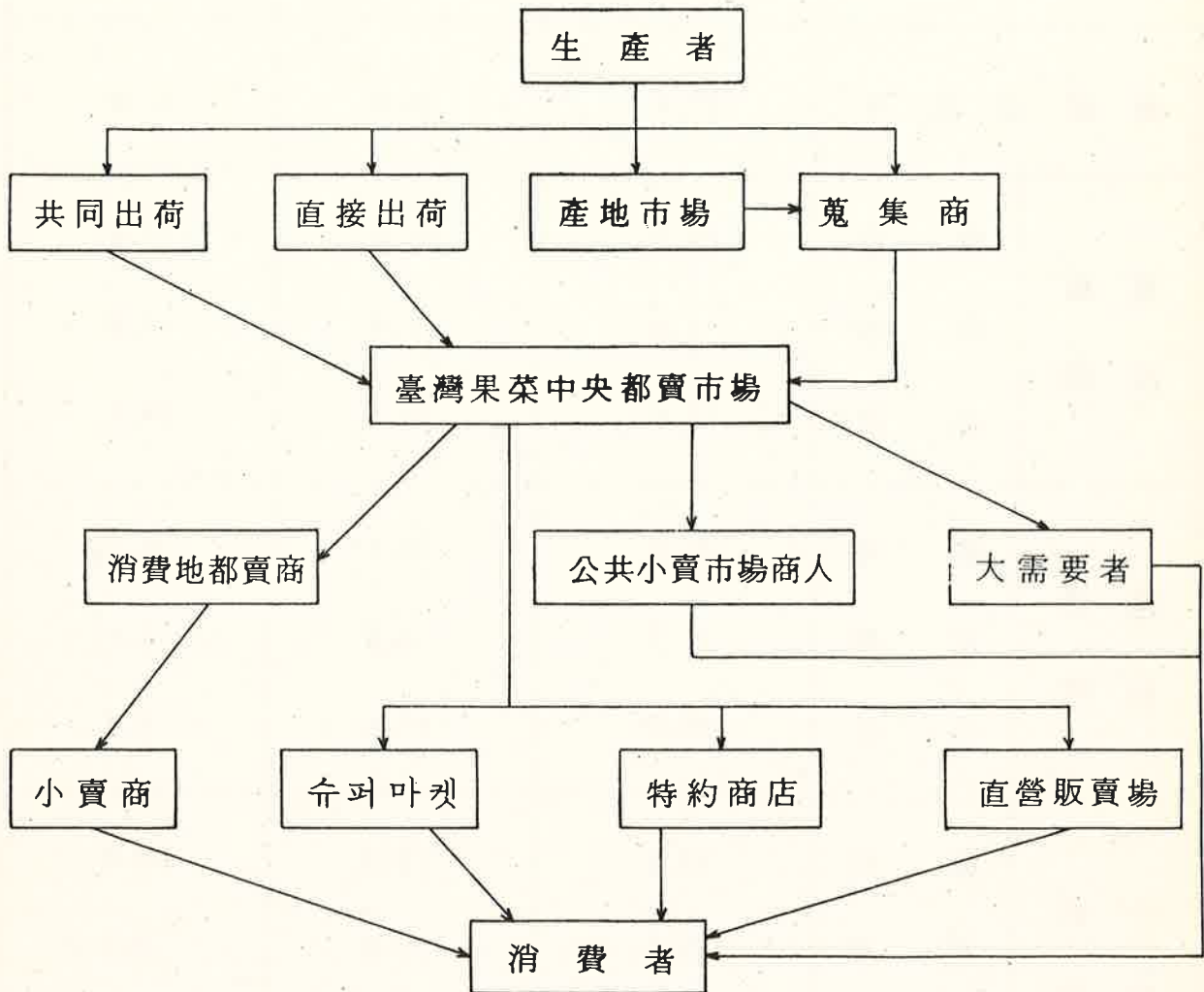
(流通段階別 마진)

		무우	배추	오이	양파	감귤	사과
小 賣 價 格		% 100	100	100	100	100	100
流 通 마 진 率	小 賣 마 진	43	51	27	29	38	34
	都賣市場手數料	5	4	6	6	4	4
	出 荷 經 費 및 手 數 料	23	20	15	23	20	14
	小 計	71	75	48	58	62	52
農 家 受 取 率		29	25	52	42	38	48

(臺灣)

(流通經路)

○ 消費地 都賣市場 經路가 主類를 이룸.



(流通마진)

(1982)

무 우	배 추	당 근	양 파	생 강	양배추	시금치	감 자
%							
76.3	66.8	64.1	58.7	52.5	72.3	61.4	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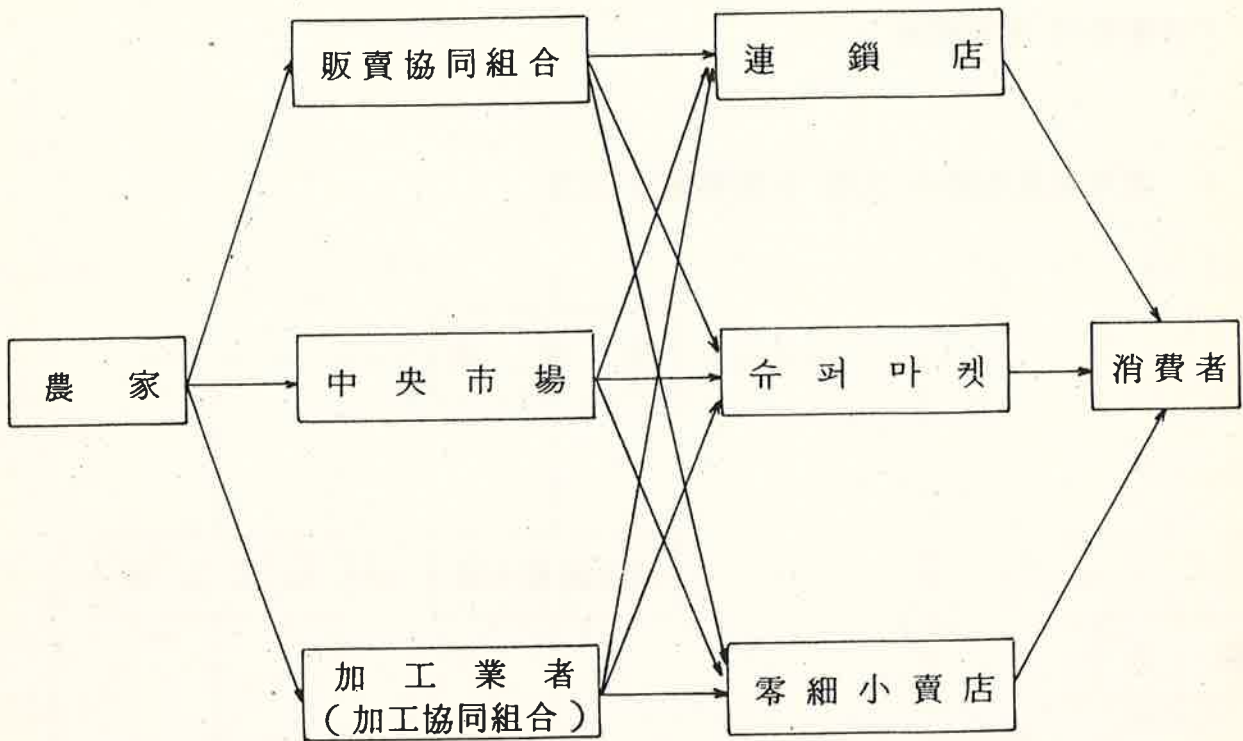
(流通段階別 마진率)

(臺灣 . 1982)

		배 추	양 배 추	오 이
農家受取率		37.4 %	49.8	41.6
蒐集 段階	費用	10.8	11.5	15.8
	利潤	1.8	1.0	0.8
	小計	12.6	12.5	16.6
都賣 段階	費用	23.3	15.8	6.3
	利潤	1.7	1.8	2.1
	小計	25.0	17.6	8.4
小賣 段階	費用	19.5	19.3	29.6
	利潤	5.5	0.8	3.8
	小計	25.0	20.1	33.4
總마진	費用	53.6	46.6	51.7
	利潤	9.0	3.6	6.7
計		62.6	50.2	58.4

(美國)

(流通經路)



(流通마진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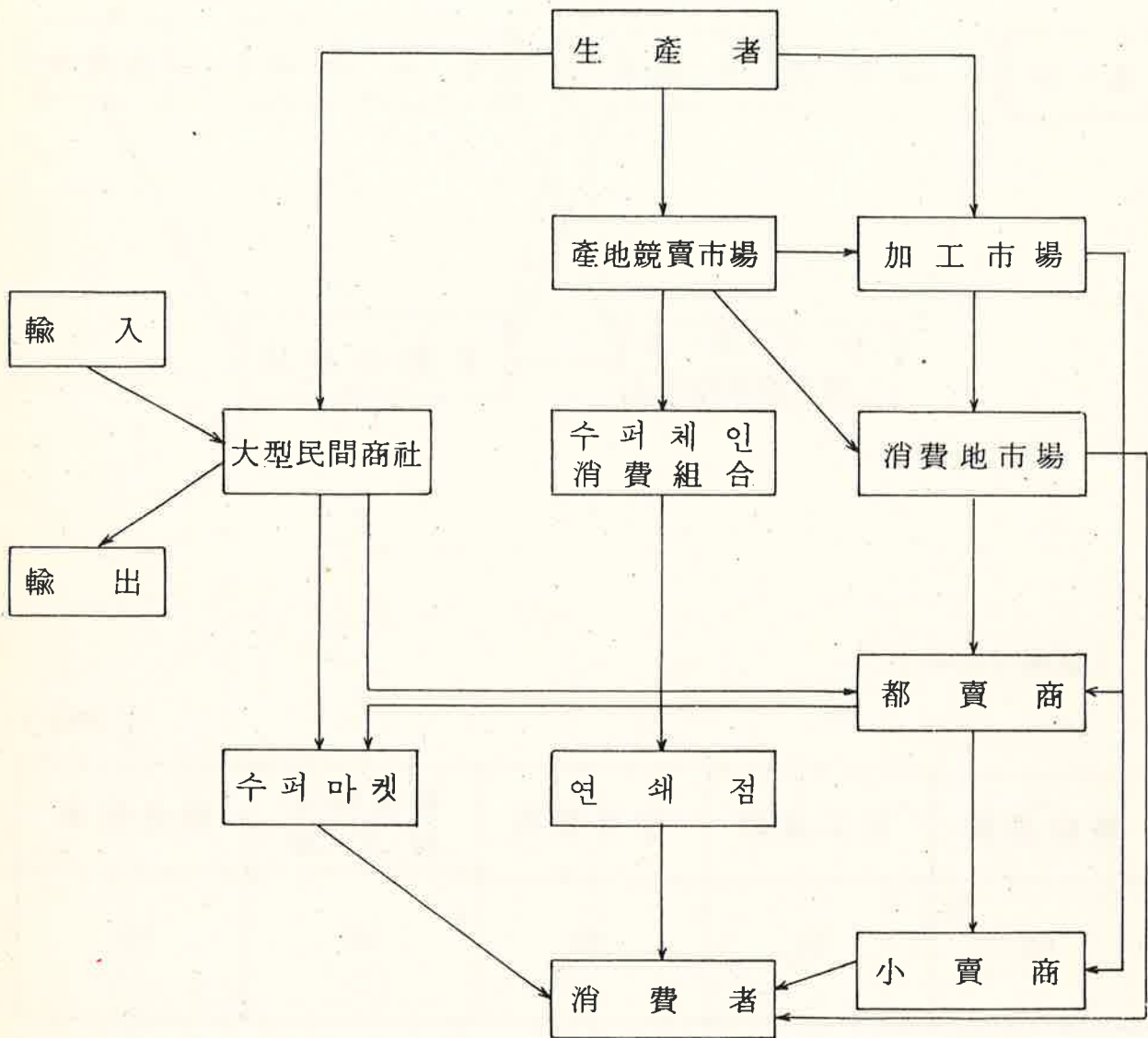
(1982)

新鮮菜蔬	加工菜蔬	빵 및 穀物	畜産物 및 加工品	酪農製品
69 %	83	88	50	50

(EC)

(青果物の流通経路)

○ 産地競賣市場과 大型 小賣機構가 主類



(主要國의 農産物 流通現況 比較)

	우리나라	日本・臺灣型	歐美型
1. 營農構造	小規模 複合營農	小規模 複合經營	大規模 專門經營
2. 需給 및 生産	增産指向에서 適正 生産 必要性 擡頭	增産爲主에서 部分的 生産調整	過剩生産抑制가 政策 基調
3. 靑果物 流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都賣市場 主要都市 公營都賣 市場建設中 ○ 產地市場 ○ 產地共同出荷 體系 未洽 ○ 小賣市場 ○ 在來市場 및 零 細小賣商 主類 	<ul style="list-style-type: none"> 政府가 投資 및 經營管 理擔當(日本 1,890個 臺灣 94個) ○ 政府가 協同組合 共 同出荷 積極支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 50%補助 — 臺灣: 農協出荷分 最優先 販賣 ○ 大型小賣機構 增加 趨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마켓의 市場占 有率 50%(日本) 	<ul style="list-style-type: none"> 政府投資 및 運營管理 擔當 ○ 協同組合의 產地流 通活動에 政府가 資 金支援 및 損失補填 (EC) ○ 產地競賣市場 發達 ○ 大型小賣機構 發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마켓의 市場占 有率 60%(美國) ○ 消費組合이 發達
4. 流通마진率 ('82)	○ 무우 68.2%, 배추 72.8, 감귤 44.3, 양배추 4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우(71.6) — 배추(74.8) — 감귤(76.1) ○ 臺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배추(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채蔬 69% — 加工채蔬 83 — 穀物, 加工品 88
5. 檢討意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各國 共히 流通改善을 爲해 積極的인 投資와 支援을 하고 있음. ○ 靑果物에 있어서는 年度別, 季節別 價格變動 振幅이 크고 流 通마진이 높은것은 各國 共通임. ○ 東洋圈의 경우, 消費地 都賣市場 經路가 流通過程의 主를 이 루며, 歐美에서는 大型小賣機構와 產地 競賣市場이 開發되어 있음. 		

IV. 1990년

農水產物流通改善對策

1990. 5

目 次

I . 農水產物 流通現況 及 問題點	79
II . 流通改善 施策推進	82
1 . 基本方向	82
2 . 產地流通改善	83
3 . 消費地 流通改善	84
4 . 流通造成 機能強化	88
5 . 加工產業育成	90
6 . 加工食品 標準規格化 (KS) 事業	92
III . 參 考 資 料	93

I. 農水產物 流通現況 및 問題點

가. 農水產物 流通의 特殊性

○ 生産 및 流通構造上的 弱脆性

- 같은 面積에서도 自然條件, 氣象與件에 따라 段收差異가 심해 生産量 增減이 많음.

〈例〉

○ 品名	'87	'88	增 減
○ 高 추			
- 段 收	155 kg / 10 a	215	38.7 %
- 價 格	2,298 원 / 근	1,175	△ 48.9
○ 김장배추			
- 段 收	6,327 kg / 10 a	6,891	9 %
- 價 格	648 원 / 포기	369	△ 43.1

- 長期保管 困難, 輸送 및 取扱不便으로 流通費用 過多 所要
 - 產地에서 速費者까지의 輸送·取扱過程에서 많은量의 減耗發生
- 等級化, 規格化의 困難과 商人의 零細性으로 效率的 流通困難
 - 產地에서 蒐集, 精選, 加工時 많은 손질이 必要
- 短期的인 流通改善 解決의 어려움
 - 流通制度는 國民의 商去來慣習과 經濟·社會·文化現象과 關聯되어 있어 急速한 改善에 限界
- 流通마진에 대한 認識問題
 - 流通마진은 “流通費用 + 流通從事者 利潤”으로 構成
 - 流通마진을 中間商人이 全額 取得하는 것으로 認識
 - 流通마진이 낮을수록 流通效率이 높은 것으로 認識
 - 多數의 中間商人 介入이 높은 流通마진을 超來한다는 認識
 - 流通이 近代化된 先進國일수록 流通마진이 높음 (包裝, 選別 등 서비스 費用增加)

〈 流通마진率 比較 〉

1. 農林水産部 調査 ('90. 4.21 ~ 4.22)

	<u>배 추</u> (洪城 → 서울)	<u>풋 고 추</u> (密陽 → 서울)	<u>사과 (후지)</u> (永川 → 서울)
○ 農家受取率	30.8 %	58.4	52.8
○ 流通마진率	69.2	41.6	47.2
— 費用	23.5	12.2	19.9
— 利潤	45.7	29.4	27.3

2. 外國의 流通마진率

	<u>배 추</u>	<u>과실류</u>
○ 日 本 :	84.0	51.5
○ 台 灣 :	66.8	-
○ 美 國 :	77.0	71.0

나. 農水産物流通 遂行主體에 대한 認識問題

- 政府가 流通分野에 대한 모든것을 擔當하여야 한다는 認識
 - 流通改善分野는 公益的 非收益性 事業이므로 政府의 參與가 必要 하나 市場 및 價格機能에 대한 政府機能은 限界가 있음.
- 農水産物流通에 대한 政府의 介入과 商人規制에 限界
 - 根本的으로 商人이나 民間의 主導的 役割分野이며 政府는 民間 市場 活性化를 위한 補完的 役割을 擔當

政 府

法的 制度的의 支援, 流通施設擴充, 資金支援, 都賣市場建設, 公正去來誘導

農水畜協

共同出荷擴大, 共販場 및 연쇄점 運營

民間(商人)

蒐集 및 出荷·都賣·小賣等 實去來 擔當

- 生産者團體인 農水畜協의 流通改善部門에 대한 投資 및 支援 未洽
 - 農協事業의 30 %가 流通部門에 投入

〈流通主體別 機能比較〉

主體 階段 및 機能	農 民	農 水 畜 協	商 人	政 府
〈產地〉 ○ 生產 ○ 蒐集 ○ 出荷	○ 商業營農， 生產 ○ 商人販賣	○ 協同出荷班 育成 ○ 流通施設運營	○ 蒐集商 - 產地蒐集， 정선, 搬出	○ 產地適正生產 誘導 - 農業觀測， 流通豫告， 資金支援 ○ 產地流通施設 支援
〈消費地〉 ○ 都賣市場 - 上場, 競賣 등 去來 ↓ - 中間都賣 ↓ - 小賣商 ↓ - 消費者	○ 個人出荷 ○ 共同出荷	○ 直共販場運營 ○ 中間商인과 競爭의 機能	○ 指定都賣人 ○ 仲買人 - 都賣去來 ○ 中間都賣商 - 小賣商에 販賣 ○ 連鎖店 ○ 小賣店	○ 公營都賣市場 建設 및 公正 去來 誘導 ○ 各種法的, 制 度的機能補強

다. 流通段階別 問題點

產 地

- 農民의 慣行과 危險分散으로 인해 「발매기」가 이루어짐
 - 作況의 不確實등, 農民의 共同出荷認識 未洽
- 農協의 機能未洽과 共同出荷比率 低下(20%)
- 產地流通施設(集荷場, 改良貯藏庫, 輸送車輛등)의 未洽
- 包裝改善, 去來單位 標準化, 規格化등 商品性 提高努力 未洽

消 費 地

- 公正去來 形成基盤構築 未洽(制度圈 公營都賣市場 不足)
 - 類似都賣市場 占有率 49%
- 既存都賣市場의 規模狹小, 施設老朽, 必要施設微微, 流通費用過多
 - 稅源隱蔽, 價格弄奸, 駐車難, 都心交通滯症
- 小賣商의 零細性으로 公正去來價格 形成에 限界
 - 取扱物量少量, 生計維持를 위한 質的, 物的 마진發生可能
 - 大部分의 小賣商은 賃貸料 上昇을 價格에 轉嫁
- 流通情報의 蒐集·分散體系의 未洽

II. 流通改善 施策推進

1. 基本方向

産 地 : 共同出荷 基盤造成으로 市場對應力 提高

- 共同出荷 實踐組織으로 協同出荷班 育成 및 內實化
- 集荷場, 改良貯藏庫, 輸出車輛等 共同出荷施設 支援強化

消 費 地 : 圏域別 公營都賣市場 建設로 公正去來秩序 確立

- 首都, 中部, 湖南, 嶺南圏域別로 據點 都賣市場 建設
 - 據點市場 9 個所, 補完市場 6 個所
- 中小都市의 直・共販場 建設 支援
- 大量消費處와 直去來를 위한 大都市 農産物 集配센터 設置支援

流 通 助 成 : 流通助成機能 強化로 流通能率 提高

- 規格出荷促進 및 包裝改善으로 商品性 提高
- 流通情報의 蒐集・分散機能 強化
- 流通從事者의 教育強化

加工産業育成 : 農水産物의 새로운 輸要開發과 附加價值 提高

- 韓食研 設立 育成
- 加工食品標準規格化 (KS 事業)의 本格 推進
- 加工産業 育成支援

2. 產地流通改善

가. 協同出荷班 育成

- 產地에서 生産과 出荷를 共同으로 實施함으로써 流通費用을 節減
- 大都市 都賣市場 및 大量消費處와의 連繫販賣幹旋등 販路指導強化
- 消費地와의 直去來를 통한 安定的 所得保障

〈 支援現況 〉

區 分	'83	'86	'87	'88	'89	'90 (P)
組 織 數	4,500 班	10,346	11,708	11,000	11,000	11,000
參 與 農 家 數	95千戶	225	271	270	270	270
育 成 資 金 支 援	30億원	340	440	500	350	350

나. 產地 流通施設 擴充

- 單位農協의 共同出荷支援 機能強化
 - 農產物集荷場, 改良貯藏高, 輸送車輛, 鐵浮船 等 共同利用施設 擴充으로 出荷經費節減

區 分	確保目標	'89末까지	'90 計 劃		國 庫 支 援
			事業量	國 庫	
集 荷 場	個所 408	183	20	百萬원 600	國庫 50% 地方費 20% 國庫 30%, 融資 30% 地方費 20%
改良貯藏庫	408	120	20	500	
輸 送 車 輛	3,020 隻	2,227	162	729	
鐵 浮 船	16 隻	6	4	180	
計				2,009	

3. 消費地 流通改善

가. 現 況

- 農水畜産物의 圓滑한 流通改善과 公正한 價格形成은 都賣市場의 健全한 育成發展이 基本條件임.
- '89年末現在 全國都賣市場은 61個, 共販場은 131個로 全體 192個의 市場이 存在

나. 問題點

- 類似都賣市場이 主를 이뤘 健全한 流通改善 沮害
 - 法的으로는 公營都賣市場制度(開設者가 市長)이나 公共投資가 이루어지지 않아 施設의 絶對不足으로 類似都賣市場이 都賣去來를 主導
 - 稅源隱蔽, 價格弄奸, 環境公害誘發
- 大部分 民資에 의하여 開設運營됨에 따라 公益性 微弱
- 既存都賣市場은 規模狹小, 施設老朽 및 必須施設未備로 迅速大量的 農水産物流通에 의한 規模의 經濟 實現困難(流通費用過多)
- 都心流通滯症, 쓰레기發生, 都市美觀沮害, 民願多發등 各種公害惹起

다. 公營都賣市場 建設計劃 및 推進實績

(1) 長期建設計劃

- 首都, 中部, 湖南, 嶺南 圈域別로 公營 都賣市場 建設
 - 全體 流通量의 60% 以上을 占有하는 6 大都市에는 據點市場 建設 (9 個所)
 - 圈域別로 獨立的 流通網을 形成하고 있는 6 個 主要都市 (人口 30 萬以上) 에는 補完市場 建設 (6 個所)
- 全額 共同投資로 運營의 公益性 確保
- 都心地 既存 都賣市場, 類似市場의 吸收, 移轉

	據 點 市 場	補 完 市 場
首 都 圈	서울(3), 仁川(1)	水原, 春川
中 部 圈	大田(1)	清州
湖 南 圈	光州(1)	全州
嶺 南 圈	釜山(2), 大邱(1)	蔚山, 昌原
計	9 個所 (6 大都市)	6 個所 (6 個 主要都市)

(2) 推進實績

(ㄱ) 開場運營

區分	規模		事業費			入住商人 名	建設期間	開場
	敷地	建物	計	國庫	地方費			
서울可樂洞	千坪 166	60	億원 933	347	586	4,092	'79~'84	'85.6
大田	22	6	85	10	75	363	'84~'87	'87.11
大邱	23	5	63	10	53	371	'84~'88	'88.10
清州	10	4	51	10	41	92	'85~'88	'88.11

(ㄴ) 開場豫定

區分	規模		事業費			開場豫定
	敷地	建物	計	國庫	地方費	
光州	千坪 14	6	億원 63	17	46	'90 上半期
蔚山	12	5	63	27	36	"

(ㄷ) '90 推進計劃

區分	規模		'90 事業費			備考
	敷地	建物	計	國庫	地方費	
釜山	千坪 38	28	億원 92	28	64	'89~'91 建築工事
仁川	19	6	23	7	16	'90~'91 "
水原	10	4	15	8	7	" "
全州	20	6	15	8	7	" "

※ 都賣市場 國庫補助：特別市・直轄市 30%，其他市 50%

라. 中小都市 直·共販場 建設支援

(1) 事業目的

- 人口増加에 따른 流通量 増加로 產地農協의 直·共販場 流通機能 活性化 要求
- 公正去來로 商去來秩序維持 先導的 役割
- 管内生産量 處理能力 提高 및 受取價格 提高

(2) 年次別 投資計劃

區 分	確保計劃	'89		'90		'91	
		物 量	豫 算	物 量	豫 算	物 量	豫 算
共販場	個所 18	3	百萬원 600	2	420	3	630
直販場	67	8	700	5	525	7	735
計	85	11	1,300	7	945	11	1,365

마. 農産物集配센터 設置支援

(1) 事業目的

- 大量需要處와 契約栽培, 直去來, 直接供給 및 組合(生産者)直販場 設置로 流通段階 縮小
- 消費地流通의 據點役割로 流通改善의 示範事業

(2) 規模 및 事業費

垞 地	建 物	事業費	國 庫	融 資	自 擔
坪 5,306	1,299	百萬원 2,041	900	370	771

4. 流通造成 機能強化

가. 農産物規格出荷 및 包裝改善

○ 流通能率提高를 위한 農水産物の 規格出荷와 包裝改善등 推進

(1) 標準去來單位 制定施行 (58 個品目)

○ 사과, 건菓, 쇠고기等 農畜水産物 37 個品目 制定 ('83.12)

○ 穀類 9 個品目 追加制定 ('85.12)

○ 農産物, 감, 수박, 배추等 12 個品目 追加制定 ('89.11)

(2) 規格出荷 示範事業推進

○ 標準去來單位的 早期定着으로 流通能率向上 및 商品性 提高

區 分		'84	'88	'89	'90 (p)
包裝資材費補助 (國庫 20%, 地方費 20%)	品 目	個 4	8	9	8
	支援額	百萬元 36	1,234	2,500	2,289
規 格 出 荷 先 渡 金 支 援	品 目	8	6	6	6
	支援額	1,000	4,000	4,000	4,000

< '89 支援對象品目 >

○ 資材費補助 : 복숭아, 딸기, 참외, 토마토, 오이, 호박, 포도, 감자

○ 先渡金支援 : 풋고추, 양파, 가지, 마늘, 건고추, 양배추

나. 流通情報의 蒐集·分散機能 強化

(1) 流通情報 蒐集

- 主要 農水產物 92 個品目の 產地價格 및 消費地 都賣價格, 去來 量等 調査
- 農水產統計電算網을 通하여 調査內容 入力
 - 調査者→市·郡統計出張所→道統計事務所→農林水產部 電算室

(2) 分 散

- 系統分散
 - 農林水產部 및 農協의 電算網과 水協의 無線通信局을 通하여 常日內 單協, 協同出荷班 等に 流通情報 提供
- 一般分散 (TV, 라디오 등 매스컴活用)
- 其他 자동응답장치 (120), 음성정보시스템 開發 活用 등

다. 農水產物 流通教育

- 農流公傘下에 農水產物流通教育院 設置運營 ('85. 8月 開院)
 - 組織的이고 體系的인 流通專門教育 實施 (理論, 實務, 精神教育)
 - 對 象 : 流通關聯公職者, 都賣市場等 流通從事者
- 教育實績 : ('88) 1,697 → ('89) 2,000 → ('90) 2,000 名

라. 生産調整協議會 設置運營

- 過剩過小生産을 防止하고 適正生産體制確立
- 作目別 參與農家總會에서 農家自律協議에 依한 栽培面積調節

마. 農安基金支援擴大

- 農水產物 需給 및 價格安定과 流通改善을 위한 農安基金擴大 造成
- 基金擴大造成
 - ('80) 874 → ('85) 2,657 → ('89) 5,060 億원
- '92 年까지 1 兆원으로 擴大 造成

5. 加工産業育成

- 農畜水産物の 附加價值提高를 통한 農家所得増大
- 「모자라는」時代에서 「남는」時代로 轉換됨에 따라 農水産物の 需要開發問題가 크게 擡頭되고 이를 爲해서는 成長潛在力이 있고 附加價値가 큰 品目에 對해 加工開發과 輸出擴大推進
- 1 段階로 傳統食品開發에서 시작, 一般加工産業에 까지 擴大

가. 傳統食品開發事業

(1) 事業目的

- 農産物の 새로운 需要開發과 附加價値 提高를 통한 食品産業의 發展
- 盛出荷期の 原料 農畜物을 收買・加工處理함으로써 農産物 價格安定 및 農家所得増大 圖謀

(2) 事業推進計劃

- 發展 可能性과 收益性이 많고 企業과의 競爭品目이 아닌 傳統食品開發 育成
- 마을共同(生産農家) 및 生産者團體(農・水・畜協)가 運營할 수 있는 小規模 加工業에 對해 國庫補助 및 融資支援

(3) 年次別 投資計劃

區 分	確保計劃		'89		'90		'91	
	物 量	豫 算	物 量	豫 算	物 量	豫 算	物 量	豫 算
中 規 模	個所 98	百萬元 4,281	11	409	10	445	18	801
小 規 模	39	859	17	331	12	288	4	96
計	137	5,140	28	740	22	733	22	897

(4) 產地 中小加工工場 施設資金支援

- 盛出荷期 農産物の 새로운 需要開發 → 需給調節로 價格安定
- 產地中小加工業體의 農産物 收買加工處理 → 生産者團體와 連繫
- 生産者團體의 1次加工品の 納品連繫 生産體制 支援

〈年次別 支援計劃〉

	計	'89	'90	'91	'92
業體數	個所 137	15	15	20	20
融資	百萬元 34,250	4,000	4,000	5,000	5,000

* 施設資金에 대해 50 ~ 70 % 融資 支援

나. 加工産業育成支援體制 強化

- 專擔課 新設(표준가공과) 등 加工産業育成支援體制 強化
- 食品加工産業 發展을 위한 研究開發事業의 積極 推進
 - 韓國食品開發研究院(食糧資源管理, 加工技術開發教育)
 - 韓國農村經濟研究院(食品産業展望, 輸入開放 補完對策 등)
- 農畜産物 需給과 加工의 連繫를 위한 部處間 業務調整
 - 農畜産物의 製造, 加工業務를 農林水産部에서 管掌
 - 加工産業育成法(假稱)制定 및 財政·金融·稅制支援 強化

6. 加工食品 標準規格化 (KS) 事業

가. 事業目的

- 農·水·畜産 加工食品 KS 制度를 積極 運營함으로써 加工食品의 品質 向上 및 食品産業發展의 轉機 마련
- 政府 品質公認 (KS 表示許可) 擴大實施로 消費者 保護 및 去來의 公正性 圖謀

〈 期 待 効 果 〉

- 加工食品의 品質, 加工技術, 表示事項등을 標準 規格化하고 政府가 KS 表示許可를 通해 品質을 公認
 - 生産者: 品質向上, 生産性 向上, 販賣促進
 - 消費者: 流通의 公正化, 選擇의 便宜圖謀, 信賴性 提高
 - 國民經濟: 食品産業發展, 國際競爭力 強化

나. 主要事業內容

- 規格制定 (改正, 確認), 表示許可 및 表示指定 事後管理

다. KS 規格管理 및 表示許可現況

	工振廳移管	'86	'87	'88	'89	累 計	'90 計劃
規 格 制 定	63 個	7	2	13	14	99	4
表 示 指 定 品 目	1	7	9	5	11	33	9
表 示 許 可 品 目	1	-	7	4	4	16	5
(製 造 工 場 數)	(4)	-	(15)	(5)	(9)	(33)	(10)

※ 콩기름, 소시지, 프레스햄, 과일실飲料등 16 個品目 33 個 工場에 KS 表示許可

Ⅲ. 參 考 資 料

1. 最近報道 要約	95
2. 品目別 流通마진	96
3. 品目別 流通經路	99
4. 外國과의 流通마진比較	103
5. 流通現況比較	104

1. 最近報道 要約

- 農水産物(菜蔬, 과일류등) 流通構造 不合理로 인해 生産農民이나 都市 消費者 모두 被害를 봄.
 - 한국일보(4.21) : 生産者도 消費者도 도둑맞은 기분 : 產地에서 消費 地에 이르는 過程에서 마진增加
 - 동아일보(4.23) : 農産物暴利流通, 農民消費者 모두 被害者
 - 조선일보(4.24) : 農産物流通마진 過多
 - 서울경제(4.24) : 農産物 中間流通마진 너무높다
 - 내외경제(4.24) : 農産物流通마진 過多
 - 세계일보(4.24) : 菜蔬, 과일류流通마진 最高 70 %線
 - 매일경제(4.24) : 農産物暴利流通

- 本資料는 韓國日報(4.21 字) 報道(流通 4~7 段階, 大豊暴騰寄現象)에 대한 解明 및 說明資料로서 當部에서 現地調査한 結果를 記者懇談會 形式을 통해 配布
 - 流通마진과 經路는 農水産物 自體가 가지는 特性으로 인하여 다소 높고 複雜한 理由를 說明
 - 流通마진이 전적으로 中間商人 利潤만은 아니며 農産物自體가 가지는 精選, 包裝등에 따른 費用으로 다소 높음을 說明

2. 品目別 流通마진

봄배추

(밀양→서울 '90.4.21)

區 分	項 目	金 額	比 率	算 出 根 基
		원/kg	%	
農 家 受 取 價 格 (流 通 마 진)		200 (450)	30.8 (69.2)	○ 포기當 400 원에 蒐集商에 圃前販賣 (4月初旬) ○ 4.5톤車當 3,000 포기 적재 ○ 物品代: 1,200,000 원 (400 × 3,000)
產地蒐集商	收穫, 上車費	25	3.8	○ 4.5톤트럭當 150,000 원 (남자 4名× 12,000원, 여자 8×9,000, 食代 12× 2,000, 끈 雜費 6.0)
	輸 送 費	17	2.6	○ 홍성→서울: 100,000 원 (4.5톤트럭)
	利 潤	91	14.0	○ 物品代利子등포함, 546,000 원
	(流通마진)	(133)	(20.4)	(796,000 원)
	販 賣 價 格	333		○ 仲買人委託販賣價 2,000,000 원
都 賣 市 場 委 託 商	費 用	-	-	-
	利 潤	20	3.1	○ 手數料 6%: 120,000 원
	(流通마진)	(20)	(3.1)	
	販 賣 價	353	54.3	
中 間 都 賣 商 (中 販)	作 業 費	20	3.1	○ 선별, 結속作業費: 120,000 (女子 4名×30,000)
	清 消 費	1	0.2	○ 7,000 원
	下 車 費	2	0.3	○ 13,000 원
	減 耗	21	3.2	○ 購入價의 6% (破損, 추대등)
	利 潤	25	3.8	○ 車當 150,000 원 (市場去來販賣)
	(流通마진)	(69)	(10.6)	
	販 賣 價 格	422	64.9	
小 賣 商	輸 送 費	25	3.8	○ 1톤 용달차 (可樂市場→사당동基準) 20,000 원, 400 포기 積載
	減 耗	42	6.5	○ 購入價의 10%
	利 潤	161	24.8	* 腐敗, 廢棄 포함.
	(流通마진)	(228)	(35.1)	
	販 賣 價	650	100.0	○ 消費者購入價

꽃 고 추

(홍성 → 서울, '90.4.21)

區 分	項 目	金 額	比 率	算 出 根 基
	農 家 受 取 價 格 (流 通 마 진)	원/kg 3,501 (2,499)	% 58.4 (41.6)	
蒐 集 商	上 車 費	6	0.1	○ 4.5 톤 車輛 500 個 / 10 kg 積載 2 人 所 要 : 30,000 원
	輸 送 費	50	0.8	○ 밀양에서 서울 : 25 萬 원
	下 車 費	15	0.3	○ 車 當 75,000 원
	利 潤 (流 通 마 진)	188 (259)	3.1 (4.3)	○ 販 賣 價 의 5% 水 準
	販 賣 價 格	3,760	62.7	
法 定 都 賣 市 場	上 場 手 數 料 (流 通 마 진)	240 (240)	4.0 (4.0)	○ 手 數 料 6%
	販 賣 價 格	4,000	66.7	
中 間 都 賣 商	諸 費 用	100	1.7	○ 運 賃 等
	利 潤 (流 通 마 진)	200 (300)	3.3 (5.0)	○ 販 賣 價 의 5% 水 準
	販 賣 價 格	4,300	71.7	
小 賣 商	上 · 下 車 費	30	0.5	
	輸 送 費	30	0.5	○ 1.5 톤 車輛, 可樂洞 → 청량리까지 30,000 원 (100 個 / 10 kg 積載)
	包 裝 費	500	8.3	
	利 潤 (流 通 마 진)	1,140 (1,700)	19.0 (28.3)	
	販 賣 價 格	6,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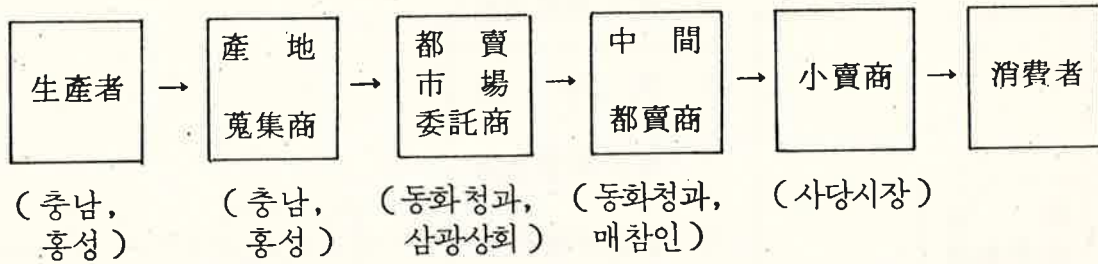
사과 (후지)

(영천 → 서울 '90.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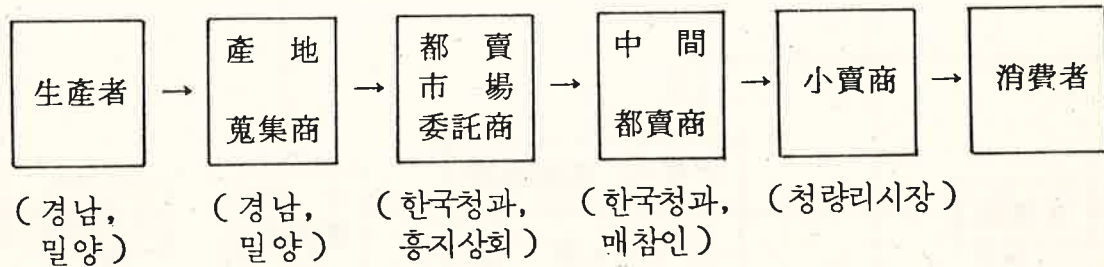
段階別	項 目	金 額	占有率	備 考
生 産 者	農家受取價格 (流通마진計)	원/15kg 9,500 (8,500)	% 52.8 (47.2)	
蒐 集 商	包 裝 諸 費 選別包裝費 輸 送 費 上·下車費 仲介人手數料 利 潤 諸 費 用 (流通마진) 販 賣 價	670 235 316 110 516 1,300 153 (3,300) 12,800	3.7 1.3 1.8 0.7 2.7 7.2 0.9 (18.3) 71.2	外包装 (골판지) : 390원 / 상자 內包裝 : 스티로폼망, 밴드, 클립 등 4톤트럭 250 상자 積載 : 79,000 원 蒐集商 販賣價의 4%
都 賣 商 (仲買人 및 委託都賣商)	諸 費 用 利 潤 (流通마진) 販 賣 價	80 720 (800) 13,600	0.4 4.0 (4.4) 75.6	競賣場 → 仲買人 家計 配達料
中間都賣商	運 搬 費 上 車 費 諸 費 用 利 潤 (流通마진) 販 賣 價	130 120 150 700 (1,100) 14,700	0.7 0.7 0.8 3.9 (6.1) 81.7	可樂市場 → 남대문市場 (1톤트럭 100 상자 7,000 원 정도)
小 賣 商	荷 車 費 包 裝 費 選 別 費 減 耗 諸 雜 費 利 潤 (流通마진) 販 賣 價	120 - 140 650 200 200 2,190 (3,300) 18,000	0.7 - 0.8 3.6 1.1 12.2 (18.4) 100.0	일주일 經過時 상자당 2개 (18,000 원 ÷ 55개 × 2개)

3. 品目別 流通經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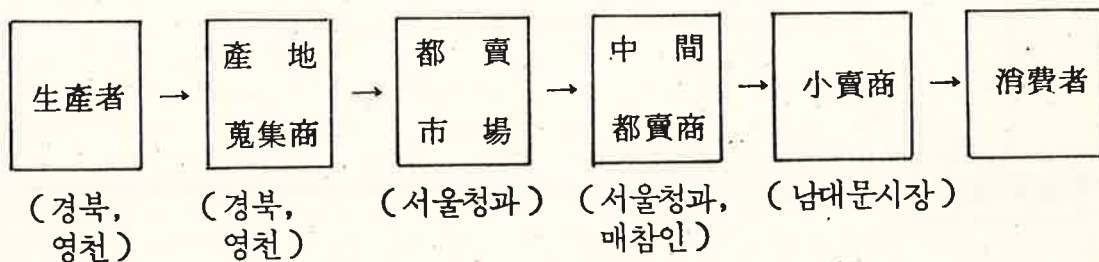
○ 배추 (홍성 → 서울, '90. 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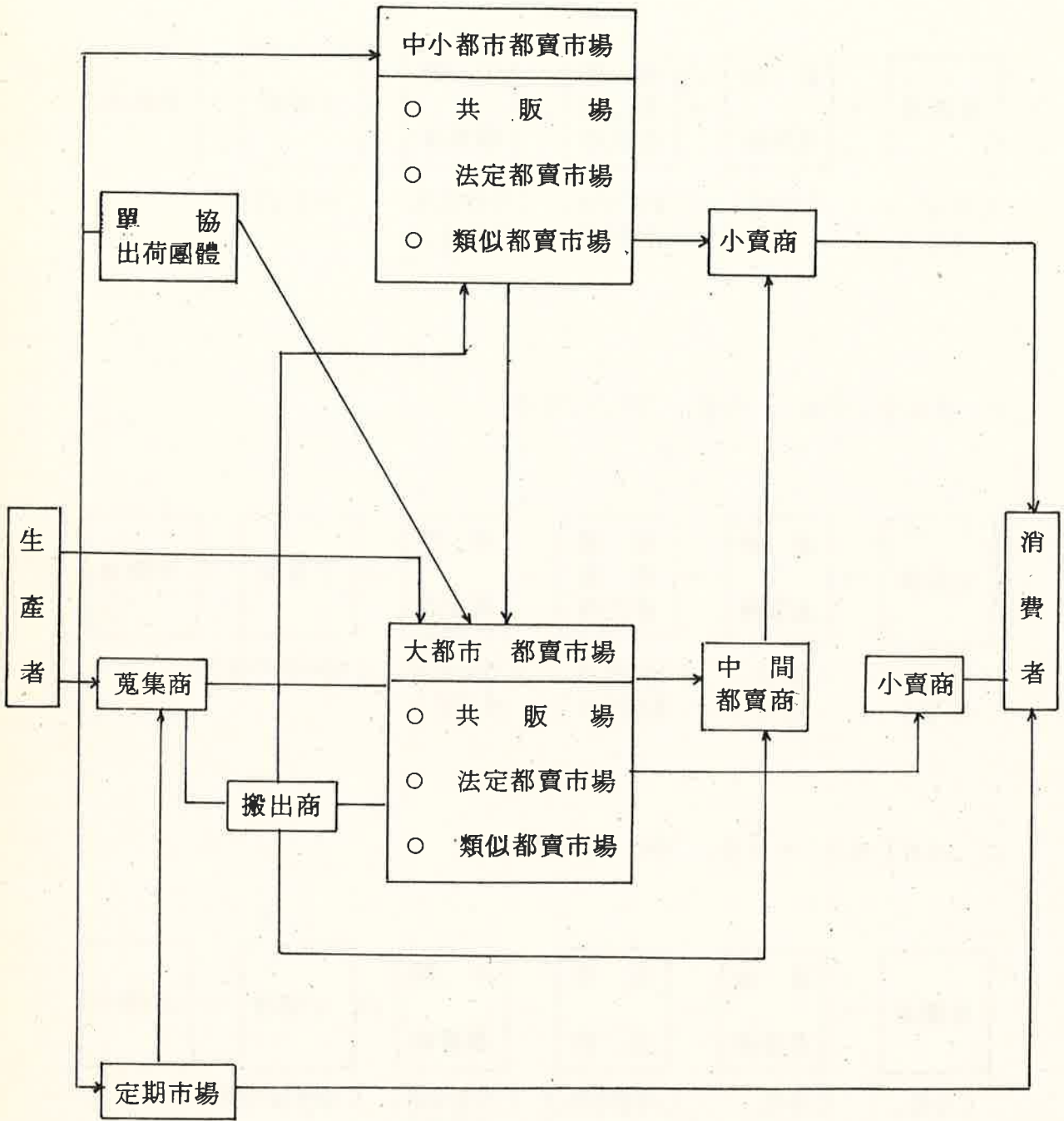
○ 풋고추 (밀양 → 서울, '90. 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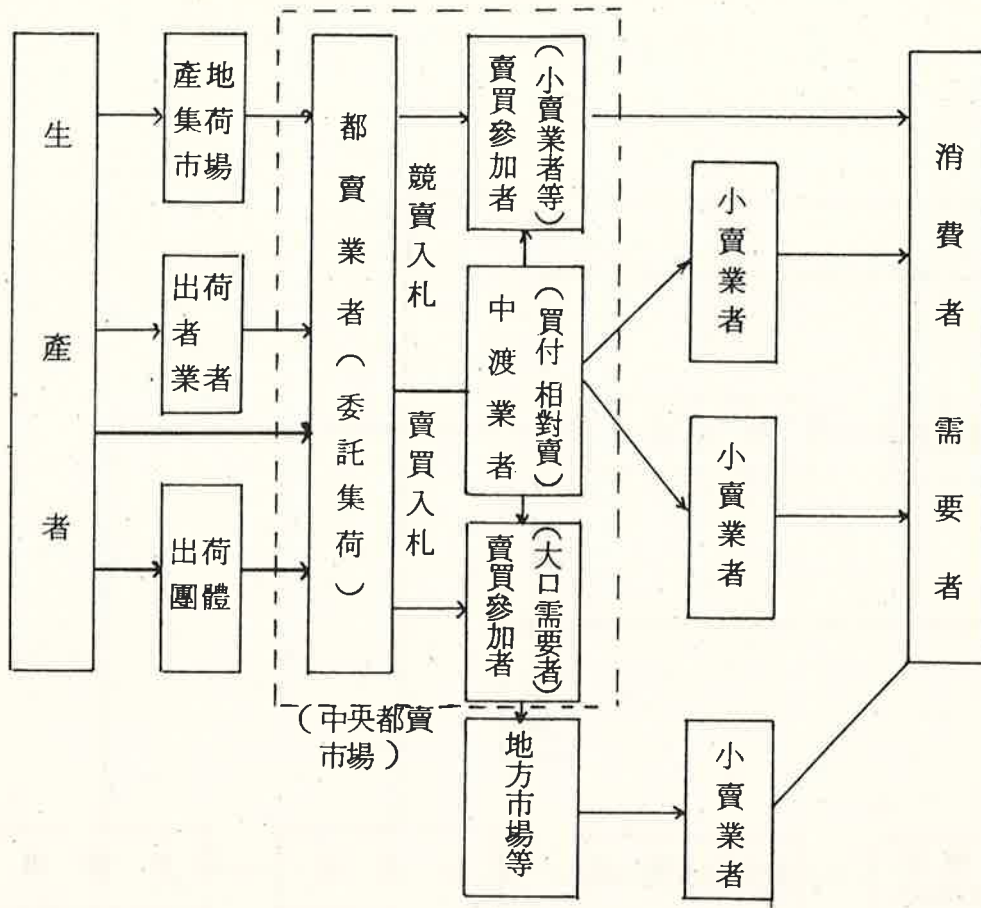
○ 사과 (영천 → 서울, '90. 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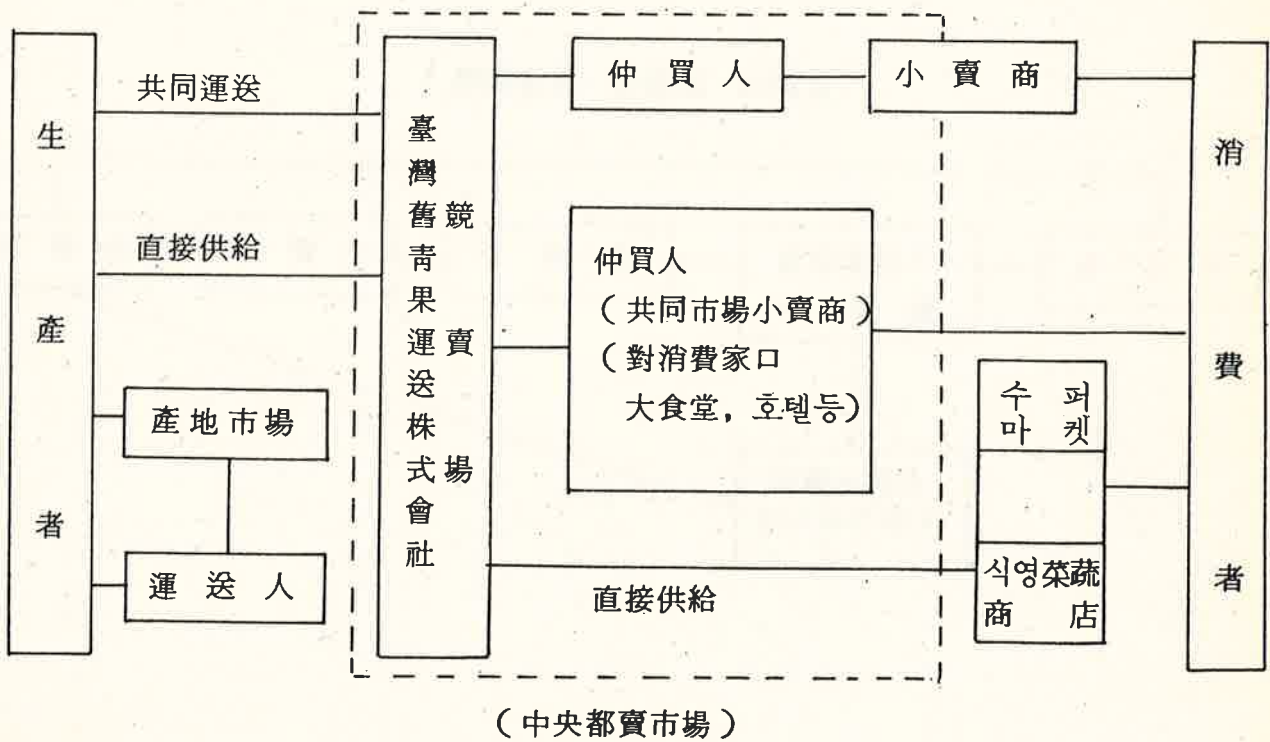
〈 우리나라 青果物の 流通經路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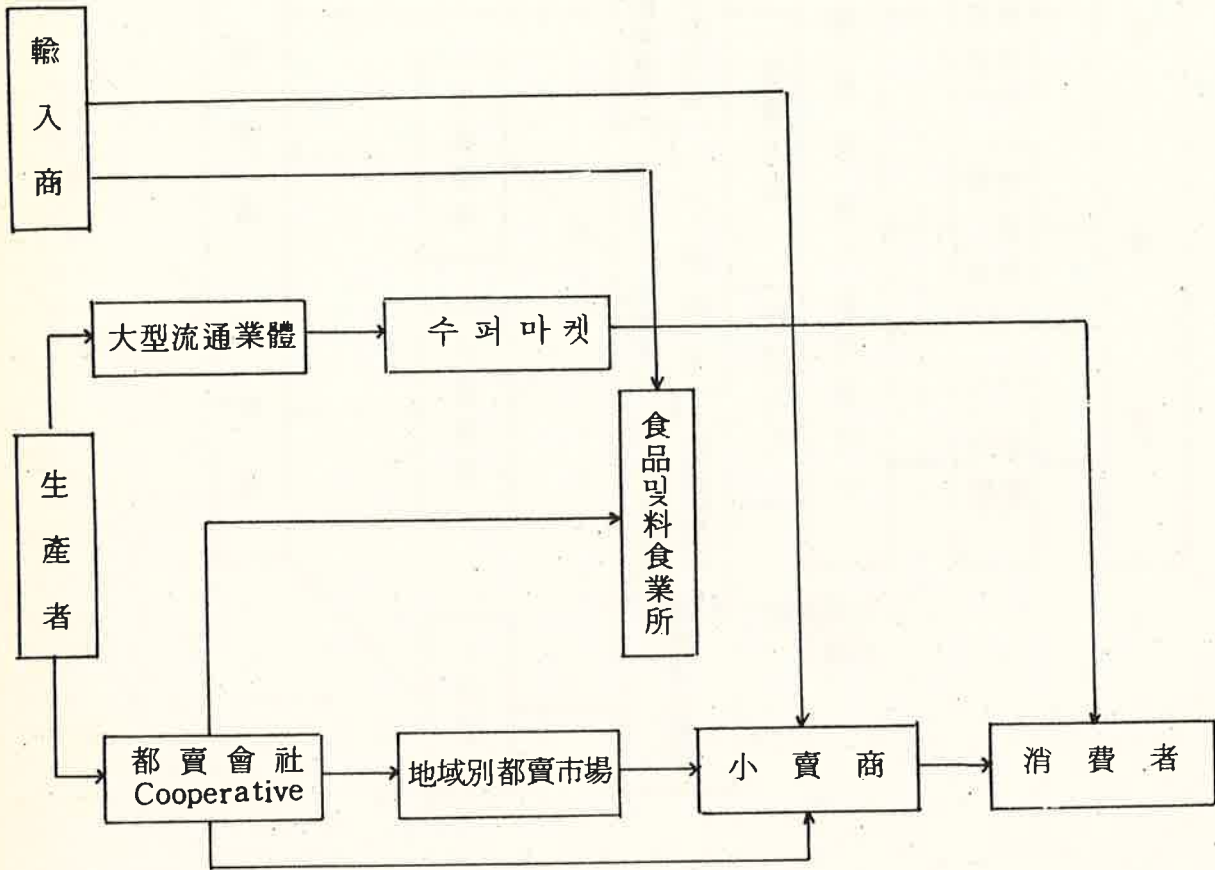
〈日本の 青果物 流通経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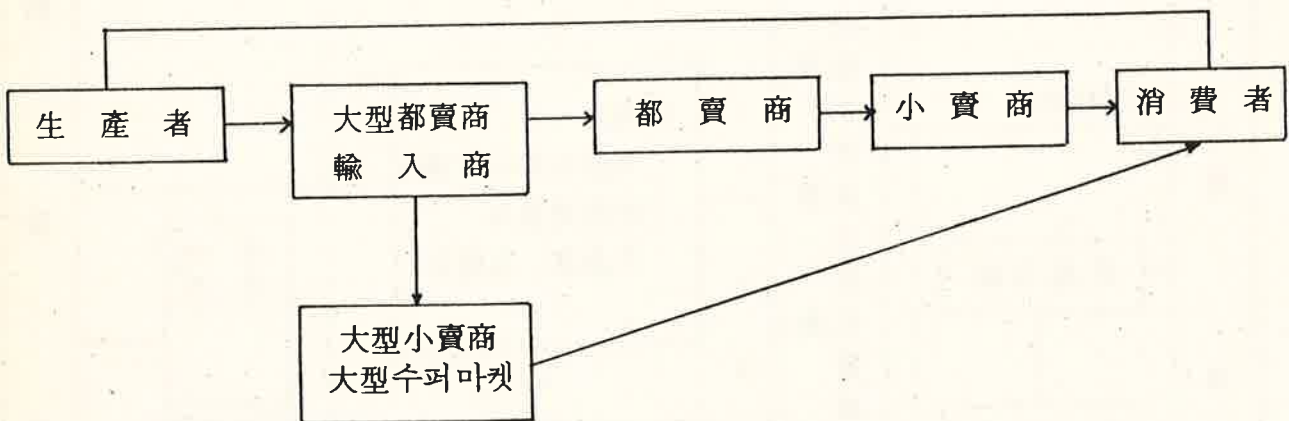
〈臺灣の 青果物 流通経路〉



〈 美國의 農産物 流通經路 〉



〈 英國의 農産物 流通經路 〉



4. 外國과의 流通마진比較

	무우	배추	당근	양파	양배추	상치	오이	토마토	감귤	사과
韓 國	% 68.2	72.8	67.9	46.5	78.0	44.5	58.3	52.0	-	-
日 本	71.6	74.8	71.3	80.2	66.7	57.7	56.7	61.6	76.1	57.4
臺 灣	76.3	66.8	64.1	58.7	72.3	-	-	-	-	-

〈美國의 農産物 流通마진(1987)〉

品 目	1977		1987		마진率增加 ('77 ~ '88)
	農家受取價格率	마진率	農家受取價格率	마진率	
○ 肉 類	53 %	47 %	47	53	6
○ 酪 農	52	48	44	56	8
○ 家 禽	56	44	45	55	11
○ 달 걀	64	36	54	46	10
○ 穀類 · 빵類	12	88	8	92	4
○ 新 鮮 果 實	29	71	27	73	2
○ 新 鮮 野 菜	33	67	31	69	2
○ 加工果實및野菜	19	81	24	76	△ 5
○ 지 방 · 기 림	29	71	18	82	11
○ 마켓 비스킷 (平 均)	38	62	30	70	8

5. 流通現況 比較

	우리나라	日本・臺灣型	歐美型
1. 營農構造	小規模 複合營農	小規模 複合營農	大規模 專門經營
2. 需給 및 生産	增産指向에서 適正 生産 必要性 擡頭	增産爲主에서 部分的 生産調整	過剩生産抑制가 政策 基調
3. 靑果物流通			
○ 都賣市場	主要都市 公營都賣 市場建設中	政府가 投資 및 經營管 理擔當 (日本 1,890 個 臺灣 94 個)	政府投資 및 運營管理 擔當
○ 產地市場	○ 產地共同出荷 體系 未洽	○ 政府가 協同組合 共同 出荷 積極 支援 - 日本 50% 補助 - 臺灣: 農協出荷分 最優先 販賣	○ 協同組合의 產地流通 活動에 政府가 資金 支援 및 損失補填 (EC) ○ 產地競賣市場 發達
○ 小賣市場	○ 在來市場 및 零 緋小賣商 主類	○ 大型小賣機構 增加 趨勢 - 슈퍼마켓의 市場占 有率 50% (日本)	○ 大型小賣機構 發達 - 슈퍼마켓의 市場占 有率 60% (美國) ○ 消費組合이 發達
4. 流通마진率 ('82)	○ 무우 68.2%, 배추 72.8, 감귤 44.3, 양배추 45.6	○ 日本 - 무우 (71.6) 배추 (74.8) 감귤 (76.1) ○ 臺灣 - 양배추 (72.3)	○ 美 國 - 新鮮菜蔬 69% - 加工菜蔬 83 - 穀物, 加工品 89
5. 檢討意見	○ 各國 共히 流通改善을 爲해 積極的인 投資와 支援을 하고 있음. ○ 靑果物에 있어서는 年度別, 季節別 價格變動 振幅이 크고 流通 마진이 높은 것은 各國 共通임. ○ 東洋圈의 경우, 消費地 都賣市場 經路가 流通過程의 主를 이루며, 歐美에서는 大型小賣機構와 產地 競賣市場이 開發되어 있음.		

V. 1991년

農水產物流通構造改善對策

1991. 6. 10

目 次

I. 農水產物 流通與件과 問題點	111
1. 農水產物 流通與件的 變化	111
2. 農水產物 流通의 問題點	112
II. 改善對策	113
1. 生産者團體 中心의 產地流通機能 革新	115
2. 公營都賣市場 建設擴大 및 公正去來秩序 確立	118
3. 消費地 直去來 擴充	120
4. 需給 및 價格安定	121
5. 不正流通行爲根絶 및 制度改善	123
6. 流通統計調査 및 流通情報의 內實化	126
7. 流通專門人力 育成과 教育·弘報 強化	127
III. 向後 推進計劃	128
IV. 投資計劃	129

I. 農水產物 流通與件과 問題點

1. 農水產物 流通與件的 變化

國民所得水準 向上

⇒ 新鮮菜蔬, 쇠고기 등 高級食品 選好에 따른
新鮮度維持와 衛生的인 處理등을 통한
商品性提高 必要

都市人口 急增

⇒ 農水產物 流通物量 增加로 인한 都賣市場등
大量流通施設의 重要性 增大

農業構造調整

⇒ 農業生産의 專業化, 規模化 및 主産團地化로
主要品目別 專門流通體制 構築

UR 協商妥結

⇒ 價格補助政策의 縮小 不可避로 流通部門에
對한 支援擴大를 통한 農漁家の 實質所得
提高

地方化時代 開幕

⇒ 地方自治團體 및 農·水·畜協等 生産者
團體의 地域農水產物 流通에 대한 役割 增大

2. 農水產物流通의 問題點

〈 流通에 대한 一般的인 認識 〉

- 流通段階가 複雜하고 流通마진이 높다
- 都賣市場에서 公正한 去來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中間商人이 價格을 操作하여 暴利를 취하고 있다

- 生産者團體의 產地 流通機能이 未洽하여 商人이 產地流通 主導
- 公營都賣市場建設 不振과 上場競賣등 公正去來가 定着되지 않아 去來秩序 紊亂
- 店鋪賃貸料, 生計費 및 人件費 上昇등의 要因으로 小賣段階 流通마진 過多發生
- 農水產物 生産은 季節과 氣象與件에 크게 左右되므로 需給과 價格安定에 限界
- 品質속이기와 價格操作등 不正流通行爲 尙存

Ⅱ. 改 善 對 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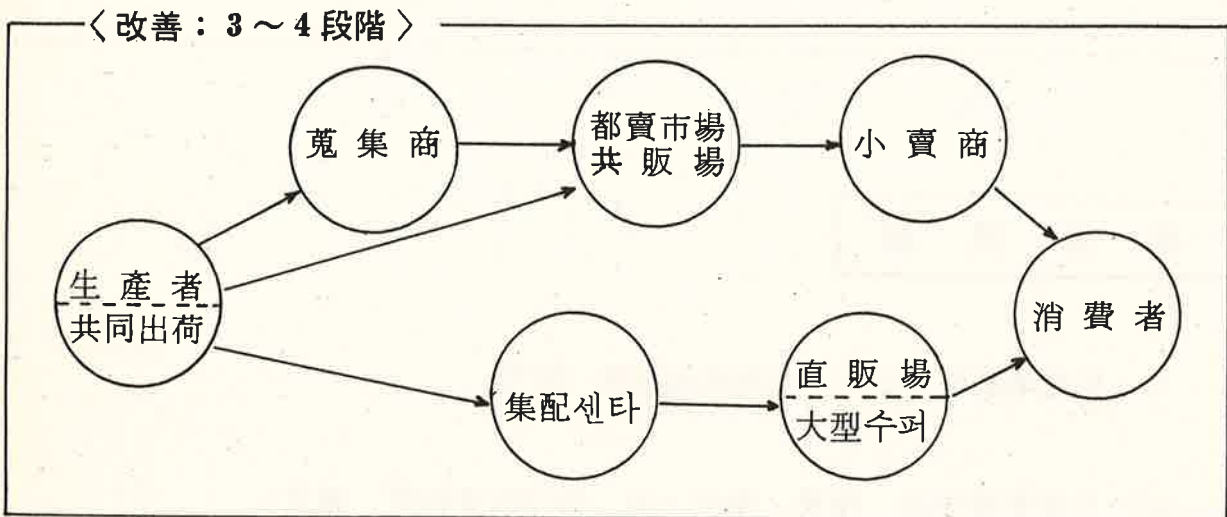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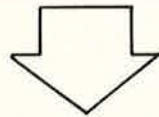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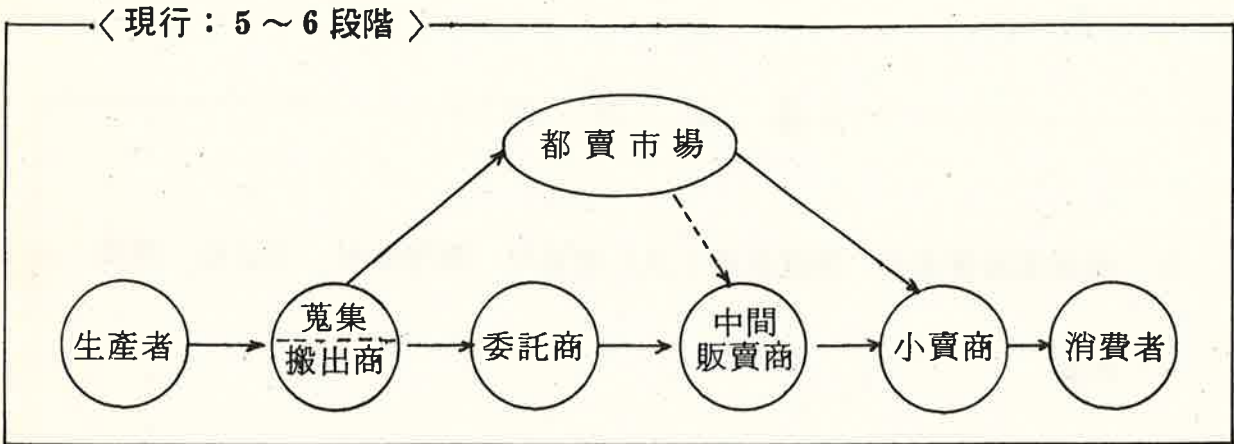
〈 基 本 方 向 〉

- 流通施設擴充과 制度改善으로 流通의 圓滑化와 公正한 價格 形成
- 中央政府, 地方自治團體 및 生産者團體의 役割分擔으로 流通 構造의 劃期的인 改善

推 進 課 題

- 生産者團體中心의 產地流通機能 強化
- 公營都賣市場 建設 擴大 및 公正去來秩序 確立
- 產地와 消費地 直去來 擴大
- 需給 및 價格安定 機能 強化
- 不正流通行爲 根絶과 制度改善

改善目標



○ 產地流通

— 生産者團體 主導의 共同出荷 擴大로 農家の 市場對應力 提高

○ 都賣市場

— 公營都賣市場 擴大建設로 大量・迅速流通과 公正去來 定着

○ 小賣段階

— 集配센터와 直販場을 통한 直去來擴大로 民間流通機能 先導

1. 生産者團體 中心의 產地流通機能 革新

〈 現況과 問題點 〉

- 產地 流通施設이 不足하여 選別, 包裝, 加工, 貯藏機能 未洽
- 農漁民의 共同出荷 不振으로 生産者의 市場對應力 脆弱
- 무, 배추등의 밭떼기去來 盛行 (高冷地菜蔬 90%, 양파 40%)
 - 農家は 勞動力不足, 販路 및 價格不安으로 밭떼기去來를 選好
 - 商人은 物量의 安定的 確保와 높은 收益을 目的으로 밭떼기去來를 選好

가. 農漁民의 共同生産・共同出荷能力 培養

- 共同出荷組織 育成
 - 主産團地의 作目班과 協同出荷班을 統廢合하여 共同生産・共同出荷組織으로 育成
 - 出荷調節資金등 各種 支援資金을 共同出荷促進資金으로 統合
- ⇒ 共同出荷가 活性化되고 規模가 큰 共同出荷組織을 品目別 專門組合으로 育成

例) 濟州감귤組合, 養鷄組合등

- 共同出荷擴大: ('90) 20 → ('96) 40% (日本: 60%)

나. 產地流通施設 擴充

- 單位農協 中心으로 青果物 綜合流通施設 設置
 - 集荷, 洗滌, 選別, 包裝, 加工, 貯藏등을 위한 綜合施設
 - 主要 主産團地에 2001年까지 343個所 建設
- 產地 集荷場 設置擴大로 產地競賣 活性化
 - 產地 競賣 擴大實施로 農漁民 受取價格 提高
 - 例) 昌寧郡 南旨單協의 오이 競賣, 南海郡 二東單協의 마늘 競賣

다. 農協의 流通機能 強化

- 流通事業에 注力할 수 있도록 農協組織 強化
 - 零細單位農協(658個)의 統廢合으로 產地流通機能 強化
 - 單位農協의 流通專擔 常務制를 '96까지 全單協으로 擴大
 - 農協의 買取事業 擴大로 產地밭떼기 商人 牽制
 - 農協의 高冷地菜蔬 事業所 設置('91.5.17)
 - 農協이 流通事業에 積極 參與할 수 있도록 損失補填基金 擴大
 - ('91) 100 → ('96) 600 億원
- ⇒ 長期的으로는 農協의 共同出荷 擴大로 밭떼기 去來를
漸進적으로 縮小

라. 規格包裝去來 擴大 實施

- 規格出荷品에 대한 都賣市場에서의 優待措置 및 非規格 出荷
品에 대한 制裁
 - － 規格包裝品에 대한 上場手數料 引下 및 競賣優先順位 賦與
 - － 規格화가 定着된 果實類를 中心으로 非規格 出荷品은 去來를
制限

- “얼굴있는 農水産物” 供給으로 規格化에 대한 消費者 信賴提高
 - － 生産者團體의 品質自律檢査 및 組合名, 生産者名 表示推進
 - － 地域特産品の 경우 地方自治團體長의 品質保證書 添附 勸獎

- 規格包裝化 定着을 위한 支援擴大
 - － 標準去來規格의 擴大制定 ('93 年까지 完了)

('91) 35 → ('93) 105 個品目
 - － 規格包裝에 대한 生産者와 消費者의 認識이 定着될때까지

包裝資材費 支援 擴大

2. 公營都賣市場 建設擴大 및 公正去來秩序 確立

〈 現況과 問題點 〉

- 公營都賣市場 建設遲延으로 類似都賣市場 去來盛行
 - 公營都賣市場이 可樂洞등 6個所에 不過
 - 公營都賣市場 建設敷地 確保隘路
- 公營都賣市場에서의 上場競賣 未定着

가. 公營都賣市場 建設擴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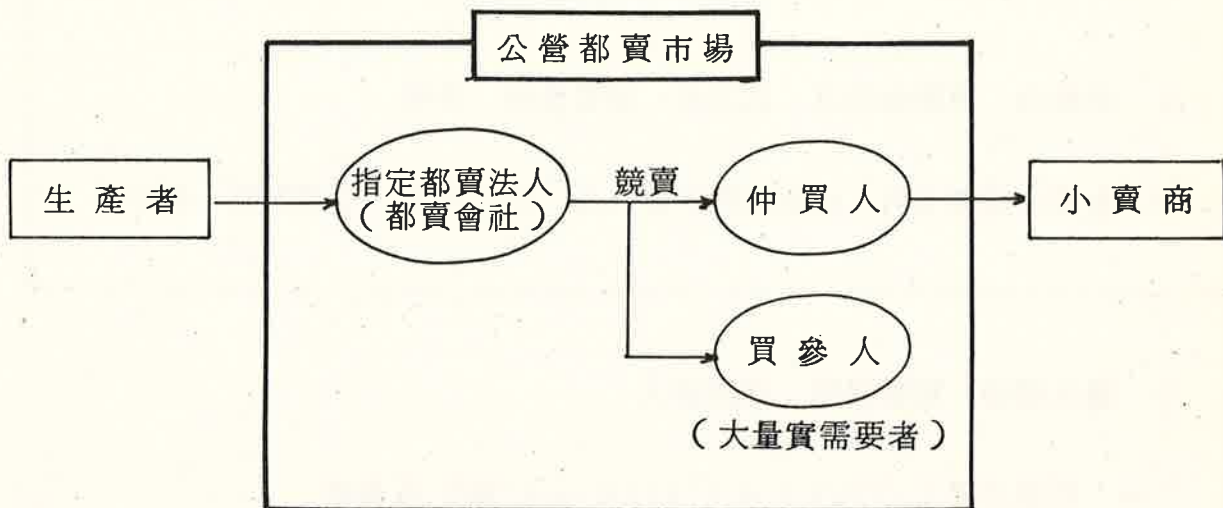
- 大都市 公營都賣市場 早期 建設 (6個所 開設 運營)
 - '93 까지 完工 : 7個所 (仁川, 水原, 釜山, 全州, 서울東北, 春川, 昌原)
 - '93 以後 推進 : 6個所 (釜山東部, 서울西南등)
- ※ 公營都賣市場은 社會間接資本施設 擴充次元에서 集中的인 投資擴大 必要
- 中小都市에 대한 公營都賣市場 建設 推進
 - '92 年以後 推進 : 天安, 安養, 安山, 忠州등
- 農水産物流通公社의 花卉共販場 早期 開設로 꽃의 上場競賣 去來誘導
 - 꽃主產地 中心으로 共販場 追加建設 推進

公營都賣市場 建設敷地 確保方案

- 公營開發地區內 都賣市場 敷地는 造成原價로 供給原則
- 서울東北圈 都賣市場은 總理室 調整으로 所要敷地를 早速히 確保하여 '93 年까지 完工토록 推進

나. 都賣市場 運營改善으로 公正去來秩序 確立

〈 都賣市場去來體系 〉



○ 上場競賣制度的 擴大推進

- 果實類, 包裝菜蔬類 등은 '91.7月부터 上場競賣 全面 實施
- 무·배추 등은 競賣場 確保와 規格化 등 與件造成後 實施

○ 公正去來 與件造成

- 公營都賣市場 仲買人에 대한 所得標準率 引下와 類似都賣市場에 대한 課稅強化로 公營都賣市場 機能 活性化
- 指定都賣法人에 대한 定期的인 實績評價로 施設使用面積 調整
- 生産者團體 등의 서울西南圈 都賣市場 建設運營
 - 敷地는 서울市가, 施設의 建設과 運營은 生産者團體 등이 擔當

○ 不公正去來 要素의 과감한 除去

- 常習的인 個別委託去來 仲買人은 許可取消等 強力한 行政措置
- 電光板 또는 게시관設置 運營으로 去來內容의 公開

3. 消費地 直去來 擴充

〈 現況과 問題點 〉

- 產地와 消費地와의 直去來 連繫體制 未洽
- 生産者團體등의 直販施設不足으로 民間流通 先導機能 未洽

- 農水産物 集配센터 建設擴大

- 設置計劃 : ('91) 1 → ('93) 6 → ('96) 15 個所

- 生産者團體등의 直販場 建設

- 直販場 設置計劃 : ('90) 162 → ('93) 300 → ('96) 400 個所

- 農水産物流通公社의 示範小賣店鋪 指定運營 擴大

- 指定小賣店 : ('91) 250 → ('93) 600 → ('96) 1,000 個所

- 地方都市 週末 農漁民市場 開設運營

- 農漁民과 都市民의 直去來 場所로 活用

- 今年 9月中 서울木洞에 農産物直販市場 開設運營

- 生産者組合과 消費者協同組合間的 直去來體制 構築으로

生産者와 消費者 同時 保護

4. 需給 및 價格安定

〈 現況과 問題點 〉

- 農業觀測 및 流通豫告등 生産調整 努力에도 不拘하고 一部 品目の 過剩・過少生産 反復

例) :

	'86	'87	'88	'89	'90
— 高추生産量	198 千톤	138	209	149	133

- 收買備蓄과 出荷調節등 多岐적인 價格安定施策을 推進하고 있으나 農水産物 特性上 價格安定 未洽
- 生産者團體의 貯藏・加工機能이 脆弱하여 盛出荷時 價格安定 未洽

가. 品目別 特性에 따른 生産 및 需給安定裝置 講究

- 貯藏性은 있으나 需給이 不安定한 양념類등은 生産出荷調整約定制를 擴大 實施
 - 過剩生産時 政府 및 生産者團體가 下限價格 保障
 - '91 事業(마늘, 양파) 成果 分析後 對象品目 擴大
- 貯藏性이 낮은 무, 배추등의 菜蔬類는 加工 및 出荷調節事業 擴大
 - 單位農協이 運營하는 김치工場增設과 무·배추절임등 單純 加工處理工場 擴大建設 支援

나. 地方自治團體 및 生産者團體의 需給調節 機能 強化

○ 地方自治團體의 地域單位 農水産物 需給安定計劃 樹立 實施

— 地域農水産物 價格安定基金 設置

— 地方自治團體의 流通機能 強化를 위해 「道 流通課」 및

「郡 流通係」를 新設

○ 生産者團體의 自助金 造成으로 價格安定機能 強化

— 生産者團體의 特性에 따라 自助金を 造成 運用

다. 農水産物 價格安定基金 擴大造成으로 需給調節

○ 農安基金 規模擴大 : ('91) 6,113 億원 → ('94) 1 兆원

라. 生産者團體의 貯藏·加工機能 擴充

○ 貯藏 및 單純加工을 위한 施設擴充

('91) 53 → ('93) 150 → ('96) 380 個所

例) 연천군 청산單協의 김치加工工場 運營(무, 배추, 고추가루

生産과 김치加工을 連繫)

○ “ 農水産物 加工産業 育成 및 品質管理에 관한 法律 ”을

制定하여 加工産業 育成('91 定期國會 上程推進)

5. 不正流通行爲 根絶 및 制度改善

가. 쌀 流通

〈現況과 問題點〉

- 糧政與件 變化에도 不拘하고 糧穀加工, 流通部門의 競爭을 制限하는 各種 行政規制 殘存
- 客觀的인 等級基準이 없고 解包한 狀態로 去來되어 產地 속이기등 不正流通行爲 發生

○ 行政規制緩和 및 去來秩序 確立

- 加工業 및 賣買業의 許可制를 登録制와 申告制로 轉換하고, 包裝쌀은 모든 小賣店에서 自由販賣 許容
- 一般벼의 品種別, 類型別 差等收買를 實施하고 價格安定用 政府米 放出制度를 粗穀公賣制로 轉換
- '96 年까지 市中流通米의 90%以上을 規格包裝化하여 不正 流通行爲 根絶

○ 米穀綜合處理場의 擴大設置로 產地米穀流通 革新

- 쌀 集產地 單位農協을 中心으로 '96 年까지 400 個所를 建設 하여 市中 流通米의 30%(900 萬石)以上 處理
- 벼의 買入, 乾燥, 貯藏, 加工, 包裝, 販賣등을 一貫處理함으로써 收穫에서 加工까지 發生하는 損失을 防止하고 勞動力을 節減

나. 肉類流通

〈 現況과 問題點 〉

- 零細屠畜場의 亂立에 따른 過當競爭으로 屠畜不條理 發生
 - 都賣市場과 屠畜場의 未分離로 都市公害 誘發
 - 輸入쇠고기의 韓牛 遁甲販賣등 不公正去來行爲 發生
-
- 產地에 部分肉 加工工場 設置로 生畜流通에서 部分肉 流通體制로 轉換
 - 部分肉 加工工場 : ('93) 2 → ('96) 5 個所
 - 쇠고기 部分肉 流通量 : ('93) 10 → ('96) 40 %
 - 現代式 屠畜, 加工, 販賣施設을 갖춘 屠畜場의 新規許可로 屠畜 業界의 競爭 促進
 - 枝肉專用 都賣市場建設로 屠畜場과 都賣市場을 分離하여 都市公害 問題 解消 : ('93) 3 → ('96) 9 個所
 - 畜產物屠體等級制 實施를 위한 法的根據 마련 및 等級士 養成 (50名)
 - 畜產物 不正流通防止를 위한 消費地 流通施設 擴充
 - 畜產物 綜合販賣場 擴大設置 : ('91) 40 → ('93) 100 → ('96) 150 個所
 - 部位別 販賣로 一般精肉店의 公正去來 誘導 및 消費者 教育機能 遂行
 - 輸入쇠고기 專門販賣店 擴大設置
('91) 3,200 → ('93) 4,000 → ('96) 5,000 個所

다. 水産物 流通

〈 現況과 問題點 〉

- 水産物 大規模 貯藏業者등의 價格操作行爲 尙存
 - 内장이 除去되지 않은 狀態에서 流通됨으로써 鮮度維持가 어렵고 都市公害 誘發
-
- 水協의 貯藏施設 擴充과 買取物量 擴大로 價格操作行爲 牽制
 - 貯藏施設 : ('91) 46 → ('93) 56 → ('96) 71 個所
 - 自體買取 : ('91) 29 → ('93) 105 → ('96) 284 千톤
 - 産地水協에 内臟除去, 選別 및 冷凍·冷蔵施設등 水産物 綜合 處理場 設置 : ('93 까지) 5 → ('96 까지) 9 個所
 - 産地 去來制度의 改善
 - 漁業別 漁獲物 揚陸港口 指定 制度 廢止
 - 産地 販賣場所를 活魚共販場등 部類別로 專門化
 - 遠洋漁獲物の 公正去來 誘導
 - 專用 埠頭 建設로 遠洋漁獲物 流通圓滑化 ('94 까지 施設完了)
 - 保管 倉庫別, 主要 魚種別 在庫動向을 隨時點檢하여 適期 出荷 指導 (水産廳에 流通專擔課 新設)

6. 流通統計調査 및 流通情報의 內實化

〈現況과 問題點〉

- 農水産物 規格化 未洽 등으로 流通情報의 信賴性 低下
- 基本的인 流通統計가 없어 流通政策樹立에 隘路
- 多様な 流通情報의 蒐集, 分析, 分散體系 未備

○ 流通統計調査의 公式統計化

- 一段階別 流通費用, 流通量 등 基本統計를 生産하여 流通政策의 基礎資料로 活用('92年부터 試驗調査)
- 主要 都賣市場에 專擔調査員의 固定配置로 正確한 統計 調査

○ 流通情報의 效率的 運用

- '92年부터 市場別 價格과 去來量 등 情報內容을 生産者와 消費者가 쉽게 利用할 수 있도록 綜合分析하여 提供
- 單位組合中心으로 地域流通情報의 蒐集 및 分散體系 確立
- 流通情報의 綜合調整 및 分析機能 強化를 위한 專擔課 設置
- 音聲情報시스템 및 TV, 新聞등을 통한 分散方法 多樣化

7. 流通專門人力 育성과 教育·弘報 強化

〈 現況과 問題點 〉

- 生産者團體의 流通 專門人力 不足
- 消費者의 品質 識別能力 不足으로 不公正去來 尙存
- 流通關聯 從事者의 公正去來 意識 缺如

○ 生産者團體의 流通 專門人力 育成

- 單位組合別 流通 專門人力 育成을 위한 流通教育 擴大 實施

○ 消費者 保護를 위한 弘報強化

- 大都市에서 “農水産物 잔치”를 開催하여 消費者에 대한 農水産物 品質 識別教育場으로 活用
- 女性團體 등을 통한 農水産物 流通의 特性和 流通에 대한 올바른 認識提高

○ 流通關聯 從事者에 대한 教育強化 및 士氣振作

- 流通에 대한 體系的인 教育實施로 流通 專門人力 育성과 公正去來誘導
- 先進國의 流通分野 視察教育實施 擴大로 流通改善 認識提高

Ⅲ. 向後推進計劃

가. 細部施行計劃 樹立

- 改善對策의 徹底한 推進을 위하여 事業別, 年度別 細部施行計劃을 樹立하여 推進

나. 流通改善對策會議 設置

- 長官主宰 流通改善對策會議를 設置하여 機關別 對策推進 狀況을 點檢確認

다. 生産者團體등에 流通改善對策本部 設置

- 農·水·畜協 및 農水產物流通公社의 副會長(副社長)을 本部長으로 하는 流通構造改善對策 本部를 設置運營

라. 弘報強化

- 農水產物 流通構造改善對策에 대한 弘報強化
 - 生産者, 生産者團體, 流通人, 消費者의 自發的인 參與誘導
 - 國民의 共感帶 形成으로 需給과 價格安定 寄與
- 地方自治團體 公務員에 대한 流通教育 強化

IV. 投 資 計 劃

1. 長期投資計劃 ('92 ~ 2001)

- '92 ~ 2001 : 54,700 億圓 (國庫 38,500 , 其他 16,200)
- '92 ~ '96 : 23,700 億圓 (國庫 17,300 , 其他 6,400)
- '97 ~ 2001 : 31,000 億圓 (國庫 21,200 , 其他 9,800)

2. 部門別 投資計劃 ('92 ~ '96)

支援別 類別	計	國 庫	地 方 費	其 他
	億圓			
農 產 物	15,000	11,700	3,300	-
畜 產 物	3,000	-	-	3,000
水 產 物	1,100	1,000	100	-
加工等 其他	4,600	4,600	-	-
計	23,700	17,300	3,400	3,000

VI. 1994년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

1994. 10

목 차

I. 농수산물 유통의 문제점	138
II. 농수산물 유통개혁방향	139
III. 분야별 유통개혁	141
1. 산지유통개혁	141
2. 공영도매시장의 개혁	146
3. 소비지 유통경로의 다원화	153
4. 유통정보체계의 확립	158
5. 기타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	160
참고	
○ 중장기 개혁지표	
○ 개선된 유통모델	
○ 농수산물 유통·가공분야 투융자계획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안기금 지원계획	

I. 농수산물 유통의 문제점

○ 농수산물은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유통마진 (비용+이윤+위험부담)이 높아 농가 수취가격이 일반적으로 낮음 .

- 생산자 → 수집상 → 반출상 → 위탁상 → 소매상 → 소비자
-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수확, 상.하차, 수송 등 고정비용이 많이 들고
- 부패, 변질, 감모 등 상품성 저하로 유통비용 과다발생

※ 품목에 따라서 저장성이 강하고 포장규격화가 잘된 것은 농가수취율이 높음

	한 국 ('93)	일 본 ('93)
사 과 :	65.5 %	53.5 %
배 추 :	28.3	24.5

○ 산지의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생산, 출하조절이 미약

- 농협 등 생산자단체는 손실위험부담책임 등으로 공동출하, 산지가공분야 진출에 소극적이며,
- 위험부담이 큰 무, 배추 등의 품목에 대하여는 수급 및 가격안정장치가 미흡 . 산지수집상에 의한 일종의 선물거래 형태인 발떼기가 성행
- 농어민에 의한 생산, 저장, 가공, 판매의 계열화가 이루어 지지않아 농어민에게 환원되는 부가가치가 적음

○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와 신속·대량 유통을 위한 소비지 대규모 공영도매시장이 부족하고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에도 중매인의 수탁판매, 경매담합 등의 불공정거래가 성행

○ 도매시장을 보완해주는 물류센터, 직거래 등 다양한 유통경로가 부족하여 농어민의 출하처 선택의 폭이 좁음

II. 농수산물 유통개혁방향

가. 기본방향

○ 품목별 전문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농어민에게 환원

- 산지에서 선별, 포장, 저장, 공동출하를 하도록 유통시설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 산지 가공공장을 확대하여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의 향상 및 물류비용 절감
- 품질인증, 자기상표 개발 등으로 소비자로부터의 신뢰를 제고
- 유용한 유통 및 관측정보 제공으로 생산 및 출하조절 기능 강화

○ 산지 및 소비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의 확립

- 도매시장 중매인의 포전매매 (발떼기), 수탁판매 및 소매행위 금지로 불공정거래 척결
- 전품목 상장매매 실시 및 경매결과의 전산화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
- 산지 수집상 등록제 도입으로 포전매매를 제도권으로 흡수

○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다원화하여 유통비용의 절감 및 출하선택의 폭을 확대

- 공영도매시장을 조기 건설하여 대량·신속 유통체계 확립
- 물류센타를 대폭 확대 건설하여 도매시장 기능의 보완 및 유통단계의 축소
- 택배, 우편배달, 유통자회사 설립지원, 농어민장터 등 직거래사업의 활성화

○ 살아있는 유통정보의 제공으로 생산자의 시장교섭력 제고

- 실제 활용가능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분산체계 확립
- 유통정보 담당기관 육성 및 인력보강

나. 단계별 추진대책

< 단기 대책 >

○ '94년중 법개정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

- 중매인의 도매행위 허용, 공공출자법인에 의한 시장관리·운영의 일원화 등
도매시장 운영제도 개선
- 산지수집상의 등록제 실시
- 영농조합법인의 지역제한 폐지로 광역조직을 위한 제도개선 등

○ 법개정 없이 '94, '95의 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

- 농어민장터등 직거래사업, 유통정보 체계 확립, 유통자회사 설립 등

○ 정책개선으로 추진가능한 대책

- 상장수수료 인하, 경매의 투명성 확보, 전품목 상장거래 추진 등

< 중장기 대책 >

○ 생산자 및 소비자의 조직화등 많은 시간을 요하는 대책

- 품목별 생산자조직 및 소비자협동조합 육성 등

○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할 유통시설 확충

- 도매시장, 물류센터 건설, 포장센터등 산지유통시설 건설 등

○ 생산자, 소비자의 인식·상관행의 변화를 요구하는 대책

- 포전매매의 제도화, 포장규격화, 품질인증, 원산지표시 등

Ⅲ. 분야별 유통개혁

1. 산지유통개혁

가. 현황과 문제점

○ 농수산물 유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산지의 품목별 생산자조직화가 선행되어야
하나 조직화가 극히 미흡하고 산지수집상이 출하를 주도

- 생산자조직의 출하비율 : 10~20% 정도에 불과

※ 일본은 60년대 중반부터 농어민을 조직화하고 유통시설 등에 집중투자하여
생산자조직의 출하비율이 80% 수준에 달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농어민에게 환원

○ 선별·규격포장·예냉·저온수송 등 산지유통시설 장비에 대한 투자미흡 및 기존
유통시설에 대한 생산자조직의 경영능력 부족

- 무, 배추, 대파, 마늘 등은 대부분 산지수집상에 의하여 『산물』로 출하되고,
과실의 포장화율은 80% 이상이나 품질규격화는 거의 되어있지 않음

- 유통상 부가가치가 농어민에게 환원되지 못하고 도매시장에서 쓰레기 문제 야기

○ 풍흉에 의한 과잉·과소생산으로 인한 가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수급안정장치』와
『위험부담처리제도』가 없어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가 소극적

○ 생산자가 필요한 유통 및 관측정보의 부족으로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생산조정,
출하조정능력이 극히 미약

나. 산지유통의 개혁과제

< 과 제 1 >

농어민을 품목별 전문조직으로 육성하여 시장 대응능력 제고

○ 농어민을 조직화하고, 생산·출하·가공·판매사업의 많은 부분을 생산자조직이 맡도록 함으로써 보다많은 유통상 부가가치를 농어민에게 환원

- 주산지 중심으로 품목별 기초조직을 우선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규모가 큰 광역조직 육성
- 품목별로 조직원, 협동조합, 행정·지도공무원의 합동교육 실시로 공동체의식 제고

○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결성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 품목별 전문조합 설립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가 (농수축협법 개정)
- 영농조합법인의 지역제한 폐지 (농발법 개정)

○ 전략적으로 지원할 품목과 조직을 구분하여 필요한 유통시설과 자금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 생산·유통지원자금 : ('94) 100개소 2,065억원, ('95) 175개소 3,813억원
- 출하조절자금, 규격화 공동출하 선도금, 채소유통 활성화자금등 정책자금을 조직등급에 따라 차등지원하되 채소류에 우선지원

○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원체계와 심사분석 기능강화로 조직활성화 도모

- 포장규격화, 공동출하, 자기상표(성명, 전화번호등) 개발등에 대한 시군, 농검의 심사분석 강화로 유통사업시행이 불량한 조직은 차기지원시 지원중단, 우수조직은 자금지원 강화 및 시상

< 과제 2 >

고품질 생산유도 및 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표준규격, 품질인증제, 원산지표시제를 정착

○ 『산물』 출하는 『포장화』 를 유도, 포장품은 크기위주의 규격에서 품질위주의 규격으로
기준을 보완하여 고품질 생산을 유도

- 무, 배추의 포장화, 사과, 배, 감귤 등은 품질위주의 규격화

○ 등급, 생산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표시로 상품에 대한 책임의식과 반품보장

- 생산자단체가 『표준규격품』 을 포장상자에 표시

- 포장자재비, 규격화 공동출하 선도금을 우수조직에 집중지원

- 도매시장 출하품의 내용이 표시와 불일치 할 경우 최저가격 지불, 반품등 불이익 조치

- 규격품의 하역장소 별도지정 및 우선경매

○ 유기농산물, 지역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정착

- 생산자단체의 자체검사기능 강화

- 물류센타의 소매점, 백화점 등에 품질인증품 판매코너 설치

- 농검직원의 도매시장 점검확대로 부정품 통제

○ 국내산과 수입산의 원산지표시제 정착으로 시장차별화 촉진

-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및 지속적 단속

- 위반자 처벌 및 신문등에 공표

< 과제 3 >

생산자조직이 산지에서 선별, 규격포장, 저장, 가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 시설 및 장비지원은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우수성 정도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농산물포장센터 (160개소)와 청과물종합처리장 (24개소) 설치로 상품성 제고
 - 산지에서 선별, 규격포장, 예냉, 저장, 저온수송, 가공, 판매 등 일련의 종합처리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농어민 소득으로 전환
 - 적지에 능력있는 생산자조직이 사업을 할수 있도록 공모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되 산지공판장 운영조직을 우선
- 마을단위 간이집하장(4,000개소)을 대폭 확대 설치하여 산지수집, 출하기능 강화
 - 순회수집으로 영세 농어가의 출하편의 도모, 생산자조직의 공동출하촉진
 - 간이선별, 포장기, 채소결속기, 세척기등 간단한 부대시설도 병행 설치가능
- 선과시설, 포장기, 간이저온창고, 저온수송차량 등 소규모 유통시설은 『기초조직』의 생산시설과 병행하여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설치지원
- 주산지 중심으로 산지가공공장 (2,000개소)을 육성하여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어민단체의 식품제도가공업의 인.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 시설자금 지원이외에 기술.경영진단, 판로개척, 홍보등 소프트웨어측면 지원강화
- 주산지 경매식집하장을 공판장화하여 산지 경매기능 활성화
 - 산지판매의 편의도모, 생산자의 판매교섭력 강화

< 과제 4 >

포전매매 (밭떼기)의 제도화로 산지유통의 공정거래 실현

○ 포전매매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

- 공정성이 있고 생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여 널리 보급
- 포전매매 서면계약을 적극 유도
- 산지 포전매매 업자는 『수집상』으로 출하처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등록
- 필요시 계약이행 수집상(저장업체 포함)에게 자금지원, 사무실 제공 등으로 제도권 유통으로 흡수

○ 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생산농가가 생산·출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 생산자단체가 계약가격을 보장

- 계약이행으로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그 일부를 『채소유통활성화자금』으로 보전하고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 일부를 적립
- 대상품목은 수급이 불안정한 무, 배추를 우선하고, 마늘, 양파 등으로 확대

※ 중매인의 포전매매, 수탁매매행위는 금지

2. 공영도매시장의 개혁

가. 현황과 문제점

○ 공정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공영도매시장 부족으로 유사시장 등이 거래를 주도

- 서울의 경우 가락시장에 의존, 제2, 제3시장 건설이 지연
- 유사시장의 무자료거래 성행

○ 공정거래질서를 지키는 관행이 미정착

- 지정도매법인의 서비스기능이 미약하고 상장수수료 과다 징수
- 중매인의 산지 발매기, 수탁매매행위 등 변칙거래 성행

○ 개별 출하농가를 보호할 가격안정장치의 미흡과 경매의 투명성 부족

○ 시장관리공사 (사업소)의 질서유지기능 부족

- 불법시설의 설치, 비허가상인의 영업행위
- 중매인의 불법행위 단속

○ 기타 각종 부조리와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부당징수금, 경매 및 시장관리운영상 부조리 등

나. 도매시장의 개혁과제

< 과제 5 >

도매시장 관리·운영을 전담하는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등
지정도매법인의 대농민 서어비스 기능 제고

○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그 관리와 운영체계를 개선

- 개설자의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공사,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등에 의한 『공공출자법인』이 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
- . 『공공출자법인』은 지방자치단체, 관리공사, 생산자단체가 51%이상 출자
-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관리공사의 비상임 임원으로 시장관리에 참여토록 함

○ 지정도매법인에 대한 평가제 강화로 공정거래 활동을 강화하도록 촉구

- 지정도매법인이 『수탁판매 약관』을 개설자에게 제출하고, 개설자는 그 이행여부를 점검
- 공정거래, 산지출하촉진, 경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와 출하농어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에 따라 매장면적 재배분, 자금지원 차등화 등에 활용하고, 지정도매법인의 기간연장여부 결정에 반영
- 실적이 일정기준이하로 부진할 경우는 법인지정을 취소
- 개설자가 지정도매법인을 지정할때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정도매법인별 『차액보전공제금』을 적립, 경락가격이 특별히 낮은 농가에 대하여 차액을 보전토록 제도화

-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공제금에서 일정차액을 보전
- 같은 품질 여부의 판정 등 분쟁발생시 농협의 『품질검사관』이 판정

< 과 제 6 >

지정도매법인의 상장수수료 인하로 출하자 부담경감

- 가락시장은 상장물량 증가, 경락가격 상승으로 지정도매법인의 상장수수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출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를 인하 (1.0 - 1.5% 포인트)
 - 지방공영도매시장은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인하조치
 - 규격·공동출하품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30%까지 출자에게 환원

< 과 제 7 >

경매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출자의 최저가격 제시제 도입

- 경락가격과 낙찰자를 즉시 현장의 이동모니터에 입력하고, 출자상담실의 전광판에도 게시
 -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가격, 출하량 등 유통정보를 종합하여 하이텔, 천리안, TV 문자방송 등을 통해 신속히 분산하는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 경매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카메라 설치
- 출자가 희망할 경우 최저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과 제 8 〉

유통발전협회기금의 활용도 제고

○ 바나나등의 상장 수수료 일부를 적립하여 조성한 『유통발전협회기금』을 유통발전사업에 활용유도

- 채소류등의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자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 금번에 한해서 특별사업에 일부 지원
 - 경락가격이 현저히 낮을 경우 일부 보전해 주는 『차액보전공제금』
 - 경매장내에 이동모니터 설치 및 농림수산부와 온라인화, TV문자방송용 디코더등 전산화 사업
 - 신선 채소류의 저온수송을 위한 보냉차 지원등

〈 과 제 9 〉

『중개』만 하도록 되어있는 『중매인』 제도를 『중도매인』 제도로 개선하여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

○ 중매인의 『산지수집, 도매, 중개, 소매』에 걸친 광범위한 영업영역을 분할

- 산지활동은 생산자단체, 지정도매법인이 맡고
- 중매인은 상장된 농수산물을 거래하되 『도매』를 원칙으로하고 『중개』를 예외적으로 인정
- 도매시장내에서 소매행위는 단계적으로 분리
- 중매인 허가시 수집상과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가 수집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상호결탁을 방지

○ 개설자가 중매인 허가시 일정기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함.

○ 중매인의 포전매매, 수탁매매행위는 금지하되 출하량이 극히 적은 품목과 저장성 품목등 원천적으로 상장매매가 어려운 품목은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비상장 거래토록 제도화

〈 과 제 10 〉

전품목 상장거래로 거래질서 확립

○ 중매인의 포전매매와 수탁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도매시장에 입하되는
전품목의 상장거래 추진

- 가락시장 : '94. 9. 1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 특히 가락시장에서의 무, 배추 등은 '95. 1. 1부터 지정도매법인이 직접
수탁판매토록 개선

- 그동안 중매인이 수탁거래하고 기록상으로만 상장하는 관행 불인정

- 도매시장의 분산능력 보강을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중판은 중매인으로 흡수

- 필요시 중매인·매참인 이외의 제3자도 매입할 수 있도록함

- 지정도매법인의 직접수탁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신규 지정도매법인 설립검토

○ 매매방법은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수의매매 방식도 인정

- 경매사에 의한 『경쟁매매』 형태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전산화

○ 개설자는 각 시장별 세부 상장거래 추진계획 수립추진

〈 과 제 11 〉

공영도매시장의 조기건설로 유사시장을 제도권내로 흡수

- 현재 개장 운영중인 10개 도매시장 이외에 24개 시장을 '98년까지 건설 완료
 - 개장목표 : ('94현재) 10, ('95) 5, ('96) 4, ('97) 5, ('98) 10개소
- 서울의 경우 가락시장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수도권 유통의 원활화를 위해 제2, 제3 도매시장을 최대한 기간내에 건설
 - 구리 도매시장 (동북권) : '96. 6 개장
 - 공항동 도매시장 (서남권) : '95착공, '97년 개장목표로 추진
- 신설시장의 경우 생산자단체에 의한 공판장이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을 할애
- 유사도매시장의 거래개선 및 시설정비
 - 유사도매시장 구역지정, 구역내 도매업자의 거래방법 개선과 시설개선. 정비계획등을 고시
 - 성실한 도매업자는 신설되는 공영도매시장에 우선입주

〈 과 제 12 〉

출하상담실 등 출하자 편의시설 확충

- 『도별 출하상담실』 설치
 - 가락시장에 각도의 유통전문가가 고정배치되는 출하상담실을 설치하여(도비부담) 생생한 정보와 출하치도가 이루어지도록 운영
 - 상담결과를 평가하여 도별 유통실적평가에 반영
- 『출하자 고충처리센타』 설치
 - 각 도매시장에 개설자가 설치·운영하는 『출하자 고충처리센타』 설치 및 담당공무원 상주배치
 - 품질시비의 판정, 경매부조리, 부당징수금 등 출하자 고충을 현장에서 시정조치

개설자 및 시장관리주체의 시장질서 유지기능 및 대농민 서어비스 강화

○ 도매시장시설의 불법적인 점용 등에 대한 단속, 통제 강화

- 상인들의 도매시장 시설 불법 점유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 불법 적치물 등은 수거, 폐기할 수 있는 규정마련
- 지정도매법인, 경매사, 중매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과징금제도 기준을 구체화하고 벌점제도의 도입
- 중매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중매인과 관리공사가 직접 사용계약

○ 하역비 부담 징수등 하역부조리 근절

- 하역요율은 개설자가 적극개입하여 생산자, 지정도매법인, 중매인, 하역노조 등의 대표가 협의결정
- 하역조건에 따른 요율 세분화로 팔레트 등 새로운 하역방법 활용촉진
- 신규시장의 경우 하역의 기계화가 가능토록 시설설계
- 서울시 주관하에 시장관계자, 학계,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하역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96. 6월까지 하역업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구리시장 개장 시점부터 적용

○ 비포장규격품의 출하주가 손해를 보도록 쓰레기 발생에 대한 부담금 징수

- 부담금은 전액 포장자재비로 지원

○ 도.소매기능 분리와 시장운영의 효율을 극대화

- 1단계로 소비자 차량의 출입시간대를 지정 함으로서 도.소매 분리 (기존시장)하고 2단계로 구리시장 개장 ('96.6)이후 시간대에 따라 일반시민, 소매상 출입을 통제 (출입자 증명서 발급 등)
- 신설시장은 설립시부터 소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설계

3. 소비자 유통경로의 다원화

가. 소비자 유통의 현황과 문제점

○ 소비지에는 도매시장이외의 유통시설 미비로 출하처 선택의 폭이 좁음

- 가락시장 취급량 : 서울시 소비량의 약 45%

○ 소비지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넓은 부지가 필요하나 대도시 땅값이 비싸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위한 부지확보가 지난

- 가락시장 : 16만평, 한국물류센타 : 4만평

- 공영도매시장은 100% 정부투자

○ 유사시장은 무자료거래가 일반화 되어있으나, 정부투자 유통시설은 세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으로 그 활용도를 높이기 어렵음.

- 공영도매시장내의 공판장, 농유공의 유통시설 활용도가 저조

○ 부지확보가 어렵고, 투자수익이 적고, 정부지원도 없어 민간유통업체의 참여가 저조

○ 농수산물유통에 대한 불신으로 『직거래』 요구가 높으나 거래장소의 마련, 교통·청소 등 도시환경, 매잔품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

나. 유통경로의 다원화 대책 : 산지 농어민과 도시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물류비용 절감

〈 과 제 14 〉

물류센타 및 종합물류단지 건설로 유통경로의 다원화,
출하처 선택의 폭을 확대, 물류비용 절감

- 생산자단체로부터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단순가공, 소포장하여 직영점, 가맹점등에 필요한 물건을 배송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 도시교통체증 완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하는 물류센타 건설 확대
 - 2004년까지 대도시 외곽에 16개소 건설
 - 운영주체 :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출자법인 등
 - 농수산물과 공산품도 함께 취급 가능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정으로 물류센타 조성을 촉진
-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개발제한지역』 내에서도 물류센타등 농수산물유통시설 건설을 허용하여 입지선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 면제 (건설부와 협의추진)
- 정부가 부지를 조성, 기간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생산자단체, 민간유통업체 (소비자 협동조합, 소매업자 협동조합 포함) 또는 생산자단체와 합작한 민간유통업체 등을 입주시켜 일정기간 무상임대하는 대규모 종합물류단지 건설 (양산 『화물복합터미널』 건설방식 참고)
 - 단지관리는 정부, 생산자단체, 입주업체가 공동출자한 『공공출자법인』이 담당
 - 입주업체는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고, 운영은 개별 업체별로 자율운영

〈 과제 15 〉

생산자단체의 유통자회사 설립으로 전국권 유통망을 형성하여
소비지 분산기능 강화

○ 농·축·수·임협의 신규 직판장 설치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을 중단

- 농수축협의 직판장은 중복투자, 높은 인건비, 경직적인 회계 및 감사제도 등을 감안, 지원중단
- 홍보, 교육, 기타 특수목적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농협중앙회 소유 물류센터(3)와 직판장(15), 농유공 물류센터(1)와 직판장(3)을
바탕으로 기업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한 유통자회사를 설립

- 농수축임협 등 생산자단체는 산지유통에 주력하고, 소비지 소매유통은 유통자회사가 전담
- 물류센터 설치, 농협의 회원조합 직판장, 수협과 축협의 직판장, 민간 유통업체 체인망 등과 연계하여 전국권 유통망을 형성
- 수도권지역에 본사를 설립하고, 지방대도시에 지사를 설립

○ 농협이 『유통자회사 설립단』을 구성하여 연내에 재산인수, 조직구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95년도 부터 사업착수

○ 농안법에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조감법을 개정하여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소매시설과
같은 수준에서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재무부와 협의추진)

〈 과 제 16 〉

농어민 장터의 정기화 및 자매결연 등으로 직거래사업의 활성화

○ 소비자의 국·공유지중 유희지등에 생산자를 위한 농어민 장터를 개설 운영하되
개장일을 정기화하고 행사성격의 장터는 가급적 지양

- 서울 : 창동(6. 23 개장), 양재동(8.26개장)등에 개설
- 부산등 대도시에도 주말 농어민 장터 개설운영

○ 대도시 동과 단협이 자매결연으로 필요시 수시로 농어민 장터 개설운영

- 서울 : 1,082개소 (541개 구·동 × 2개소)
- 기타 대도시의 동과 단협이 자매결연으로 직거래 추진

○ 소비자단체 및 대량수요처와 생산자단체와의 횡적 연결을 통해 직거래사업 및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 활성화 도모

- 『소비자협동조합법』 제정 추진

○ 생산자단체에 농어민장터 운영에 필요한 매취자금 지원 ('94 : 농안기금 200억원)

〈 과 제 17 〉

택배(가정배달), 우편판매, 직판장 등을 통한 지역특산품 판로확대

○ 농협의 택배제도 확대 실시

-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13개 시지역 → 전국권으로 확대
- 배달 : 한진, 대한통운이 24시간내에 배달
- 품목 : 쌀, 김치 → 지역특산품 추가
- 유통자회사가 전국권 유통망을 설치하여 택배를 전담토록 지원

○ 체성회의 우편 주문판매제도 확대 실시

- 지역 : 전국 (3,000여개소의 우체국)
- 신청 및 배달 : 전화, 하이텔, 천리안 등으로 신청하면 우체국에서 가정배달
- 품목 : ('94) 365개 특산품 → 매년 확대
- TV 문자방송, 기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 대도시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상설직판장 설치운영

- 서울 : 지방자치단체 지원 67개소, 생산자단체 직영 15개소
- 기타 대도시에도 확대 설치운영

○ 국도, 고속도로변의 직판장 운영 활성화

- 입간판 설치, 과일류 날개판매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규제완화
- 신규설치시 적절한 위치에 충분한 면적을 할애
- 직원 인건비 절감 등으로 경영합리화

4. 유통정보 체계의 확립

< 과제 18 >

살아있는 전국권 유통정보망 구축

- 농림수산 유통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국의 공영도매시장, 농림수산부와 산하기관, 농축수협 등과 On-Line으로 연결
- 도매시장 정보를 자동수집. 전파하여 시장상황을 모든사람이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함.
 - 시장별, 법인별, 품목별, 등급별로 가격·유통량등을 조사하여 농어민. 유통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공하여 분산
 - TV문자방송, 하이텔, 천리안, 농수축협의 계통분산등을 통하여 즉시 분산
- 관측정보를 제공하여 농어민이 출하시기를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재배면적을 자율조절토록 유도
 -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무·배추·양파 등)은 통계조사 요원에 의한 재배의향, 재배면적, 작황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하이텔, 천리안등을 통해 분산
 -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모니터화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전산화하여 활용

< 과제 19 >

유통정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전문인력 육성

○ 농촌진흥청, 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정보센터 등을 유통정보 기관으로 육성

- 각 전담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의 저장·분석·가공·분산하고 각종 응용Software를 개발
- 주요 품목별 전문가를 양성하여 수급분석 및 관측, 모니터 담당

○ 농산물가격심의회를 폐지하고 농업관측협의회를 『농업관측위원회』로 개편하여 그 기능을 보장운영

- 농업관측 기능수행과 병행하여 유통정보 업무와 관련된 각 기관의 업무조정, 평가 및 개선방안 등 심의, 정부의 가격안정정책 조언
- 『농수산통계관실』을 『농수산정보통계국』으로 개편
- 농경연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전문적 동향분석 실시

○ 생산자단체의 유통정보 업무를 강화하고 판매사업과 연결

- 단협별로 유통정보 전담요원을 두어 일반유통정보와 전문품목 정보를 담당하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지도소등과 적극적인 협조체제 구축

○ 유통전담요원 및 농어민에게 정보의 수집·분석, 활용에 대한 전산교육 실시

5. 기타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

가. 양곡(쌀) 유통개선

○ 미곡종합처리장을 산지 쌀 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하여 생산·저장·가공·판매의 일관처리

- 영농조직과 연계하여 품종의 단순화 및 산물 수집·보관
- 종합처리장별 고유상품 Brand화

○ 정부미 수매·방출의 시장기능 확대도입으로 고품질의 쌀 생산·유통촉진

- 품종에 따른 미질별 차등가격 수매제 도입
- 농협을 통한 『공매제』 확대
- 쌀값의 계절 진폭을 확대 : 단경기 기준('94)7% → ('95이후)10%이상
- 포장쌀에 산지, 연산, 제조원등 상품정보의 표시의무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와 부정유통 단속강화

○ 양곡도매시장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출하자와 도·소매업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양곡거래소』 또는 『양곡도매상』 형태로의 전환을 검토

나. 축산물 유통개선

○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확대 설치하여 계열화 유통체계를 확립

- 운영주체는 양축농가와 계약생산체계 구축
- 2000년까지 10개소 설치 : ('94~'96)3개소, ('96~2000) 7개소

○ 도축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도축장을 정비

- 시설현대화 지원계획 : ('94) 34개소 → ('96) 44개소
- '94년말까지 시설미비 도축장은 폐쇄 또는 등급 격하

○ 육류도체등급제 정착

- '95년 상반기까지 전국도매시장에서 실시

○ 육질에 따른 부위별 차등가격의 확대 유도

- 우리나라 표준부위별 상품규격 개발보급 : (현행) 10개부위 → (향후) 15-20개부위
- 정육점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 식육처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훈련 실시 및 국가기술 자격제도를 도입

- '96년까지 식육처리 기술훈련원을 건립
- '94하반기 부터 연간 180명씩 식육처리 기술훈련 실시, 이수자에게 '95하반기 부터
기능사 국가기술 자격부여

○ 정육점 경영자등 식육유통 종사자에게 식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부분육·냉장육 판매의 조기정착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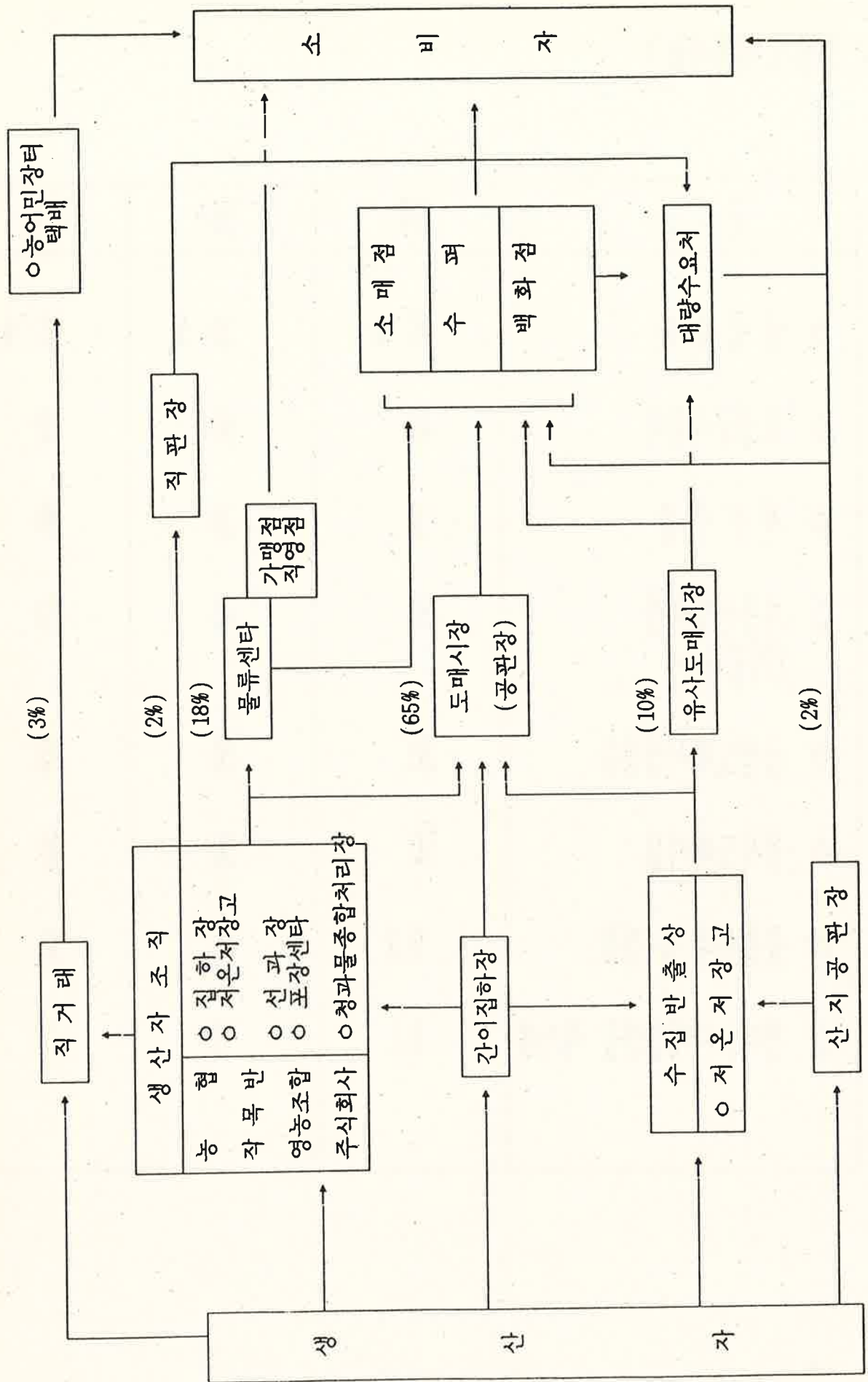
다. 수산물 유통개선

- 산지의 수산물 거래제도를 '97년까지 의무상장제에서 임의상장제로 전환
- 산지 위판장을 어종별로 전문화하고, 처리·가공시설 및 운송장비등을 확충하여 위생적이고 상품화된 수산물을 공급하는 종합공급 기지로 육성
- 원양어획물 전용어항, 수산물유통시설을 건설하여 원활한 유통 및 공정거래기반 조성
 - 부산 감천항에 냉동·냉장시설, 공판장, 가공처리시설, 하역시설 등을 완비
- 소비지 도매시장 상장매매 추진
 - 중매인에 의한 수탁 및 매취상장행위를 금지하고, 도매시장에 입하되는 전 품목에 대해 상장거래 추진
 - 상장경매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도매법인의 매취상장 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중매인 집하도 예외적으로 인정
 - 개설자가 현지실정에 맞는 거래방식을 채택하여 예외거래 허용
 - 기록상장, 중매인 내정거래 등은 금지
- 직판장, 대형연쇄점 등 직거래 유통망을 권역별로 구축하여 유통단계 단축과 유통비용 절감

< 중장기 개혁지표 >

구 분	'93	'98	2004
○ 공동출하	15 %	30 %	65 %
○ 포장규격출하	40	60	80
○ 저온수송	0	10	30
○ 가공산업육성 (가공비율)	30	45	70
○ 공영도매시장경유	30	50	65
○ 유사도매시장	50	30	10
○ 물류센터 등 경유	0.3	5	18
○ 장터, 자매결연등 직거래	0.1	2	7

< 개선된 유통모델 : 2004년 >



< 농수산물 유통·가공분야 투융자계획 >

- 42조사업 : 8조 2,804억원, 농특세사업 : 1조 4,550억원

(단위 : 억원)

사업별	'94	'95 - '98			'99-2004	합계 ('94-2004)
		'95	'96-'98	소계		
합계	5,564	8,903	29,978	38,881	52,909	97,354
< 42조원 사업 ¹⁾ >	4,864	7,195	23,106	30,301	47,639	82,804
○ 과수·채소·화훼 생산 유통지원중 유통지원	230	421	1,763	2,184	2,138	4,552
○ 농수산물유통개선 (도매시장,공판장등)	1,382	2,082	5,523	7,605	1,229	10,216
○ 축산물 유통개선	831	1,192	2,798	3,990	412	5,233
○ 임산물 "	18	30	173	203	471	692
○ 수산물 "	71	92	484	576	2,178	2,825
○ 농산물가공산업	1,081	1,509	4,958	6,467	22,865	30,413
○ 축산물 "	102	128	273	401	405	908
○ 임산물 "	357	442	1,367	1,809	4,860	7,026
○ 수산물 "	310	707	4,299	5,006	10,495	15,811
○ 수출촉진지원 (해외전시판매장, 국제박람회참가등)	482	592	1,468	2,060	2,586	5,128
< 농특세 사업 >	700	1,708	6,872	8,580	5,270	14,550
○ 농수산물물류센타 (16개소)	200	882	5,019	5,901	4,116	10,217
○ 산지농수산물간이 집하장(4,000개소)	500	300	800	1,100	-	1,600
○ 농산물포장센타 (160개소)	-	126	378	504	581	1,085
○ 기타 사업	-	400	675	1,075	573	1,648

주 : 1) 42조원 투융자계획(안)의 금액임
※ 금액은 국고 및 기금의 보조 + 융자 + 지방비임.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안기금 지원계획 >

- 연간 약 1조 3천억원 규모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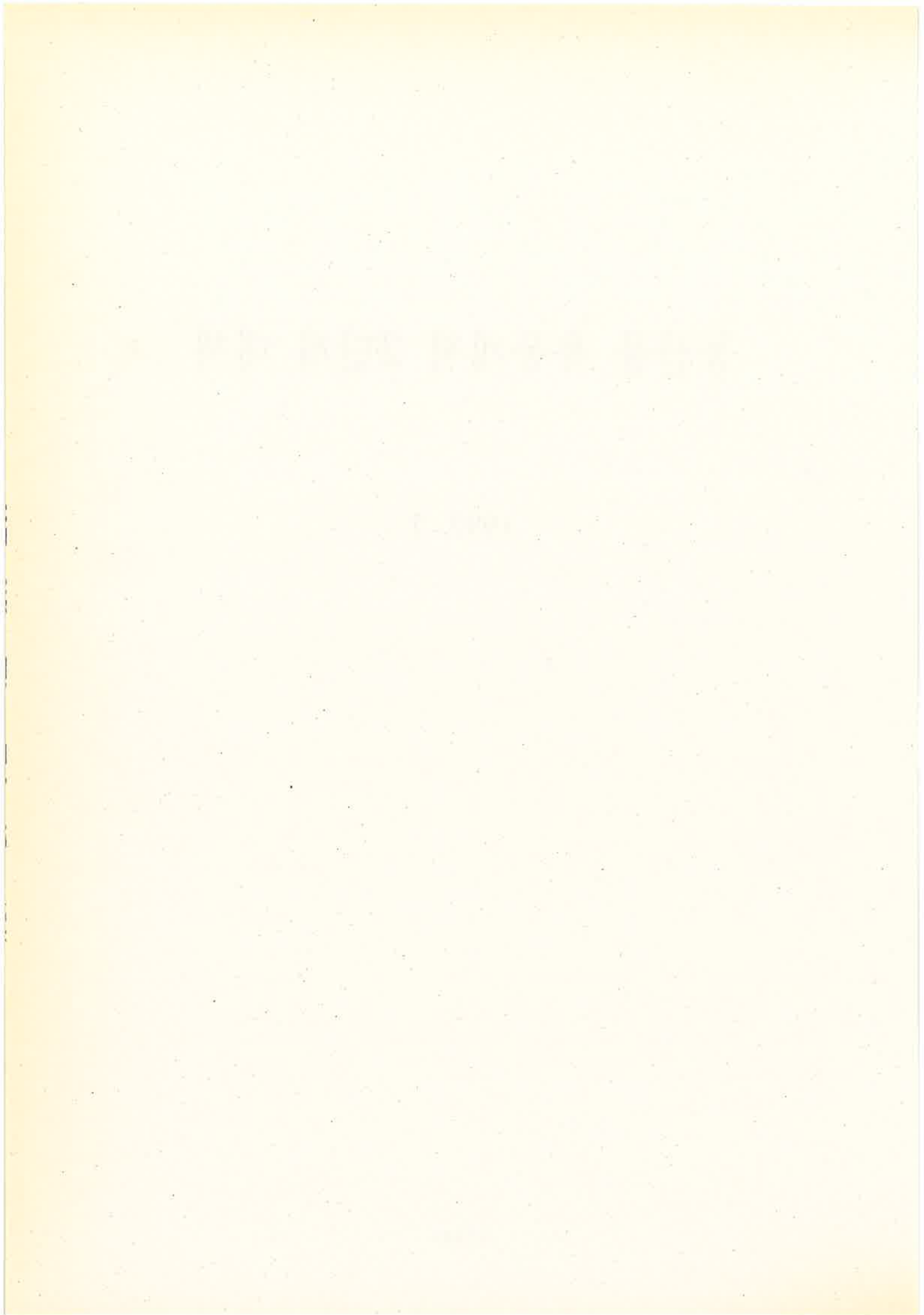
(단위 : 억원)

사 업 별	'94	'95 - '98			'99-2004	합 계 ('94-2004)
		'95	'96-'98	소 계		
< 가격안정사업 >	7,280	7,931	25,390	33,321	56,520	97,661
○ 비축사업등 정부가격안정사업	4,405	4,398	15,300	19,698	34,000	58,103
○ 비축수매지원등 민간가격안정사업	3,415	3,533	10,090	13,623	22,520	39,558
< 유통개선사업 >	3,732	4,501	13,669	18,170	31,457	53,359
○ 유통시설확충및개선	266	786	2,050	2,836	4,720	7,822
○ 산지유통개선사업	2,083	2,203	6,835	9,038	15,730	26,851
○ 소비지유통개선사업	1,313	1,389	4,394	5,783	10,060	17,156
○ 유통조성사업	70	123	390	513	947	1,530
소 계	11,552	12,432	39,059	51,491	87,977	151,020
< 기 타 >	398	418	1,509	1,927	2,023	4,348
○ 사업조성	179	168	480	648	960	1,787
○ 차입금 상환	219	250	1,029	1,279	1,063	2,561
합 계	11,950	12,850	40,568	55,418	90,000	155,368

VII. 1997년

농산물 유통개혁 2단계 대책

1997. 7



목 차

I. 유통개혁 2단계 대책 추진배경	173
II. 1단계 대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174
III. 여건변화와 추진목표	178
IV. 분야별 대책	180
1. 산지 유통체계 확립으로 공동출하·규격화 촉진	180
2.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비용 절감	184
3. 소비지 유통경로간 경쟁촉진과 투명거래 정착	187
4.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으로 안전식생활 보장	191
5. 생산자 조직에 의한 수급안정체제 확립	193
〈2004년 농산물 유통모습〉	196
V. 과제별 추진체계	203

中華民國二十八年

（The following text is extremely faint and illegible due to the quality of the scan. It appears to be a list or a series of entries, possibly related to the year mentioned in the hea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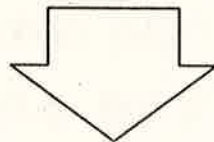
I. 유통개혁 2단계대책 추진배경

1단계 대책

□ 「농산물유통개혁대책」 수립·추진 ('94. 9)

⇒ '94-'96년간 1조 9,600억원 투입

-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 확충
- 공영도매시장 상장경매 확대



2단계 대책

□ 성과를 바탕으로 유통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문제점을 보완

- 유통시장개방, 대형매장 급속확산과 소비구조 고급화
- 산지유통체계 미확립, 유통의 효율성 저조

□ 농산물유통의 선진화를 위한 「유통개혁 2단계 대책」 추진

- 농협 중심으로 산지유통체계 혁신
- 유통시설 운영활성화와 물류의 효율화
- 유통경로의 다원화로 경쟁체제 구축

유통선진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

II. 1단계 대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1. 주요 추진성과

가. 생산자조직 육성을 통한 산지유통체계 개선 여건마련

□ 생산자조직과 유통시설 확충으로 산지유통기반 구축

- 주산지 중심으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 확대
 - 작 목 반 : ('93년) 17,377개소 → ('96) 23,383개
 - 영농조합법인·회사법인 : ('93년) 796개소 → ('96) 4,799개
- 산지에서 선별·포장 및 규격품 출하를 위한 시설 확충
 - 간이집하장 : (계획) 4,000개소, (실적) 3,032개소 (76%)
 - 농산물포장센터 : " 160 " , " 49 " (31%)
 - 미곡종합처리장 : " 400 " , " 220 " (55%)
- 농업인의 식품가공업 참여확대로 전통식품개발 및 소득향상 기여
 - '96년까지 1,231개소지원 (연 매출액 4,533억원)

□ 품목별 특성에 따라 규격화·계열화·브랜드화가 진전

- 쌀은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브랜드화와 직거래가 활발
 - 미곡종합처리장 유통량 : ('93) 3.1% → ('96) 19.7%
 - 군단위이상 브랜드 등록 : ('93) 2건 → ('96) 44건
- 축산물은 생산·도축·브랜드 판매의 일관유통체계 진전
 - 브랜드 현황 : 한우(49개), 돼지고기(46개), 닭고기(18개), 계란(68개)
- 과실류, 시설채소류의 포장화 정착
 - 포장화율 : 사과 85.8%, 배 98.6%, 감귤 99.0%, 오이 98.6%

나. 소비지 유통의 경쟁 및 공정거래여건 조성

□ 소비지 유통시설 투자 확대로 유통경로간 경쟁분위기 확산

- 대량 신속거래를 할 수 있는 공영도매시장·공판장 건설
 - 공영도매시장 : (계획) 34개소, (실적) 14개소 개장 (41%)
 - 농산물공판장 : (계획) 67개소, (실적) 50개소 개장 (75%)
- 농협·축협 등 생산자조직의 직판점을 확대하고 다양화
 - 농협 : 하나로클럽(7개), 직판장(213) 등
 - 축협 : 한우전문판매장(147개), 목우촌(24) 등
- 공영도매시장·공판장 등 제도권 시장 유통비율 확대
 - 제도권 시장 유통 : ('93) 33% → ('95) 43%

□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질서 개선

- 전품목 상장거래 실시로 도매시장 상장거래 비율확대
 - 가락동도매시장 상장거래 비율 : ('93) 79% → ('95) 94%
 - '95년 무·배추 등 “경매가 어렵던” 품목의 상장경매 실시
- 산지수집상 등록제 실시로 거래의 투명화 및 불법위탁거래 격감
- 상장수수료 인하로 농업인 부담 경감
 -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1~1.5%P 인하, 대전 도매시장 0.5%P 인하

다. 우수 농산물의 차별화를 위한 제도정착

- 품질인증제 확대로 농산물 품질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
 - 품질인증 물량 확대 : ('93) 3만톤 → ('96) 12만톤
 - 비인증품 보다 10~15% 고가거래
- 원산지표시제 강화로 국산 농산물의 차별화가 진전
 - 대상품목 확대 : ('93) 189개 → ('96) 358개
 - 원산지표시 이행율 : ('93) 49.7% → ('96) 89.7%
- 육류도체등급제 실시로 고급육 생산유도
 - '95년 서울·광역시, '96년에는 전 도축장(82개소)으로 확대
 - 한우의 1등급 출하율 확대 : ('95) 12.8% → ('96) 18.3%

라. 유통정보 체제구축과 민간유통 활성화 여건 마련

- 유통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수집·분산체제의 정비
 - 농림수산정보센터를 주축으로 농업관련 통합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 농업관측정보의 수시 제공과 함께 월보체제확립 ('96.9)
- 쌀값의 계절진폭제 실시로 민간유통 활성화
 - 쌀값계절진폭 : ('93) 3.2% → ('96) 14.6%
 - 양곡년도말 민간재고비율 : ('93) 12.1% → ('96) 14.5%

산지가격은 상승 한데 비해 소비자가격 상승율은 둔화

- 농가판매가격 : ('91-'93) 연 48% → ('94-'96) 연 7.4%
- 소비자가격 : ('91-'93) 연 7.1% → ('94-'96) 연 3.2%

농산물 가격진폭 완화 : ('91-'93) 연 7.6% → ('94-'96) 연 6.0%

2. 추진상 문제점

- 생산자조직과 산지시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동출하, 공동계산과 대량 규격상품 출하체제 미흡
 - 농가별로 출하함에 따라 하역·경매시 따로 취급해야 하므로 유통비용이 많이 들고 속박이 등 불공정행위가 상존
 - * 속박이 비율 : 사과·배 10~15%, 오이·호박 20~25%, 딸기·참외 30~40%
 - 포장센터, 간이집하장, 산지가공공장 등 산지유통시설은 생산자의 조직화가 미흡하고 경영능력 부족으로 시설 활용도가 낮음
 - * 간이집하장 연간 이용일수 69일, 산지가공공장 부실화 업소 142개소(14%)

- 공영도매시장 건설지연과 유통경로간 경쟁체제 미비
 - 당초 '98년까지 34개 개장 예정인 공영도매시장 건설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연
 -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할 수 있는 물류센터 중심의 직거래체제가 미구축

-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에 대한 운영개선 필요성 제기
 - 일부 도매시장의 형식적 기록상장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있어 경매에 대한 불신 상존
 - 이미 도매시장 상장을 거친 물량이 중소도시도매시장에 재반입되어 경매되는 문제 발생

- 실질적인 생산조정과 출하조절을 위한 정보제공 체계 미흡
 - 농업관측의 실효성이 낮고 출하조절을 담당할 품목별 생산자 조직 활동이 부진

Ⅲ. 여건변화와 추진목표

1. 국내의 유통여건 변화전망

□ 농산물과 유통업 개방, 대형유통매장의 확산에 따라 산지 유통체계 재정립 절실

- 국산농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해 농산물도 공산품과 같이 산지에서부터 대량규격품 공급체계 구축필요
- 국내에서 다량의 규격출하 농산물을 조달받지 못할 경우 과채류도 직수입으로 충당예상

□ 물류비용절감이 농산물 가격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대두

- 우리의 물류시스템은 물류선진국과 격차가 크고, 특히 농산물 물류비는 상대적으로 높아 개선여지가 큼

* 농산물 수출액 대비 물류비 19.4%

-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 하역기계화, 물류표준화 시급

□ 유통경로 다원화에 따라 도매시장의 기능보완 필요

-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의 확충과 대형업체와의 직거래 확산으로 유통경로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임.

- 기존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대책이 필요

□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수요증대

2. 유통개혁대책의 추진목표

유통 선진화로 농업경쟁력 제고

- 생산자 : 상품고급화와 공동출하로 부가가치 확대
- 소비자 : 다원화된 구매경로에서 저가격·고품질품 선택
- 유통인 : 물류비 절감과 투명거래로 유통효율성 제고

2004년 주요지표

- 산지유통체계 확립 ⇒ 공동출하 80%, 채소 포장출하 90%
-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 ⇒ 물류비 40% 수준 절감
- 파렛트 적재출하율 50%, 하역기계화율 90% 수준으로 제고
- 유통경로다원화 ⇒ 도매시장50%, 물류센터25%, 직거래등25%
-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단계를 3~4단계로 단축
- 고품질 농산물 생산·공급 ⇒ 안전식생활 보장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 수급안정체제 확립

IV. 분야별 대책

1. 산지 유통체계 확립으로 공동출하·규격화 촉진

- 농협이 산지유통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체제구축
 - 단순공동출하에서 공동규격출하·공동계산체제로 발전
 - 공동출하비율(현재40%)를 2004년까지 선진국수준(80%)으로 제고
-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생산자조직 중심의 규격농산물 대량공급체계 구축

① 산지유통 시범농협을 선정, 선진 산지유통모델 확산

- 주산지 지역농협, 전문농협을 산지유통 시범농협으로 선정
 - 대상품목 : 산지유통개선이 시급한 고랭지 배추, 양파, 마늘, 파, 고추 등 10개 품목
 - 대상농협 : ('97) 30개 (품목별 2~3개) → ('98) 100개
- 시범농협에 대해서는 시설 및 운영자금 집중지원
 - 집하장·포장센터 등 유통시설과, 파렛트·지게차 등 하역기계화 장비, 계약재배·매취자금, 포장재 등 운영자금
 - 농협중앙회의 순회수집·냉장차량, 정보기기, 저리자금 등
- 21세기 선진화된 산지유통모델 정착
 - 계약에 의한 생산, 규격별·등급별 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 산지에서 규격품을 대량 확보, 출하조절로 가격교섭력 제고
 - 도매시장 뿐만아니라 물류센터·대형업체와 직거래
 - 품질관리사 도입('97년중 150명) 등으로 자율적인 속박이 근절 추진

② 농협의 채소류에 대한 공동출하기능 강화

- 채소류의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촉진 기금 조성 확대
 - 기금규모(정부 80%,농협 20%) : ('95~'96) 1,100억원 → (~'98) 3,000억원
 - 계약재배품목 : ('96) 무, 배추, 양파, 마늘, 파 → ('97) 고추 추가
- 중간상인의 포전매취와 가격 등락이 심한 무·배추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확대, 사전적인 수급조절 기능강화
 - 현재 무·배추 재배량의 1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확대
- 농협의 순회수집 및 공동출하 완전 정착
 - 순회수집 우수조합에 대한 냉장차('97년 80대), 유통저리자금 지원

③ 산지 우수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원강화

- 작목반·영농조합법인의 규격출하정도와 조직규모를 평가, 우수조직 위주로 자금을 집중지원
 - 지원대상 자금: 공동규격출하, 포장재보조, 생산유통 지원사업 등 ('97년 6,400억원)
 - 규격출하 최우수조직 : ('96) 659개 → ('97) 1,000개 → (2004) 전조직
 - 공동계산 작목반 육성 : ('96) 12개 → ('97) 300개 → (2004) 전작목반
- 소규모 작목반은 주산지 중심으로 규모화·정예화
 - 시설원에 첨단 농법 작목반 육성 : '97년 50개
- 농협과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의 협조체제 강화
 -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을 중심으로 군단위 품목별 협의회 결성
 - 군단위 품목별 영농지도팀 운영 : ('96) 20개 → ('97) 40개 → (2004) 전 시군
 - 군단위 광역 브랜드 개발 (예 : 강진군, 영암군)
- 생산자조직과 지역농협을 초고속 정보망으로 연결, 생산·출하·가격등 농업경영에 관한 종합정보 교류
 - '97년에는 3개 품목, 9개 시군 42개 단협에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4] 농산물 포장센터, 미곡종합처리장, 축산물종합처리장을 대량규격품출하 거점으로 육성

- 농산물 유통의 주요 거점지역에 규격·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을 집중 건설
 - 농산물 포장센터 : ('96까지) 49개소 →(2004) 160개소
 - 미곡종합처리장 : ('96까지) 220개소→(2004) 400개소
 - 축산물가공처리장 : ('96까지) × →(2000) 10개소

- 과실류·채소류는 농산물 포장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을 거점으로
대량 포장규격출하 촉진
 - 파렛트, 지게차, 예냉시설, 정보기기 등을 지원하여 기능강화
 - 포장재, 원료구입자금 등 운영활성화 자금지원 추진
 - 포장센터 건설보조를 조정 : ('97) 60% → ('98) 50% 수준

- 쌀은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추진
 - 미곡종합처리장 쌀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안정적 판매망 확보
 -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은 관내 농협과 연계, 계열화 추진
 - 원료비 구입자금('97년 2,180억원) 등 운영활성화자금 지원 확대

- 축산물은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냉장유통체계 구축
 - 계약생산, 위생적인 도축·가공, 냉장육으로 자기상표를 붙여 자체
판매조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업체나 생산자조직을 선정
 - 축산물 종합처리장, 축협, 한냉의 브랜드 가맹점 지원 확대 ('97년
125개소 94억원)

5] 간이집하장과 산지가공공장의 운영활성화

- 활용도가 낮은 간이집하장은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시설을 보강하여 소규모 포장센타로 발전
 - 당초 4,000개소 건설 목표 축소 조정 (3,232개소)
 - 기존 간이집하장은 매년 200개소씩 포장기, 예냉시설 등 지원
 - 생산자조직이 자체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집하장도 포함
- 산지가공공장은 기존시설 확충과 경영개선에 주력
 - 성장이 유망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 증설, 시설현대화 등 추가 지원
 - 대기업과 경쟁이 어려운 업체는 주문자 생산방식(OEM), 반제품가공 납품 등으로 판로 확보
- 산지가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방식 개선
 - '99년 이후 산지가공공장건설 보조금 지원 중단
 - '98년에는 국고보조율 축소 : ('97) 40% → ('98) 30%
 - 산지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97년 770억원) 지원방식 개선
 - (현재) 시설지원받은 업체 →(개선) 농업인이 운영하는 산지가공업체

6] 유통전문 농업회사법인과 민간 유통회사에게도 산지유통 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자조직의 기능을 보완

- 생산과 출하유통을 겸업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과 민간유통업체에게도 포장센타 등 설치지원
 - 수집상 등 민간유통업체에 의한 규격농산물 출하 촉진
- 장기적으로 생산자조직과 민간유통업체와의 지원조건 차별을 축소하여 경쟁여건을 조성

2.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비용 절감

- 포장규격, 수송·하역장비, 물류시설, 상품코드 등을 물류 표준화체제에 맞게 정비
-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일관수송·하역기계화체제를 구축하여 농산물 물류비 40% 수준 절감
 - 파렛트 적재출하 비율은 50%, 하역기계화율은 90% 수준으로 제고

7] 포장시설·장비를 단위화물적재시스템 (ULS : Unit Load System)에 맞게 정비

- 농산물포장규격을 표준파렛트(1100×1100mm)에 맞게 재정비
 - 무·배추·사과 등 이미 표준규격이 정비된 20개품목은 보급 확대
 - 산지작목반 등에 135백만매 보조 ('97년 131억원)
 - 미정비된 74개 농산물의 포장규격은 ULS체제에 맞게 금년내 정비완료
 -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1단포장) 표준 포장규격 및 디자인 개발
- 단위적재시스템(ULS)규격에 맞는 차량개조 및 보급
 - 농협보유차량(4,500대)부터 표준파렛트 규격에 맞춰 차량개조
 - 차량개조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 농협에서 구입하는 순회수집 차량은 ULS규격에 맞는 광폭탑차를 확보토록 조치
- ULS 체제에 맞는 저온저장고 등 산지유통시설 표준화 모델 개발 및 기존시설 개보수 추진

8 산지에서부터 무·배추 등 농산물의 포장출하 촉진

- 가락동, 구리, 안양시장을 대상으로 배추, 수박에 대해 포장출하 시범사업을 추진
 - 배추포장재 23.5백만매, 수박포장재 800만매 보조 ('97 : 68.5억원)
 - 연차적으로 전국 도매시장과 무, 파 등 타품목으로 확대
- 포장출하품과 비포장출하품의 차별화 촉진
 - 포장품에 대한 상장수수료·하역료 인하, 청소비 면제 등 우대
 - 쓰레기유발부담금 인상 및 쓰레기종량제 도입 ('97.4) 등
- 무·배추 등 채소류의 가공처리 유도
 - 현 15%인 공장김치 유통비율을 2004년 50% 수준으로 제고
 - 채소류 주산지에 세척·포장, 가공 등 처리시설 지원

9 파렛트 적재출하와 기계화 하역의 일관체제 구축

-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의 파렛트적재 일관 수송·하역 추진
 - 산지 포장센터, 생산자단체, 도매시장·공판장에 파렛트(10만매)와 지게차(175대) 등 구입자금 지원 ('97 : 70억원)
 - 하역기계화를 도매시장 평가시 우선과제로 부여, 평가
- 가락·구리·안양시장을 하역기계화 시범 도매시장으로 지정, '97년에 집중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가락시장 하역인원 감축을 위한 자금지원
- 효율적인 파렛트의 회수관리를 위해 파렛트 풀 시스템 구축
 - 농협을 중심으로 구축하거나 한국파렛트풀(주)와 연계방안 마련

10 농산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정보망 구축

- 농산물 물류센타를 중심으로 산지의 포장센타·미곡종합처리장 등과 소비지의 대형유통업체와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 구축
-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표준화
 - 유통업체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상품코드 표준화
 - 거래전표, 장표, 데이터항목 표준화
- 도매시장정보망과 농산물 물류정보망을 연결하여 경락가격과 반입물량등 시황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체계 구축

11 물류표준화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및 제도정비

- 파렛트 보급, 기존시설 개보수, 하역기계화 장비 지원 확대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농산물 물류표준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 포장규격, 시설·장비 및 정보의 표준화 작업을 금년중 완료
 - 농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생산자단체, 시장 및 물류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농산물물류표준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
 - 농산물물류표준화 실무작업반을 설치하여 실무작업 추진
- 농산물 물동량, 물류비 및 유통마진의 체계적인 조사체제 구축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물류조사 기능 강화

3. 소비지 유통경로간 경쟁촉진과 투명거래 정착

- 소비지 유통시설의 다원화로 유통경로간 경쟁체제 구축
 - 2004년 시장점유율 : 도매시장 50%, 물류센터 25%, 직거래 등 25%
-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선진화된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유통단계를 5~6단계에서 3~4단계로 단축

가. 도매시장, 물류센터, 직거래 등 다양화된 유통경로 확보

12 농산물의 공정거래를 위한 공영도매시장 개장

-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 34개 공영도매시장 개장
 - ('97년까지) 18개소 → (2001년) 34개소 개장
- 특히,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물량의 수집과 분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도권 거점지역에 도매시장 건설 촉진
 - 구리·안양·안산도매시장 1997년, 서울 서남권 도매시장 2000년 개장
- 건설지연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쳐 개장시기 조정

13 주문거래·통명거래가 가능한 물류센터 건설

-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지 유통시설인 물류센터 16개소 건설
 - ('98년까지) 4개소 → (2001년) 10개소 → (2004년) 16개소 개장
- 물류센터를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 대형 물류센터 운영방식 다양화
 - 현 1개 사업자 운영방식 (컨소시엄포함)에서 다수회사의 영업도 허용

14 물류센타를 통한 새로운 거래체계 개발

-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와 판매망을 구축하고 산지생산자 조직과 구매선 확보
 - 물류센타 전속 출하조합 육성 ('97년 50개)
- 생산자조직·판매처와 물류센타, 물류센타 상호간 예약출하·주문구매를 할수 있는 유통정보 시스템 개발
- '98년부터 개장되는 물류센타에 정책자금 지원 추진
 - 물류센타에 출하촉진자금, 매취자금 등 지원
 - 물류센타 출하자에게 규격출하자금, 포장재 등 지원

15 산지 생산자조직과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촉진

- 산지 농산물포장센타,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추진
 - 농산물 포장센타 유통비율 : ('96) 5% → (2004) 20%
 - 미곡종합처리장 유통비율 : ('96) 19% → (2004) 40%
 - 축산물종합처리장 유통비율 : ('96) × → (2004) 30%
- 농협, 축협 등 생산자조직의 유통시설을 소비자 선호 추세에 맞게 대형화, 전문화
 - 농협하나로 플라자(클럽) : ('97) 20개 (7) → (2002) 150개 (16)
 - 한우전문판매점(축협) : ('96) 450개(147) → ('99) 770개
- 산지와와의 직거래 촉진을 위한 민간대형유통업체 지원검토
 - 산지 작목반 등으로 부터 규격상품 구입시 지원
 - 가격안정 효과가 적은 저장·가공업체의 수매자금 축소

나. 도매시장 공정거래 질서 정착추진

16 형식적 기록상장의 단속과 상장거래가 어려운 품목은 예외 제도 활용

- 형식적인 기록상장 등 편법거래시 도매법인 재지정이나 중도매인 허가취소
- 현 중도매인이 경매를 상습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중도매인을 신규 허가하여 실질적인 경쟁유도
- 지방도매시장에서도 상장경매가 부적합한 품목은 상장예외 제도 적극활용
 - 현재는 가락도매시장만 상장예외제도 운용 : 건고추,우엉,갓,취나물,고사리,도라지,고추잎,도토리,유채 등 61개

17 다른 도매시장의 상장을 거쳐 재반입된 물량의 경매제도 보완

- 다른 도매시장의 상장을 거쳐 재반입이 필요한 경우, 도매법인간의 거래를 활용
 - 도매법인이 산지·타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공판장으로부터 물량을 매입하여 수의매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도매법인(현60개)간 유통정보망을 구축하여 공영도매시장간 물량이동 필요에 신속하게 대처
- 상장경매가 곤란한 품목은 중도매인의 상장예외 거래허용
- 재반입된 물량에 대한 경매의 지속여부는 도매시장의 경매제도 확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 장기과제로 검토

18 전산경매 실시와 경매결과 즉시공개로 경매의 공정성 제고

- 전산경매 시범도매법인 선정·운영하고 그 성과를 보아 확대
 - '97년중 선별·규격포장화가 되어있고, 거래단위가 큰 감귤, 사과, 배 등 시범실시 (가락시장)
- 전광판 설치로 경매결과를 즉시 공개하여 경매의 투명성 제고
 - '97년중 각 도매시장 법인별로 5개품목이상 실시 (가락시장)

19 도매시장의 운영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

- 도매시장별 자체발전 계획 수립 추진
 - 도소매기능 분리, 주차시설 확충, 하역기계화, 저온저장시설 등 시설 보완
- 도매시장내 적정 도매법인수를 유지, 규모화
 - 기존 도매시장은 평가결과 경영이 부실한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시 제외
 - 신규로 개설되는 도매시장은 규모에 따라 청과도매법인 2~4개 지정
- 영세 중도매인(현 6,500명)을 통합하여 법인화 유도
- 도매법인·수집상 출하촉진자금 지원확대 ('97년 800억원)

20 도매시장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 도매시장 평가내용을 2단계 유통개혁대책에 연계, 보완
 - 하역기계화, 중도매인 감축 등 도매시장 고비용구조 타파노력
 - 규격출하품 출하실적, 규격포장출하품 우대노력 등
- 우수도매법인에 대한 출하자금 지원시 우대방안을 강화하고,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도매법인 재지정 제외 등 제재

4.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안전식생활 보장

- 안전성 조사강화, 품질인증제의 확대, 원산지표시제 및 식육구분판매제 강화로 국산 농산물의 차별화 정착
-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정등 농산물 품질관리체제 정비

21 생산·유통 단계에서 안전 및 품질저해요소 발굴, 차단

- 품목별 안전성 점검 단계를 설정, 잔류농약·항생물질·중금속 등 조사 강화
 - 조사대상 : ('97) 51품목 3,000점 → (2004년) 전품목
 - 미곡종합처리장·도축장·공판장·도매시장등 주요 유통경로에서 수거·조사
- 잔류농약 간이조사제 도입으로 생산자조직의 자율적 검사 추진
 - 개장되는 물류센타에 간이 안전성조사팀 운영
 -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실시
- 유통과정에서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장유통체제 구축
 - 산지유통시설에 예냉장비 (강제통풍, 진공, 수냉식 등) 지원
 - 기존 도매시장에 규모별로 저온시설·저온냉장시설 설치확대
 - 예냉에 맞는 포장자재 기술개발, 냉장차량 보급 추진
- 축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HACCP System)도입 (2000년)
 -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축, 가공, 유통, 판매 단계별로 위해요소 발굴 제거
 - '97년말까지 일반도축장 수준의 시설개선을 못한 간이도축장 폐쇄
 - 전국도축장수 : 118개소 (간이도축장 35개소)

22 품질인증품에 대한 관리강화

- 농가대상 품질인증에서 생산자조직 대상 인증으로 전환
 - 품질인증관리 우수 생산자조직을 발굴, 자율인증 확대
 - 속박이 등 불공정거래 발견시 인증취소, 포장재보조 중단 등 제재
- 품질인증기준 객관화 및 인증절차 간소화
- 장기적으로 민간단체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선정, 품질인증 위탁

23 국산농산물 차별화제도 정착

- 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확대 및 단속의 효율성 제고
 - 원산지표시 단속 대상품목 : ('96) 358 → ('97) 404개 품목
 - 명예감시원 (1,161명) 적극 활용으로 소비자 감시체제 구축
 - 표시방법 개선 : 시·군까지 표시 → 국산으로 표시 (시·군표시는 자율)
- 지리적표시제 도입('98.7.1)으로 지역농산물 차별화 노력 유도
 - 지역특산품(예 : 고려인삼)의 생산자와 관련 산업을 국내외적으로 보호
- 식육구분 판매제도 정착추진
 - 품종별, 부위별, 등급별 구분 판매제도 의무화 ('97.1)
 - '97년까지 식육처리기술훈련기관을 건립, 식육위생처리교육

24 농산물 품질관리체제 정비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중 품질관리 부분과 『농산물검사법』을 통합,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 추진('98년)
- 농산물검사소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조직개편
 - 농축산물 안전성, 원산지표시, 품질인증, 지리적 표시관련 업무담당
- 농산물 품질의 등급을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농산물품질 등급판정사』 제도 도입 검토

5. 생산자조직에 의한 수급안정체제 확립

- 생산·출하조정을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는 생산자조직 육성과 농업관측 강화로 사전적인 가격안정제도 정착
- 과잉생산시 산지폐기, 정부·민간수매, 출하조절 등을 통해 사후적인 가격안정대책도 내실화

25 품목별 전국 생산자조직의 육성

- 전국적인 농업관측과 생산조정, 출하조절을 할 수 있는 품목별 전국 생산자조직 (예 : 참다래, 우리밀, 양계, 양돈) 육성
 - 농협의 17개 품목별 전국협의회 기능 강화 및 협의회 확대
 - 무·배추, 고추, 시설원예 등 전국협의회 결성추진
 - 생산자조직과 관련된 수급안정 자금은 품목별로 통합(3,000억원 수준) 지원
- 전국 및 지역의 우수생산자조직에게 가격안정사업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자조금 조성지원 추진
 - 자조금 보조기준 (50/100범위내) 상향조정 및 대상품목 확대
- 장기적으로 전국 생산자조직에게 정부수매사업 위탁 검토

26 품목별 농업관측체제 강화로 농업관측의 내실화

- 품목별로 재배의향, 씨앗판매동향, 재배면적, 시기별 작황, 생산량, 저장량 등을 단계별로 조사, 농업인에게 적시제공
 -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분석기능 강화(품목별 전문가 양성)
 -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의 해당품목 농업관측 기능 수행
- 재배의향 조사에 지역별, 주산지별 조사 추가, 정확도 제고
 - 주요품목에 대한 『품위별』 생산량도 조사, 시장예측력 제고

27 송아지의 안정생산과 쌀에 대한 약정수매제 실시

-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99년)로 쇠고기의 30%이상 국내 자급기반 마련
 - 송아지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지원
 - 송아지 생산안정 재원 4,000억원(축발기금 3,600억원) 확보
- 쌀 약정가격과 수매물량 사전제시로 계획영농과 안정소득 보장

28 과일생산시 사후적인 가격안정대책 내실화

- 품목별 특성에 따라 출하조정(산지폐기), 정부수매, 저장가공업체 지원 등을 통해 수급 안정
 - 채소류는 수확이전 폐기와 수확후 수매 병행 추진
 - 과일류는 저장가공업체 수매자금 지원
 - 축산물은 적정가격보다 하락시 정부 직접수매나 민간수매지원
- 출하조정(산지폐기) 가격은 최저가격에서 폐기시기부터 수확기까지의 미투입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
 - 산지폐기자금 ('97년 100억원)
- 전국 공영도매시장간 정보망을 구축하여 생산자의 출하량 조절
 - 금년중 전국 13개 공영도매시장간 정보망 구축
 - 현재 건설중인 도매시장은 개장 즉시 연결

29 출하예약제를 도입하여 단기시장가격 진폭 완화

- 가격진폭이 특히 크고 단일 출하주 물량이 많은 품목부터 실시
 - '97년 : 배추, 상추, 시금치등
 - 출하 2-3일전에 도매시장법인에 출하량을 전화, PC등으로 예약
- 출하예약 없이 출하하는 경우는 판매 후순위 조정 또는 출하장려금 미지급 등 불이익 조치

30 수급안정효과 극대화를 위한 농안기금의 운용제도개선

-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의 자율적인 가격안정사업 추진지원
- 사업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
 - 생산자조직간, 도매법인간, 포장센터간 평가, 차등지원
- 유사사업 통폐합 등 사업자가 편리하도록 지원체계 정비

2004년 농산물유통모습

<유통주체별 대책 >

기 대	대 책 내 용
【생 산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취가격 제고 ○ 다양한 판로 ○ 안정가격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의 선별·포장·가공지원 ○ 물류표준화·하역기계화 ○ 대형매장과 직거래체제 구축 ○ 도매시장·물류센타·공판장확충 ○ 상장경매정착, 전산경매제 실시 ○ 농업관측강화, 품목별 조직 육성 ○ 출하조정, 산지폐기
【소 비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렴한 가격 ○ 고품질 농산물 ○ 편리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표준화·하역기계화 ○ 산지와 직거래 체제구축 ○ 안전성조사, 원산지표시제, ○ 브랜드유통체제 구축 ○ 대형유통업체 확산 ○ EDI 거래체제 구축
【유통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이윤 ○ 물류비용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품 유통 취급물량확대 ○ 도매법인·중도매인 규모화 ○ 하역기계화·물류표준화 ○ 규격품 출하체제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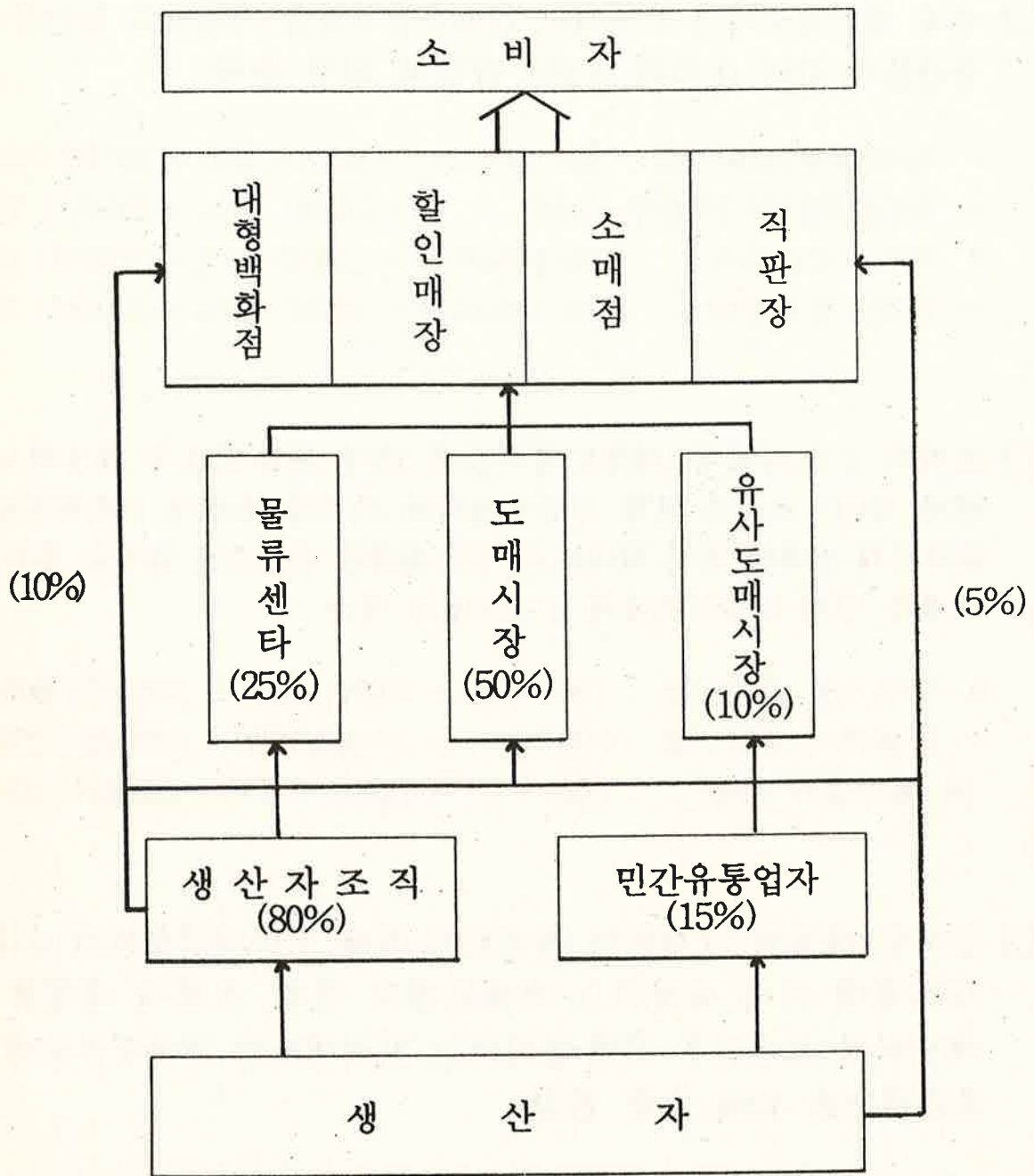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비 절감>

- 산지 생산자조직이 운영하는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농산물이 공산품과 같이 규격화·브랜드화하여 대량 출하
 - 미곡종합처리장출하비율 : ('96) 19% → (2001) 30% → (2004년) 40%
 - 축산물종합처리장유통량 : ('96) - → (2001) 30% → (2004년) 30%
 - 채소포장출하비율 : ('96) 10%미만 → (2001) 70% → (2004년) 90%
 - 균질품질포장비율 : ('96) 10%미만 → (2001) 50% → (2004년) 70%

- 소비지 주요거점에 34개도매시장과 16개 물류센터가 개장되고, 산지 생산자조직과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출하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 단계가 현행 5~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
 - 도매시장 출하비율 : ('96) 43% → (2001) 50% → (2004년) 50%
 - 물류센터 출하비율 : ('96) - → (2001) 15% → (2004년) 25%
 - ※ 예약출하 비율 : ('96) - → (2001) 30% → (2004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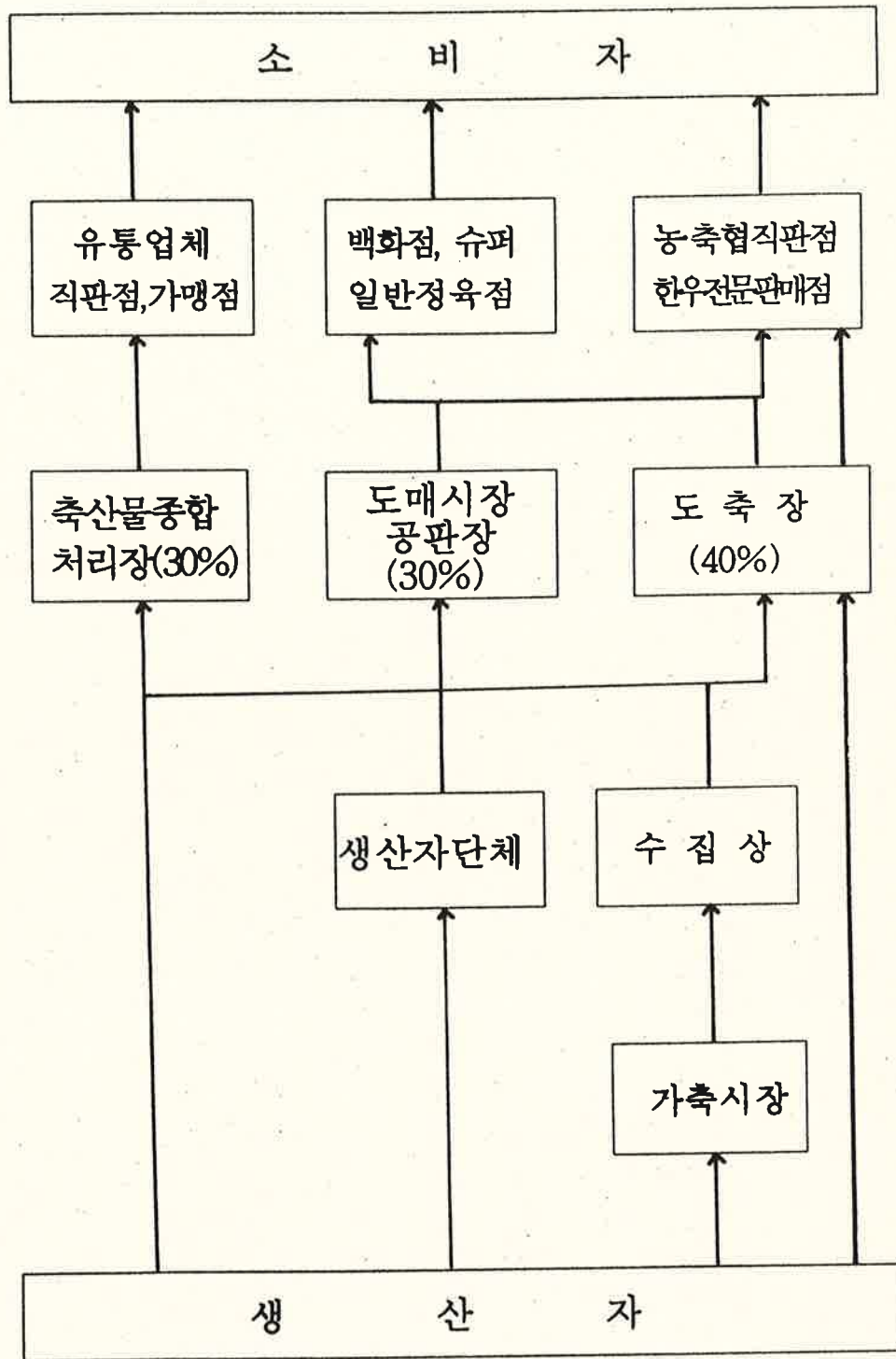
- 출하된 대량의 규격품이 파렛트에 의해 소비지시장까지 수송, 지게차에 의해 하역되고 파렛트별로 경매, 소비지 대형유통매장까지 운반된후 진열·판매되는 일관체제가 구축됨으로써 물류비용을 40% 수준 절감
 - 파렛트적재 출하 : ('96) - → (2001) 30% → (2004년) 50%
 - 하역기계화 이용 : ('96) - → (2001) 50% → (2004년) 90%

< 2004년의 농산물 유통모델 >



※ 물류센터 중심으로 유통단계를 현행 5~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

< 2004년 축산물유통 모델 >



V. 과제별 추진체계

V. 과제별 추진체계

(총 90개사업 : ★신규 43개, ○계속16개, * 기존대책보완 13개, ▲ 1단계 보완 18개)

과 제	관 련 부 서		
	중 앙	지 방	단 체
1. 산지유통 시범농협을 선정, 선진유통모델 확산			
1-1 주산지 산지유통시범농협 선정(★)	유통정책과	-	농 협
1-2 시설 및 운영자금 집중지원(★)	유통정책과 (채소,과수,농협)	-	농 협
1-3 자율적인 숙박이 근절(★)		-	농 협
2. 농협의 채소류에 대한 공동출하기능 강화			
2-1 채소류 계약재배 기금조성 확대(▲)	채소과	-	농 협
2-2 무·배추 중심의 계약재배(▲)	채소과	-	농 협
2-3 농협의 순회수집 완전정착(★)	-	-	농 협
3. 우수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지원강화			
3-1 우수조직 위주로 정책자금 집중지원(○)	유통정책과 (채소,과수,농협)	시·도,시·군	-
3-2 농협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협조 체제 강화(★)		-	농 협
3-3 작목반과 지역농협의 초고속정보망 연결(*)	통계정보	-	농 협
4. 대량규격품 출하 거점육성			
4-1 농산물포장센터중심의 대량포장규격출하 촉진(▲)	시장과	시·도,시·군	농 협
4-2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직거래(○)	식량관리과	시·도,시·군	농 협
4-3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의 냉장유통 체제 구축(○)	축산물유통과	-	축 협
5. 산지유통시설 운영활성화			
5-1 간이집하장의 포장센터화(▲)	시장과(농협)	시·도,시·군	-
5-2 산지가공공장의 시설확충 및 경영개선(▲)	가공산업과	시·도,시·군	-
5-3 산지가공업체 지원자금 지원방식 개선(*)	가공산업과	시·도,시·군	-

과 제	관 련 부 서		
	중 앙	지 방	단 체
6. 민간유통회사에도 산지유통시설자금지원			
6-1 민간유통업체에게도 포장센터등 지원(★)	시장과	-	-
6-2 생산자조직과 민간유통업체와의 지원조건 차별축소(★)	시장과	-	-
7. 포장·시설·장비를 ULS에 맞게 정비			
7-1 포장규격을 표준파렛트에 맞게 정비(★)	유통정책 (농검)	-	-
7-2 ULS규격에 맞는 차량개조 및 보급(★)	유통정책	-	-
7-3 산지유통시설 표준화 모델개발 및 기존시설 개보수(★)	시장과	-	-
8. 산지에서부터 무·배추 등 농산물의 포장 출하			
8-1 배추·수박 포장출하 확대(▲)	유통정책	시·도	농 협
8-2 포장출하품과 비포장 출하품의 차별화(▲)	유통정책 (시장과)	시·도 (도매시장)	
8-3 무·배추 등 채소류의 가공처리 유도(★)	가공산업과	-	-
9. 파렛트 적재출하와 기계화 일관체제 구축			
9-1 파렛트, 지게차 등 구입자금 지원(*)	유통정책과	시·도	농 협
9-2 가락시장 하역인원 감축(★)	시장과 (유통관리)	서울시	-
9-3 파렛트 풀 시스템 구축(★)	유통정책과 (농협,시장과)	-	농 협

과 제	관 련 부 서		
	중 앙	지 방	단 체
10.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물류정보망 구축			
10-1 농산물물류센타 중심의 EDI거래체제 구축(★)	통계정보	시·도,시·군 (물류센타)	농 협
10-2 EDI를 위한 정보표준화(★)	통계정보	-	-
10-3 도매시장 정보망과 농산물 물류정보망 연결(★)	통계정보 (시장과)	시·도, 시 (도매시장)	-
11. 물류표준화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11-1 물류표준화 장기투자계획마련(★)	유통정책	-	-
11-2 농산물 물류표준화 추진협의회 및 실무작업반 운영(★)	"	-	유통공사
11-3 농산물 물동량, 물류비 및 유통마진 조사(★)	유통정책	-	유통공사
12. 농산물의 공정거래를 위한 공영도매시장 개장			
12-1 주요 거점도시에 34개 공영도매시장 개장(○)	시장과	시·도, 시 (도매시장)	-
12-2 수도권 거점지역에 도매시장 건설 추진(▲)	시장과	서울,경기	-
12-3 건설지연 도매시장에 대한 대책(▲)	시장과	시·도, 시	-
13. 주문·통명거래가 가능한 물류센타 건설			
13-1 물류센타 16개소 건설(○)	유통정책과	시·도,시·군	-
13-2 물류센타의 도시계획시설 포함(▲)	유통정책과 (건설교통부)	-	-
13-3 물류센타 운영방식 다양화(▲)	유통정책과	-	-

과 제	관 련 부 서		
	중 앙	지 방	단 체
14. 물류센타를 통한 새로운 거래체계 개발			
14-1 물류센타의 판매망 구매선 확보방안(★)	유통정책과	-	농 협
14-2 유통정보시스템 개발(★)	통계정보처리	-	농 협
14-3 물류센타에 정책자금 지원방안(★)	유통관리과	시·도,시·군	농 협
15. 생산자조직과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 촉진			
15-1 농협 소비지 판매망 확대 및 다양화(○)	-	시·군	농 협
15-2 축협 소비지 판매장 확대 및 다양화(○)	-	-	축 협
15-3 소비지 민간대형유통업체 지원방안(★)	유통관리	-	-
16. 공영도매시장 거래질서 정착			
16-1 형식적 기록상장 근절방안(○)	시장과	시·도, 시	농 협
16-2 중도매인 신규허가방안(★)	시장과	시·도, 시	농 협
16-3 지방공영도매시장 상장예외제도 활용 방안 (*)	시장과	시·도, 시	농 협
17. 다른 도매시장에 재반입된 물량의 경매 제도 보완			
17-1 도매법인간 거래활용 방안(*)	시장과	시·도, 시	농 협
17-2 중도매인의 상장예외거래 허용(○)	시장과	시·도, 시	농 협
17-3 장기적으로 재반입 물량에 대한 경매지속 여부 검토(★)	시장과	-	-

과 제	관 련 부 서		
	중 앙	지 방	단 체
18. 경매의 공정성 제고			
18-1 전산경매 시범도매법인 선정(▲)	시장과	시·도, 시	농 협
18-2 전광판 설치로 경매결과 즉시공개방안(○)	시장과	시·도, 시	농 협
19. 도매시장의 운영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			
19-1 도·소매분리 등 자체 발전계획수립(▲)	시장과	시·도, 시	-
19-2 도매시장내 적정도매법인수 유지, 규모화방안(★)	시장과	시·도, 시	-
19-3 영세 중도매인 통합, 법인화 유도방안(★)	시장과	시·도, 시	농 협
19-4 출하촉진자금 지원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시장과	-	-
20. 도매시장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20-1 도매시장 평가내용 보완(○)	시장과	-	유통공사
20-2 도매시장 평가결과 반영 강화방안(▲)	시장과	시·도, 시	-
21. 생산유통단계에서 안전 및 품질저해요소 발굴, 차단			
21-1 품목별 안정성 검사강화 방안(*)	유통관리과	시·도,시·군	-
21-2 잔류농약 간이조사제 도입(★)	-	-	농 협
21-3 Cold Chain System 구축방안(★)	유통정책과	-	농 협
21-4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도입(★)	가축위생과	-	축 협
21-5 간이도축장 폐쇄(○)	가축위생과	시·도,시·군	-
21-6 식육처리 기술훈련원 건립(▲)	축산물유통과	-	축 협

과 제	관 련 부 서		
	중 앙	지 방	단 체
22. 품질인증품에 대한 관리강화			
22-1 농가대상 품질인증에서 생산자조직 인증으로 전환(★)	유통정책과 (농검)	-	농 협
22-2 품질인증 객관화 및 인증절차 간소화(★)	유통정책과 (농검)	-	-
22-3 민간단체에 품질인증 위탁(★)	유통정책과 (농검)	-	-
22-4 유기농산물 품질표시제 도입(★)	유통정책과 (농검)	-	관련협회
22-5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관리 강화 (○)	가공산업과	-	-
23. 국산농산물 차별화제도 정착			
23-1 원산지표시 단속 효율성 제고(○)	유통관리 (농검)	시·도,시·군	-
23-2 지리적 표시제 도입(★)	유통관리	-	-
23-3 식육구분 판매제 정착(○)	축산물유통	시·도,시·군	-
24. 농산물 품질관리 체제정비			
24-1 품질관리법 제정 추진(★)	유통관리	-	-
24-2 농검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개편(*)	유통관리 (농검)	-	-
24-3 농산물 품질등급판정사 도입(★)	유통정책	-	-
25.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 육성			
25-1 전국적인 생산조정과 출하조절을 할수 있는 전국생산자조직 육성(▲)	유통정책 (과수,채소,원특, 인력과)	-	농 협
25-2 손실보전을 위한 자조금 제도개선(*)	유통정책과 (채소과,무역 진흥과,농정 기획과)	-	농 협
25-3 전국생산자조직에게 정부수매사업 위탁(★)	유통관리과	-	농 협

과 제	관 련 부 서		
	중 앙	지 방	단 체
26. 품목별 농업관측 강화			
26-1 품목별 전국 생산자조직의 농업관측 강화(▲)	채소과 (농협)	-	농 협
26-2 KREI에 품목별 전문가 양성 (▲)	채소과	-	KREI
26-3 재배의향조사시 주산지별 추가조사(★)	유통통계	-	-
27. 송아지 안정생산과 쌀 약정 구매제			
27-1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	축산물유통과	-	-
27-2 쌀 약정구매제(*)	식량정책과	시·도, 시·군	-
28. 과일생산시 사후가격안정대책 내실화			
28-1 채소류 산지폐기, 구매개선방안(*)	채소과	-	-
28-2 과일류 저장, 가공업체 구매개선방안(*)	과수화훼과	-	-
28-3 축산물 구매 및 가격안정방안(*)	축산물유통과	-	-
28-4 산지폐기가격 산정방안(★)	유통정책과 (채소과)	-	-
28-5 전국공영도매시장 정보망구축(○)	시장과	시·도, 시	-
29. 출하예약제 도입방안(★)	시장과	시·도, 시	-
30. 농안기금 운용제도 개선방안(★)	유통관리과	-	-

VIII. 1998년

農產物流通改革對策報告會議('98. 7. 23)

農產物流通改革 對策

1998. 7

報告順序

I. 農產物流通의 課題	217
II. 重點推進施策	218
1. 適正生産 및 產地流通 革新	218
2. 公營都賣市場 改革	219
3. 直去來 制度化 및 小賣流通 改善	220
III. 流通改革 投資의 大幅 擴大	221
대통령 당부말씀	222
< 참고자료 >	223

농산물 유통개선은 역대 정부의 반복된 구호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족과 왜곡, 利害關係 對立, 汎 政府的 協助 推進體制의
미흡 등으로 아직도 생산자·소비자의 불만 대상이 되고 있음

I. 農產物流通의 課題

□ 構造的으로 流通費用 과다 발생과 需給不安요인 내제

- 광대한 지역에 걸쳐 수집되고 분산되기 때문에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고, 부패 변질성이 강함
- 생산과 출하시기는 계절적으로 집중되는데 비해 소비는 연중 일정하여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

※ 산지 370원 하는 배추가 소비지에서는 2,000원(유통마진 1,630원), 직·간접 비용이 1,010원 발생하여 산지 값이 폭락해도 소매가격 내림 폭은 미미

□ 「高費用·低效率」유통구조의 관행화(유통마진: 소비자구입가격의 56%)

- 산지 : 소량 분산출하, 수집비용과다, 정보화포장화기계화 초보단계
- 도매 : 도매시장의 고비용 구조, 부조리 개혁 미흡
- 소매 : 높은 임대료, 소규모 경영 등으로 유통마진 과다(유통마진의 50%)

□ 상업화농업이 보편화되면서 生産보다 「流通」이 더 重要的 시대 도래로, 流通革新 절실

- 채소·축산물 가격안정과 소매유통마진 축소는 시급한 당면과제

流通改革 推進方向

- ◇ 適正生産 및 產地流通支援 擴大로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 ◇ 도매시장의 高費用·低效率構造를 제도적으로 타파
- ◇ 직거래를 25%까지 대폭 확대하고, 小賣段階 유통을 혁신
- ◇ 농산물 流通分野 投資를 대폭 확대(年 4천억원 수준)

農產物 流通마진율을 56%에서 39% 수준으로 節減

II. 重點推進施策

1. 適正生産 및 產地流通 革新

① 農産物의 適正生産과 價格안정 프로그램 운영

- 부패변질이 쉬운 채소류·우유 등은 농·소·상·정(농·소·상·정)이 참여하는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
 - 유통협약을 통해 농·소·상·정 공동으로 생산·출하·소비 자율조절
 - 수급불안이 심한 경우 산지폐기·도태를 강제하는 유통명령제 실시
- 품목별 「채소류 생산출하조절 기획단」을 설치, 지역별·시기별 생산·출하물량의 계획적 조정으로 가격안정 유지
 - 채소류가격이 경영비의 80%이하로 3일 이상 하락시에는 수매·시장격리 등 자동개입
- 채소류 주산지의 농협 계약재배사업 대폭 확대(14% → 2001년 30%)

②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共同出荷 확대

- 생산량의 30-40%를 산지에서 포장·브랜드화 하여 대량 출하
 - 채소·과일 포장센터 : ('97) 78 → (2002) 220개소 완료
 - 쌀 종합처리장 : ('97) 253 → (2002) 370개소 완료
 - 축산물종합처리장 : ('97) 2 → (2000) 12개소 완료
- 공동판매·직거래 등 선진유통을 주도하는 산지유통시범농협 육성(150개소)

③ 산지에서부터 情報化·包裝化·機械化 기반 구축

- 농업전용 광역통신망 구축, 농업인(여성포함) 정보화교육 실시(10만명)
- 도매시장내 포장농산물 우대 및 비포장농산물 반입 억제
- 파렛트·지게차 등 장비 보급으로 하역기계화율 제고(3% → 2002년 50%)

➡ 共同出荷擴大(35% → 2002년 60%), 物流費 30%(2조원) 節減

2. 公營 都賣市場 改革

① 도매시장 去來方式을 多樣化하여 生産자의 선택기회 확대

-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현행 競賣制度 뿐만 아니라 都賣商 제도도 가능토록 제도적으로 개방하여 신설 또는 지방도매시장에 우선 적용
- 기존의 주요 중앙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경매제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수의매매품목을 대폭 확대
 - 중장기적으로는 개설자 판단에 따라 도매상제도 도입
- 경매의 경쟁촉진을 위해 중도매인이 참여하는 경매시장 범위확대
 - 타법인·타시장 경매참여 확대(거래보증절차 간소화), 법인간 공동경매제 실시 등 실질적인 경쟁 활성화
- 농민단체의 도매시장 운영 참여 폭을 점차 확대

② 34 공영도매시장 건설 마무리 및 기존시장의 施設 補完 본격 추진

- 2001년까지 34개 공영도매시장(18개소 개장, 16개소 건설중)완료
- 기존시장의 하역기계화시설·저온저장고·주차장 등 시설확충 보완
- 전국 최대의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의 도시외곽 이전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운영혁신방안 강구

③ 도매시장의 高費用構造를 타파하고 不條理 근절

- 8월까지 전국도매시장 上場手數料 1%이상 인하(年 350억원 부담경감)
 - 가락시장 5% → 4% 이미 실시, 여타시장도 8월말까지 인하
- 도매시장 관리·운영체제를 일원화하는 시장을 지원 확대
- 도매시장 운영자(법인포함)가 하역서비스를 담당하도록 유도
- 電子競賣의 조기실시로 경매비리 소지 근절(서울, 대전 시범실시 중)

➡ 公營都賣市場 去來比率 제고(45%→2001년 55%) 및 유통비용 감축

3. 直去來 制度化 및 小賣流通 改善

① 다양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直去來 定着

- 대도시에 생산자-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規模化(500평이상)된 상설 직거래장터 개설('98년 50개소)
- 중소도시에는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農民市場(Farmers' Market) 개설
- 농·축·수·임협 등이 공동으로 주택단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미니직거래장터” 운영(서울 5개팀)

② 물류센타 조기 擴充으로 새로운 直去來網 정착

- 2001년까지 12개소의 물류센타를 차질 없이 건설
 - 일부 공영도매시장의 물류센타로 전환 지원(성남, 고양 등)
- 출하자와 소매점간 전자정보거래망(EDI) 연결로 자동 집배송

③ 대형할인점·체인점의 농산물 取扱 擴大 및 경쟁촉진

- 포장센타, 물류센타 등 유통시설 및 직거래 자금 지원
- 중간대리점 없이 공장에서 유통업체로 直供給하는 우유판매체계 구축
- 슈퍼·편의점·식당의 식육판매 취급을 지원하여 육류소매가격 경쟁 유도

④ 직거래 制度化를 위한 支援體制 확립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및 운영자금을 특별지원
- 인터넷에 「직거래마당」 개설(6.26) 및 직거래장터 정보지 발간('98), Cyber Market 개설 등을 내실화

➡ 直去來比率을 提高(11%→2001년 25%)하고 소매마진 감축

Ⅲ. 流通改革 投資의 大幅 擴大

① 타 분야 농림예산을 삭감하여 流通分野에 집중투입

- 공공유통사업 투자를 현 수준보다 30% 증액(국고기준, 연평균)
- ('97~'98) 3천억원 → ('99~2002) 4천억원 수준
- 주요 유통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도매시장 : 50%(광역시 30%) → 70(광역시 50)
- 하역기계화 : 0%(유자 80%) → 50(유자 30)
- 유통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農安基金(1조9천억원)을 집중 지원
- 생산자단체와 민간기업간 지원조건 격차해소(쌀종합처리장, 물류센터 등)

② 「公共所有·民間運營」 방식의 유통시설 확대

- 지방자치단체는 부지를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건설을 지원하며, 운영은 농·축·임협 또는 전문유통업체가 맡는 체제 도입
- 물류센터·포장센터·직거래망 등에 적용하고, 운영자금 지원

汎 政府的 노력을 집중하여 流通改革 완수

◇ 各 部處가 參與하는 범 정부적인 농축산물 유통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역할 정립

- 지방정부의 유통행정 강화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 물류비용 절감, 유통시설 입지지원 : 건설교통부
- 금융, 세제지원, 소비자협동조합 육성 : 재정경제부
- 소매마진축소 등 소매유통개선 : 산업자원부, 지방자치단체
- 시장·유통의 정보화 지원 : 정보통신부
- 식품안전 및 환경농업 지원 : 보건복지부, 환경부
-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 특히 농·축·임·삼협 등 생산자단체가 유통개혁에 전력투구토록 체제 개혁 독려

대통령 당부 말씀

1. 그동안 31조원의 예산이 농업부문에 투자되었는데 생산부문에 78%, 농민복지 등에 14% 수준 지원하였으나 유통부문 투자는 8%에 불과하는 등 유통개선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2. 농산물 유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제값을 받는 것이므로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생산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농·수·축·임협은 생산보다도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3. 언론보도에 의하면 쇠고기 가격이 산지가격에 비해 3배나 비싸고, 농민은 배추를 처리못해 갈아 엮는 상황에도 도시에서는 3,000원에 팔린다고 하는데 정부도 금년부터는 투자의 중점을 생산증대보다 물류를 신속화하여 농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4. 이제까지의 타성에 따라 생산만 증대시키면 값이 하락하게 되어 생산농민이 수지가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를 반드시 시정하여 앞으로는 농민이 정말로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한 농민이 제값을 받는 것이므로 농정의 지도자들은 농민이 제값을 받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고랭지배추 유통비용 분석
2. 농산물 유통마진 조사현황
3.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4. 도매상제도 개념
5. 농산물유통개혁 대책전·대책후 모습
6. 농산물유통개혁 대책수립 추진경과

皇 朝 通 志

卷一百一十五

禮 儀 志 第 十 一

禮 儀 志 第 十 一

禮 儀 志 第 十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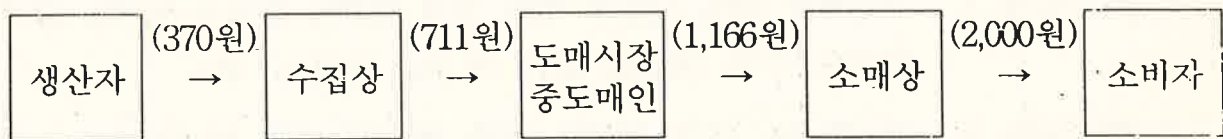
禮 儀 志 第 十 一

禮 儀 志 第 十 一

고랭지배추 유통비용 분석

- 배추 1포기의 직·간접 유통비용이 1,012원에 달해 산지가격 하락에 관계없이 소비자가격 변동 미미
 - 소비지에서 2,000원에 판매되는 배추의 산지 출하가격은 370원, 중간 유통마진이 1,630원(82%)
 - 유통마진중 수확상차비·운송비 등 직접비가 631원, 점포유지관리비·간접비가 381원 등 총 1,012원
 - 따라서 산지에서 무료로 준다하더라도 소비지에서는 유통비용에 해당하는 1,000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

소비자가격 2,000원/포기(100%)		
농가수취가격	유통마진 1,630원(81.5%)	
	유통비용(1,012원 : 50.7%)	상인이윤(618원: 30.8%)
370원 (18.5%)	○ 직접비 : 631원 - 수확상차비 135원(6.8%), 운송비 163원(8.2%) 포장재비 19원(0.9%), 하역비 16원(0.8%) 선별작업비 82원(4.1%), 청소비 30원(1.5%) 상장수수료 39원(1.9%), 감모 136원(6.8%) 쓰레기유발부담금 11원(0.6%) ○ 점포유지관리비 등 간접비 : 381원(19.0%)	수집상 : 22원(1.1%) 중도매인 : 162원(8.0%) 소매상 : 434원(21.7%)



- 일부 점포나 직거래장터에서 1,000원보다 낮게 판매하는 사례 발생
 - 점포운영비, 인건비 등 간접비 고려없이 직접비용(631원) 수준 판매
 - 배추를 판매전략상 다른 물건을 팔기위한 미끼상품으로 이용하는 경우
 - 직거래행사 등과 같이 기존의 점포나 인력을 활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농산물 유통마진 조사현황

(‘97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

□ 농산물 유통마진 조사결과, 농가평균 수취가격은 43.5%, 유통마진은 56.5%로 나타났음

- 유통단계별로 볼 때 생산·출하단계나 도매단계에서 보다 소매 단계에서의 유통 마진이 전체유통마진의 50% 수준
 - ※ 출하단계는 14%, 도매단계 14%, 소매단계 28%
 - 이는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임대료와 인건비 등이 높기 때문임
-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포장비·수송비·하역비·상장수수료 등 직접비용은 18.9%이나 간접비 및 이윤은 2/3 수준인 37.6%로서 높은 임대료나 인건비가 가장 큰 요인

< 직접비 > : 포장비, 운송비, 하역비, 상장수수료, 감모·폐기, 쓰레기 유발부담금 등(18.9%)

< 간접비 및 이윤 > : 인건비, 임대료, 제세공과금 및 이윤(37.6%)

- 품목별로는 산지에서의 포장화가 미흡하여 수송·하역기계화나 투명한 거래가 곤란 하고, 부피에 비해 가격이 싸며,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폐기가 많은 품목일수록 유통마진이 높음

< 50~80% > : 가을배추 76%, 가을무 70%, 양파 63.9%, 봄감자 65.3%, 감귤 62.7%, 수박 58.3%, 오이 55.8%, 참외 53.3%

< 30~50% > : 배 43.4%, 단감 49.4%, 사과 39.5%, 마늘 38.3%,

< 30%미만 > : 쌀 19.3%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수집과 분산과정이 광대한 지역에 걸쳐 유통 경로가 복잡하고, 부피가 크며 부패변질성이 강한 특성을 지닌 농산물 유통마진 축소는 짧은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님

□ 우리나라의 평균 농산물 유통마진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일본과 비교가능한 사과, 감귤, 오이, 양파, 배추, 무 등 6개품목의 경우 한국은 61.3%, 일본은 69.7% 수준임
 - 사과 39.5%(일 48.0%), 오이 55.8%(일 70.3%), 배추 76.0%(일 84.8%), 무 70.0%(일 73.0%)
- 미국과 비교가능한 사과, 포도, 양파, 감자 등의 경우 한국은 51.6%, 미국은 75.3% 수준임
 - 사과 39.5%(미 73.4%), 포도 37.8%(미 63.1%), 양파 63.9%(미 78.1%), 감자 65.3%(미 86.6%)

※ 일본이나 미국의 유통마진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소비자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어 산지에서의 선별·포장 비용이나 소비지에서의 재포장, 소포장, 가공 등 비용이 추가되고 예냉·냉장수송, 냉장보관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임

□ 주요 공산품유통마진 수준(47.8%)과 비교해 보았을때 농산물유통마진은 공산품보다 8.7% 수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조사한 주요공산품의 평균 유통마진율은 47.8%로서 농산물의 평균 유통마진율 56.5% 보다 8.7% 낮음
 - 모피(58.5%), 가방(59.3%), 라이타(70.3%), 정수기(65.7%), 시계(59.8%) 등은 농산물 평균유통마진보다 높음
- 농산물은 수송비·포장비·하역비·상장수수료 등 직접비용(18.9%)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농산물 유통마진이 공산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채소류(무·배추·상추·시금치 등)의 경우 지역별·시기별 출하물량이 기상조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일시적인 폭락과 폭등 현상이 빈발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이를 위해 「유통협약」과 「유통명령」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1. 유통협약(Marketing Agreement)

- 내용 : 수급불균형이 현저하여 가격하락 지속이 예상되는 경우 생산자, 소비자, 유통상인, 정부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수급안정을 위한 상호역할 분담
- 사례 : '98년산 양파에 대한 유통협약('98. 5. 8)
 - 양파의 생산과잉이 우려되자 「농·소·상·정」이 협약을 맺고 농가는 품위저하품 출하억제, 소비자는 소비확대, 상인은 품위저하품 유통억제, 정부는 농가지원확대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공동노력
- 특성 :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협약체결로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무임승차자(free-rider)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 발생

2. 유통명령(Marketing Order)

- 내용 : 유통협약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참여자의 유통활동을 집단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며,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미국 : 2/3) 이상의 참여자 동의로 정부기관(미국 : 농무성)에 유통명령을 요구하여 승인 받으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는 제도로서 대부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됨

※ 자조금제도와 연계 시행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음

□ 실천수단

- 물량통제(Volume management) : 생산할당, 잉여산물의 타시장판매, 시장격리, 시장출하규제 등
 - 품질통제(Quality management) : 출하를 위한 등급, 크기, 숙성도 규제
 - 시장지지(Market support) : 용기의 표준화, 공동연구, 광고활동 등
- 미국의 경우 채소, 과일, 특용작물 등 33개 품목에 대해 33개 주에서 실시

도매상제도개념

□ 농산물 도매상제의 정의

- 도매시장에 다수의 도매상이 입주하여 각각 산지로부터 직접 또는 중개인(broker)을 통하여 농산물을 구매하여 중간도매상 또는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시장체제
- 엄격한 의미에서는 도매상은 매입판매자이며, 일반적으로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도착하기 전에 거래가격이 결정
 - 상품이 시장에 도착한 후 위탁상이 중간도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위탁상체제와는 구분됨
- ※ 경매제 : 거래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매시장내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상품을 수탁받아 중도매인이 참여하는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제도

□ 도매상체제의 장단점(경매제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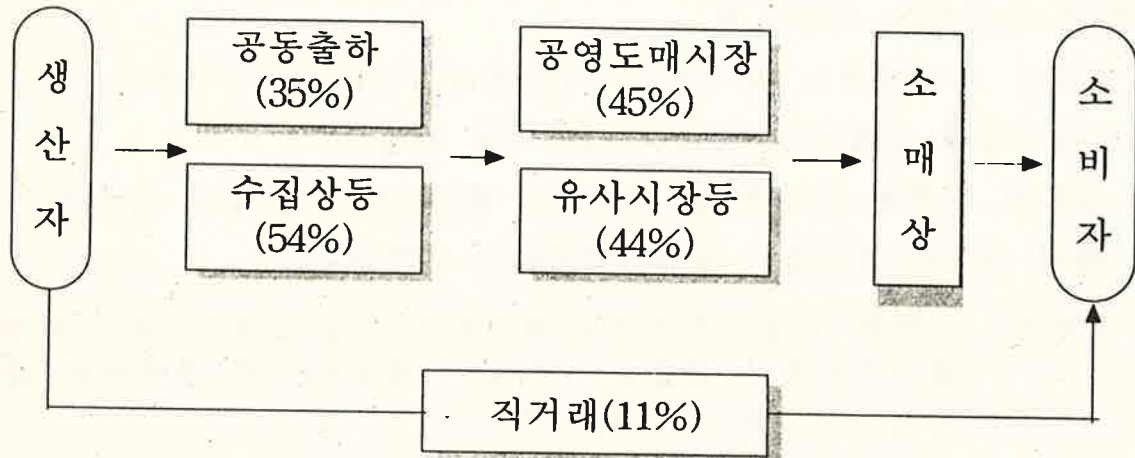
	경 매 제	도 매 상 제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출하주에 대한 대금정산 보장 ○ 유사도매시장 횡포 방지 ○ 상품성향상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내 유통비용 절감 ○ 신속한 수집·분산으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 생산자의 출하 선택권 보장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상제 장점의 반대 ○ 기록상장, 형식경매 등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시장내 유통비용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제 장점의 반대 ○ 여건 미비로 유통의 효율화와 공정성 확보에 실패가능성 높아, 과거 위탁상의 폐해가 우려됨

□ 도매상제 성공을 위한 조건 및 제도적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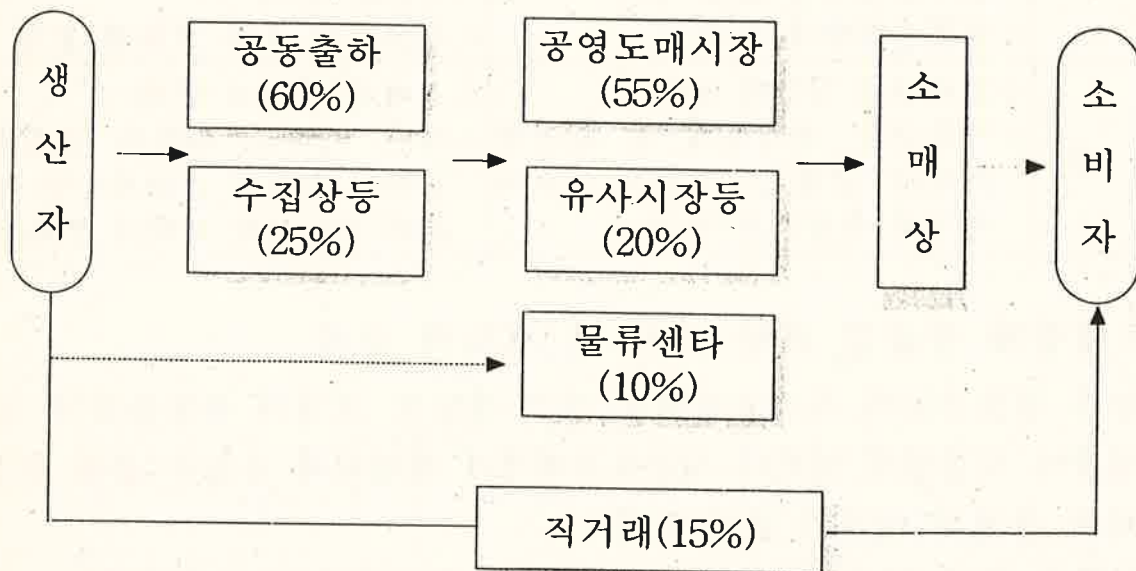
- 농가 생산규모가 시장교섭력을 가질 정도로 크거나 공동출하가 정착
- 상품이 저장성이 있거나 저온유통체계가 확립되어 유통중 품질 손상에 따른 분쟁의 여지가 없어야 함
- 실물을 보지 않고도 전화 등에 의한 통명거래가 가능해야 함
- 출하자와 도매상간에 신용거래가 확립(도매상 신용평가제 등)
- 거래내용 즉시공개, 반입물량 확인제도 등 신뢰성 있는 유통정보제공 제도화

농산물 유통개혁 대책전·대책후 모습

< 현 행 >



< 대책후 >



※ 직거래 및 준직거래(물류센터) 비율 25%

농산물 유통개혁 대책수립 추진경과

- ◇ 유통개혁위원회 발족회의(3. 19)
 - 과제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협의

- ◇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2차회의(5. 8)
 - 농산물유통개혁(시안) 토의

- ◇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3차회의(6. 11)
 - 농산물유통개혁(안) 협의

- ◇ 중앙공청회(6.16, 6.29)
 - 도매시장 거래제도개선
 - 직거래제도화 및 소매유통 개선

- ◇ 지방공청회(6. 27)
 - 농산물유통개혁대책(안)

- ◇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4차회의(6. 29)
 - 농산물유통개혁(안) 대정부 건의

- ◇ 대통령보고(7. 23)

MEMORANDUM FOR THE RECORD

DATE: 10/10/50
TO: SAC, NEW YORK
FROM: SAC, NEW YORK

SUBJECT: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농산물유통개혁대책

'98. 8.

농 립 부
유통개혁위원회

民國卅九年五月

目錄

第一卷
長沙縣志

목 차

I.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배경	237	
II.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방향	242	
III. 농산물 유통개혁 대책	244	
1. 직거래제도화 등 유통경로 다원화	245	
2. 공영도매시장 개혁	254	
3. 산지유통 혁신과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268	
4. 농산물 물류 및 정보체계 개선	278	
5.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체제 확립	286	
【 축산물 유통개선 】	293	
IV. 지원체제 정비	300	
<table border="1" data-bbox="240 1704 804 1800"><tr><td>농축산물 유통개혁 지표</td></tr></table>	농축산물 유통개혁 지표	305
농축산물 유통개혁 지표		
< 사업별 주관 및 협조부서 >	307	

I.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배경

- ◇ 수차에 걸친 유통개선대책을 통해,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이 확충되고, 거래체도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전반적인 농산물의 유통체계가 아직도 「고비용·저효율」 구조
 - '94-'97년간 유통부분에 2조 5천억원이 투자되었으나 생산자·소비자가 피부로 느낄만한 개선효과 미흡
 - ◇ 특히, 그동안의 유통개선대책이 관련제도나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보다는 공영도매시장 중심의 기본틀 속에서 시설확충에 치중한 결과, 급격한 유통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현재와 같은 공영도매시장 위주의 경직된 정책으로는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비 절감을 통한 「고효율·저비용」 유통구조를 실현하는데 한계
 - ◇ 또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사업도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불가능
 - 영세한 영농구조체제하에서 농가소득지지와 생필품인 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농산물 유통개혁은 시급한 과제
- ⇒ 지금까지의 유통정책의 틀과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유통개혁을 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제고를 뒷받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

1. 농산물 유통의 현황과 문제

가. 농산물 유통의 특성과 현황

□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구조적으로 유통비용의 과다발생 요인 내재

- 농산물은 다수의 생산자로 부터 다수의 소비자까지 전달되어야 하므로 수집과 분산과정이 길고 복잡
 - 생산자 - (수집상) - 도매법인·중도매인 - (중간상) - 소매상 - 소비자
- 또한, 농산물은 부패·변질이 쉬워 유통과정에서 감모나 폐기가 많이 발생하고, 부피가 크고 무거워 수송·보관·하역 등의 표준화·기계화가 어려움
- 농산물 생산은 연도별 또는 계절적으로 등락이 심한데 비해 소비는 연중 고르게 이루어져 수급 불안요인이 상존

□ 농산물 유통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유통과정상 발생하는 직·간접비용이 주요한 요인임

소비자 구입가(100%)		
생산자 수취비율(44%)	유통마진율(56%)	
	물류비 등 직접비 (18%)	간접비 및 이윤 (38%)

- 소비자 구매액중 농가수취비율 44%, 유통마진율 56%
 - 무·배추 등 일부품목의 농가수취가격이 20%, 유통마진이 80% 수준
 - ※ 고랭지배추 : 농가수취가 370원/포기, 소비자가 2,000원/포기
 - 농산물 유통마진(56%)중 수송·하역·상장수수료 등 직접비용이 18%이고, 이를 제외한 간접비 및 이윤은 38% 수준
- 특히, 높은 임대료, 인건비, 감모 때문에 유통마진의 절반이상이 출하·도매단계보다 소매단계에서 발생
- 단계별 유통마진 : 출하 14%, 도매 14%, 소매 28%
 - 산지가격하락 만큼 소비자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

나. 그동안의 유통개선 노력

□ 생산자조직 육성과 산지유통시설 기반 확충

- 주산지 중심으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이 육성되고, 선별·포장·가공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이 양적으로 확충
 - 간이집하장 3,290개소, 포장센터 78개소, 산지가공공장 1,349개소 등
- 채소류를 제외한 과실류의 포장출하가 정착되고, 농산물 브랜드화가 진전
 - 시설채소·과실 포장출하율 95% 이상

□ 대규모 도매시설 투자 확대 및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 대량의 농산물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영도매시장·물류센터·공판장 건설 확대
 - 공영도매시장 18개소 개장(16개소 건설중), 물류센터 2개소 개장(10개소 건설중), 공판장 90개소 개장(10개소 건설중)
- 농산물 유통의 주경로가 유사도매시장에서 점차 공영도매시장·공판장 등으로 전환 추세
- 공영도매시장의 상장경매 확대로 공정가격 형성에 기여

□ 우수농산물 차별화제도 도입 및 생산자단체의 소비지시장 참여 확대

- 품질인증제, 원산지표시제('91년), 안전성조사제도('96) 도입으로 국산농산물의 차별화 진전
- 생산자단체의 직판사업도 유통여건변화에 맞게 대형화 및 다양화 함으로써 소매유통개선에 기여

다. 농산물 유통단계별 문제점

< 출하단계 >

- 생산자조직의 공동출하가 부진하여 생산자의 거래교섭력이 떨어지고, 규격출하 미흡·속박이 등으로 신용거래 한계
 - 농촌지역 정보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시장·출하 정보제공 체제 미흡
- 포장센터, 간이집하장, 가공공장 등 산지유통시설이 크게 늘어났으나 소비지 유통시설이나 판매망과의 연계체계 미흡으로 산지유통개선효과 미미

< 도매단계 >

- 공영도매시장이 확충되었으나 거래제도의 경직적 운영, 상윤리 실종, 이익집단간의 갈등으로 인해 공영도매시장 개선시책의 실효성 저하
 - 전통적인 상거래 관습에 젖은 유통종사자의 이해 대립으로 유통개혁으로
- 농산물의 50%수준이 유통되는 유사시장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미흡

< 소매단계 >

- 소매유통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나 농산물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미흡

< 물류단계 >

- 농산물의 포장규격·유통시설 및 장비의 표준화가 미흡하고, 파렛트 적재출하·하역기계화가 부진하며, 하역노조에 의한 하역 독점 등으로 농산물 물류비가 과다
- 예냉, 저온저장, 냉장수송, 저온경매 등 콜드체인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유통과정에서 감도가 발생하고, 고품질농산물 출하 곤란

2. 농산물 유통여건의 변화 전망

□ 유통경로·유통주체간의 상호 경쟁심화

- 막대한 자본과 선진경영기법을 갖춘 외국 신유통업체의 국내진출과 대기업 유통참여로 유통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수직적수평적 통합이 확대
 - 싼값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직거래나 물류비 절감 촉진
- 농산물유통경로가 기존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직거래 등으로 다원화됨에 따라 유통경로간 경쟁 치열
 - 공영시장 중심으로 신선농산물의 대량거래단계에서 대형점·체인점 중심의 가공식품 및 브랜드화 농산물의 직출하단계로 발전
- 국내농산물과 외국농산물과의 품질 및 가격경쟁 치열

□ 소비패턴의 변화와 소매단계 농산물 유통의 중요성 증대

- 소비의 고급화·다양화와 다품종 소량구입 패턴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요증가
 - 포장화·브랜드화 및 예냉처리·가공처리가 촉진
- 농산물거래와 가격형성의 중심이 도매시장에서 점차 대형화된 새로운 소매유통업체·가공업체로 전환

□ 수급안정, 유통개선 주체로서 생산자단체의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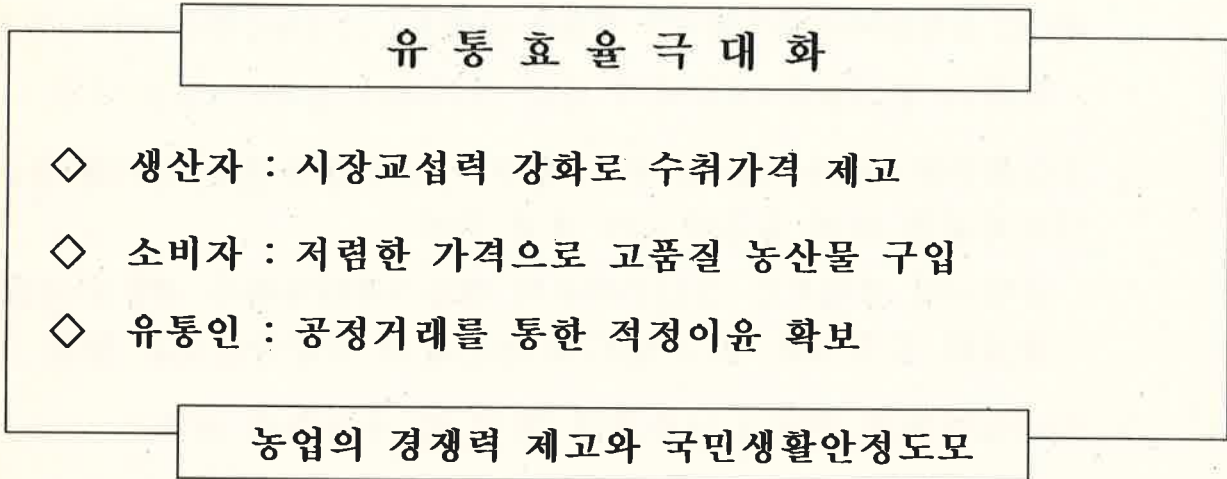
- 경쟁력있는 일부품목에 생산이 집중됨에 따라 수급 불안전성이 확대되어 품목별 생산자 조직중심의 자율적인 수급안정 역할 중요
 - WTO체제 출범, OECD 가입 등으로 정부의 가격지지 한계
-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확산에 대응하여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생산자의 질적 조직화와 소비자조직과 연계가 필요

□ 정보통신을 이용한 투명거래·전자거래 급속 확산

- 현재 농촌 정보인프라가 취약하나 초고속정보망 구축 및 PC 보급 확대 등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농산물 전자상거래(EC) 확산 전망

II.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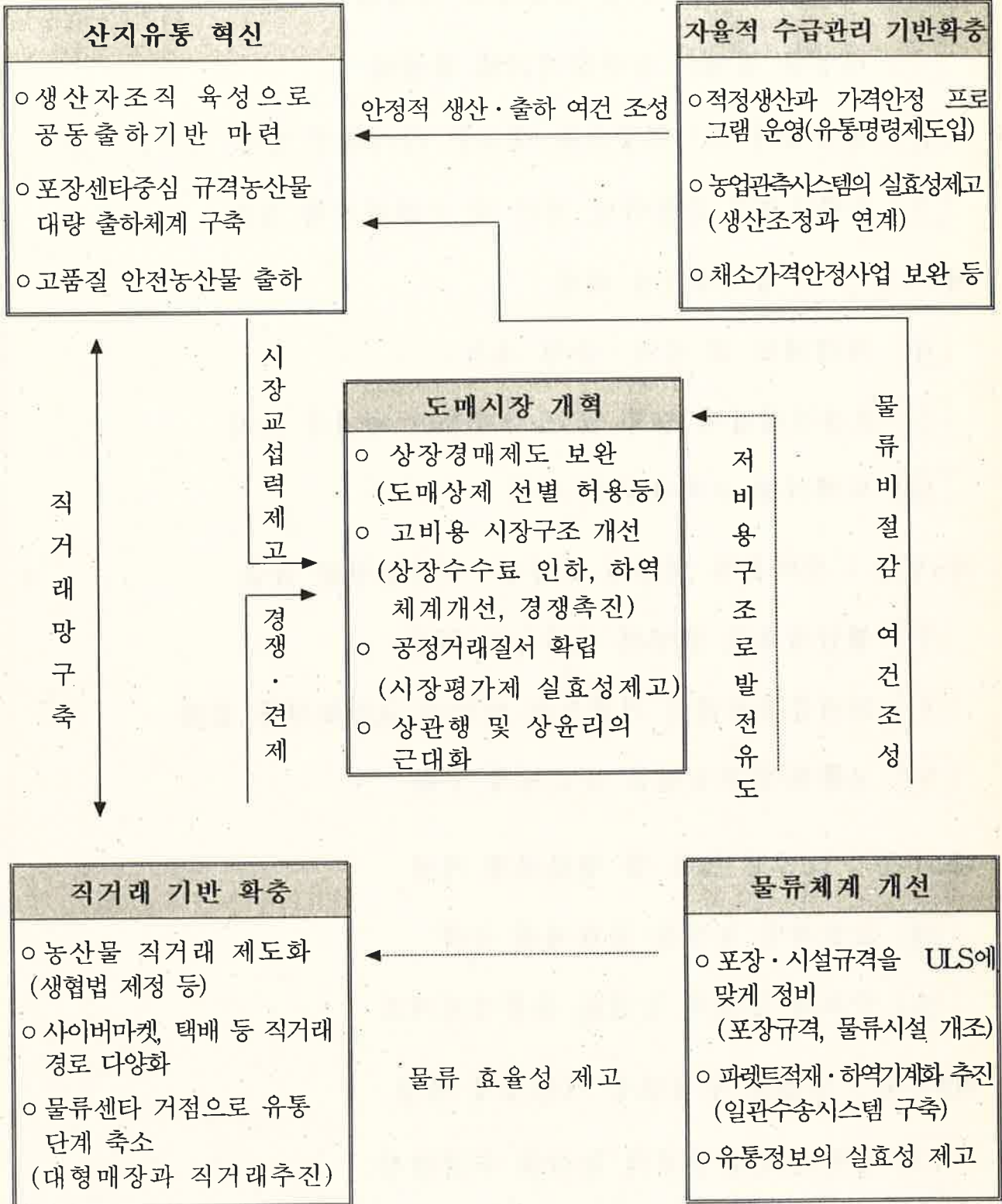
< 추진목표 >



< 추진방향 >

-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유통의 비능률을 과감히 제거
- 확충된 유통시설을 바탕으로 유통경로 다양화, 도매시장 제도개선 및 정보화 등 소프트웨어부문 개선에 중점
- 경쟁 제한요소를 최소화하고 민간업체의 유통참여 유도로 유통경로간, 유통주체간 경쟁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전환
- 지역별, 품목별 여건에 따라 관련제도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실효성을 제고
- 중앙정부는 각 유통주체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의 역할 강화
- 각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농산물 유통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자단체가 유통개혁에 전력 투구토록 체제개혁 독려

< 추진과제 >



Ⅲ. 농산물 유통개혁 대책

농산물유통개혁 12대 과제

제1부분 : 직거래제도화 등 유통경로 다양화

- 1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 2 물류센터 조기확충으로 새로운 직거래망 형성
- 3 소매단계의 유통마진 절감 및 소비자정책 강화

제2부분 : 공영도매시장 개혁

- 4 거래제도 및 관리·운영 개선
- 5 공정거래질서 정착 및 유사시장의 체계적 관리
- 6 도매시장 고비용구조 개선

제3부분 : 산지유통 혁신과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 7 생산자조직 중심의 산지유통 혁신
- 8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대량의 규격농산물 출하
- 9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제4부분 : 농산물 물류 및 정보체계 개선

- 10 효율적인 농산물 물류체계 구축
- 11 수요자 중심의 농산물 유통정보개선

제5부분 :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체제 확립

- 12 생산자조직 중심의 농산물 수급안정

1. 직거래제도화 등 유통경로 다원화

< 현황 및 문제점 >

- 농산물유통은 특성상 수집과 분산과정이 길고 복잡하여 구조적으로 유통단계가 많고, 유통마진도 과다하게 발생
 - 유통단계와 유통마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유통경로 개발 필요

- 최근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새로운 유통경로로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직거래장터 등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남의 장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은 생산자단체의 직판행사적 성격이 강함
 - 특히, 직거래장터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참여, 장터 확보의 어려움, 인근 상인과의 마찰 등으로 직거래 정착에 애로

- 새로운 선진 직거래형태의 유통시설인 물류센타는 2개소 개장에 불과하여, 도매시장 유통경로와 경쟁하기에는 아직 역부족
 - 물류센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도·소매 기능을 병행하고 있으나 일반유통업체의 가맹점 확보로 도매기능 활성화 필요

- 유통과정상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소매유통 개선문제는 정책대상에서 소홀하게 취급
 - 소매단계 유통마진의 대부분은 임대료, 인건비, 감모 등이 주요 요인이나 이에 대한 대책 소홀
 - 소매단계 유통은 여러부처가 관여되어 있고 산지 및 도매단계의 유통을 담당하는 농림부와의 업무협조가 미흡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부족

과제1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가. 유형별 특성에 맞는 농산물 직거래 추진

<제 1 유형> 생산자단체-소비자 직거래 장터 개설

- 대도시에 규모화되고, 정례화된 직거래 장터(500평이상) 개장('98년 50개소)
 -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생산자단체가 투자·운영을 담당하는 모델 보급·확산(중앙정부가 시설비 및 운영자금 일부지원)
- 중·소도시에는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민시장 개설(2001년까지150개소)
 - 참여농민이 자율운영(협의회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농기계수리점, 영농자재판매점 등을 함께 운영하여 농산물 유통의 거점으로 육성
 - 시설비 용자지원('99년 23개소, 49억원)
- 농민·소비자 및 행사주관기관의 손익을 분석, 경제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도록 유도

<제 2 유형> 생산자단체의 소비지 직판기능 효율화

- 생산자단체의 소규모 직판장은 유통여건 변화에 맞게 규모화·대형화
 - 생산자단체 상호간 물품공급체제 확립으로 일괄구매기회 제공
- 농·축협 등 금융점포내 직판코너를 확대 설치하고 농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까지 취급품목을 다양화
- 차량순회판매는 소매점수가 적고 소비자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농·수·축협 합동 판매(서울 5개팀)

<제 3 유형> 생산자와 소비자 협동조합간 농산물 직거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으로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육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산지 생산자조직간에 정례화된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 소비자조합의 공동구매 자금, 직판장 지원 추진('99년 80억원)

<제 4 유형> 산지 생산자조직-대형유통업체(실수요업체) 직거래

- 산지에서 선별·포장·가공을 종합처리할 수 있는 농산물포장센터, 미곡종합처리장,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확충
-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농산물의 30~40%를 산지에서 선별·가공·포장하여 물류센터, 대형유통업체, 대량실수요처, 가맹점과 직거래 확대
- 특히 대량실수요업체인 병원, 학교, 기업체 등과의 자매결연 강화

<제 5 유형> 물류센터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직거래 정착

- 중간상인의 개입을 배제하고 물류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직거래의 규모화·제도화 추진
- 산지출하처, 물류센터, 소매점 및 대량수요처간을 연결하는 전자주문거래시스템 운영으로 유통효율 극대화

<제 6 유형> 통신판매·택배 등 무점포방식의 직거래 추진

- 통신판매, 택배, 자매결연 등을 활용한 무점포 직거래 추진으로 임대료, 감모 등 소매단계의 유통비용 절감
- 소비자는 전자주문서로 주문하고, 물류센터는 소포장센터를 이용하여 주문가구별로 포장, 배송하는 「찾아가는 직거래」개발·추진

<제 7 유형> 농산물 전자직거래 장터 개설

- 생산자단체 등이 농산물 전자직거래를 개설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비용 절감 도모
-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의 농산물 취급을 확대하도록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연계체제 구축
- 생산자단체, 민간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을 소비자가 쉽게 찾아 갈수 있도록 「농축산물 통합몰」 구축 운영

⇒ 농산물 직거래비율을 97년 7% 수준에서 2001년 25% 수준으로 확대

나. 직거래제도화 지원체제 구축

□ 중앙 및 지방정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의 협조체제 강화

- 중앙정부는 직거래실태조사 및 경제성분석, 재정적·법적 뒷받침,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강화 등 관련제도 정비
- 지방자치단체는 부지제공, 홍보 등 간접적 지원에 주력
- 생산자 단체는 물량수집 및 배송, 가격정산 등 운영주체 역할 담당
 - 생산자단체의 직거래추진단 운영
- 소비자단체는 일반소매점보다 직거래장터, 자매결연 등 직거래 사업 활용 확대

□ 직거래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부여

- 정부의 농림사업 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에 직거래 추진실적 포함
 - 부지 지원실적, 자매결연 알선, 생산자단체 지원실적 등 평가
- 실적가산금('98년 250억원) 차등 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직거래 규정 제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산지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간의 직거래 활성화
 - 농산물 직거래사업 및 지원근거 마련
- 구체적인 지원사항 명문화 위해 대통령령으로 직거래 규정 제정
 - 지방자치단체 지원, 직거래 추진실적 보고 등 명문화

□ 직거래 촉진을 위한 정보체제 구축

-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상호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직거래마당」을 인터넷에 개설('98. 6.29)
 - 산지별 생산자의 제품안내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유통업체·대형요식업체의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간 직거래 유도
- 직거래장터 및 농민시장 정보지 발간 배포('98 하반기)

과제2 물류센터 조기 확충으로 새로운 직거래망 형성

가. 물류센터 건설 확대

□ 새로운 유통경로 구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기여

- 물류센터를 중심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현행 도매시장을 통한 5~6단계의 유통단계를 3~4단계로 축소
 -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조달하여 대형소매업체에 배송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여 유통비용과 마진을 크게 절감
- 예약·수의거래를 통한 계획적인 출하 및 하역기계화 등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 공급
- 집배송과 직거래로 소매중심의 대형할인매장과 차별화하고 외국 유통업체의 국내 진출에 대응

□ 주요 소비지 거점을 중심으로 물류센터 확충

- 이미 계획이 확정된 12개소의 물류센터(개장 2개소, 건설중 10개소)는 2001년까지 차질없이 개장
-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공영도매시장의 물류센터 전환 지원(고양, 성남 등)
- 대도시 주변 농·수·축·임협 공동으로 직거래형 물류센터 추가 건설('99년중 2개소)

□ 물류센터건설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됨을 감안하여 「공공소유·민간운영」 방식으로 건설추진

-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지방자치단체 소유)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 민간유통업체에 운영 위탁('99년 2개소)
 - 지원조건 : 총사업비 70% 국고보조, 지방비 30%
- 건설비절약을 위하여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유통단지내 건설을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내 건설허용도 강구(건교부와 협의 추진)

□ 민간 등의 물류센터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한 지원조건 강화

- 추가건설 물류센터는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민간업체 위주로 지원하고 지원조건 강화
 - 민간지원조건 : (당초) 건설비 60%용자 → (개선) 총사업비 80%용자
- ※ 생산자단체 : 부지구입비 50% 용자, 건설공사비 50% 보조
- 민간업체가 자체건설한 기존 소규모 물류센터간 운영협약을 맺어 공동브랜드, 공동수집·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자금 지원

나. 유형별로 구분 운영 활성화

□ 지역여건과 사업체 특성에 맞게 기능 및 운영방식을 유형화

- **대 도시 형** 대도시 또는 인근 외곽에 대형 직판장을 병행 건설하여 집배송 위주로 운영하되, 직거래제도화를 위하여 직판기능도 병행
- **중소도시형** 산지 또는 중소도시 인근에 건설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물류기지로 운영
 - 산지공판장, 미곡종합처리장 및 포장센터 등 산지유통시설과 연계를 추진하여 산지유통의 거점시설화
- 물류센터 운영방식을 다양화하여 대형 민간유통업체 중심의 컨소시엄형태 운영도 허용

□ 산지 포장센터, 소비자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선 확보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회원농협 등을 물류센터 전속 출하조직으로 확보
 - 산지에서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하여 채소가격안정사업(계약재배)의 계약주체에 물류센터 포함
 - 개장초기 운영활성화를 위해 출하선도금, 매취자금 등 일정기간 지원
 - 도매실적, 하역기계화, 가맹점확보 실적 등 평가를 통해 차별지원
- 소비자 일반유통업체를 판매망으로 확보하여 도매기능 강화
 - 소포장 가공시설을 이용한 학교, 병원 등 단체급식용 식자재 개발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상품 차별화
 - 슈퍼마켓 협동조합, 요식업중앙회 등과 전략적 제휴 추진
 - 물류센터 이용가맹점의 표준소득을 경감 추진(국세청과 협의)

□ 물류센터와 산지 출하처, 소매점을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전자상거래(EDI/EC) 시스템 구축

- '98.3월부터 양재동 물류센터와 소매거래처 사이의 전산망(VAN)을 통해 전자 수·발주시스템을 구축 운영중(150개 거래처에 2,000 아이템 적용)
 - '99년 부터는 산지출하조직까지 EDI 시스템 확대
- 농산물전자상거래(EDI/EC)시스템으로 발전시켜 거래의 정확도 제고와 시간 및 유통비용 절감

과제3 소매단계의 유통마진 절감 및 소비자정책 강화

가. 소매단계 유통마진 절감으로 소비자 부담 경감

□ 생산자단체의 민간유통업체 견제 및 민간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취급 확대

- 농·축협외 직판장의 대형화,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해 생산자단체의 소비지시장 견제기능 강화
 - 농협 :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가맹점(농협 식품전문점, 한들마트)
 - 축협 : 시범판매장, 가맹점(목우촌, 축협직매장)
- 포장센터·물류센터 등 유통시설의 「공공소유·민간운영」 방식도입으로 민간유통업체의 농산물 유통참여 확대('99년 4개소)

□ 민간 유통업체의 산지직구입 및 시설현대화 지원

- 산지 포장센터로부터 포장, 파렛트 출하품 및 브랜드화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에 직거래자금 신규지원 추진('99년부터)
- 중소유통업체의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사업 지원 확대(산자부 '98년 1,000억원)

□ 임대료 인하 및 감모·폐기 최소화 방안 강구

- 관계부처와 협의,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형소매점의 임대료 인하 등 종합적인 소매유통개선 방안 검토
- 포장화,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및 시장거래제도개선, 유통경로다원화 등으로 유통시간을 단축시켜 감모 최소화

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감시기능 강화

- 소비자 모니터링제 운영 활성화
 - 소비자단체 회원중심으로 명예감시원을 위촉·확대하고 명예감시원의 기능을 원산지표시관리에서 품질인증, 안전성 조사 등으로 확대
- 농협, 생산자단체 등에 소비자 상담실 및 소비자 고발센터 설치 운영
 - 농산물의 품질, 가격, 안전성, 원산지표시 관리 등에 대한 감시체제 강화
- 소비자단체에 유통 농산물 감시를 위한 조사·연구 기능 부여
 - 농산물 가격조사 결과 공표, 부정·불량 유통농산물의 수거 및 조사의뢰 등

□ 농산물 반품교환제 도입

- 품질인증, 브랜드화의 확대를 통한 농산물 생산자 실명제 정착
- 부정·불량 농산물에 대한 반품교환 및 환불제 도입
 - 저장성있는 품질인증품부터 점진적으로 실시

□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품목별, 시장(지역)별, 품위별 가격 등 유통정보 수집 전파
- 지역별 특산물, 유기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에 대한 상품정보 제공
-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결과, 품질인증 농산물 등에 대한 정보제공

□ 농산물 유통정책 추진에 소비자참여 확대

- 농산물 유통·수급·가격·품질관리 등 주요시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과정 에 소비자단체 참여 및 의견수렴 확대
 - 도매시장제도개선 심의회, 시장관리위원회에 소비자대표 참여 의무화
- 소비자·농업인·유통인·정부가 참여하는 「농·소·상·정」 유통협약 활성화
 - 저품위 농산물 유통억제, 적정가격 유지를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 소비자의 농사현장 방문기회 확대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확산

2. 공영도매시장 개혁

과제4 거래제도 및 관리·운영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공영도매시장에서는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상장경매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시장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인 제도운용으로 당초의 제도도입 목적달성이 미흡하고 부작용이 발생
 - 대도시 도매시장의 일부 품목 및 일부 지방 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가 제대로 안되어 기록상장과 담합경매가 이루어 지고 있어 제도보완 필요
- 도매시장 관련 관리업무(도매시장의 상인 인·허가 및 취소, 거래질서 유지, 시설물관리 등)와 운영업무(수탁판매, 대금결제 등)가 관리공사나 도매시장법인으로 이원화되어 유통비용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음
 - 중도매인이 사실상 특정법인에 종속된 도매법인별 독립된 시장기능 수행으로 경쟁체제 구축에 저해
 - 일원화를 위한 공공출자법인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없음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경쟁에 의한 도매시장의 경쟁력제고가 미흡
 -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공영도매시장에 입주하고 있으나 농민의 이익 대변에는 미흡하므로 농협 이외의 생산자조직도 도매시장내 유통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중앙정부의 전국적인 도매시장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 매년 도매시장 개설자·도매법인의 공정거래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나, 지정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없어 평가실효성에 한계

가.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다양성 인정

□ 거래제도의 다양화로 출하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경쟁촉진

- 도매시장거래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 경매제 원칙하에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성을 부여하자는 주장(제1안)과 거래제도를 전면 자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제2안)이 대립
- 그동안 전문가회의, 유통개혁위원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안 마련

— < 조정안 > —

□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현행의 경매제도 뿐만 아니라 도매상제도도 가능토록 허용하고 상장의 개념 재정립

- 현행 도매시장의 상장개념을 도매법인 위탁에서 도매시장 반입으로 변경하고, 현행의 상장경매품목은 경매품목, 상장예외품목은 수의매매품목으로 구분

□ 중앙도매시장은 경매를 원칙으로하되, 시장여건과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의매매품목을 대폭 확대

- 일부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설자가 거래제도를 자율선택하도록 허용
 - 특별시·광역시를 개설구역으로 하는 도매시장중 인구나 상권, 시장규모 등을 고려할 때 경매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 특별시·광역시 개설자가 2개이상의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한 경우, 권역별 기준가격 결정기능을 하는 1개시장 이외의 나머지 시장
- 다만, 동일시장내에서 동일품목에 대한 경매와 수의매매의 병행은 금지하되 수의매매품목의 경우 출하자가 원할 경우 경매도 허용

□ 지방도매시장은 경매제나 도매상제중 개설자가 자율선택

□ 다만, 도매상제도를 도입한 공영도매시장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대금의 안정적 정산을 위한 장치를 동시에 강구

※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당초(안)

제 1 안	제 2 안
<p>가. 중앙도매시장 : 경매를 원칙으로하되, 수의매매 품목 확대</p> <p>※ 중앙도매시장의 경우도 예외를 인정하여 개설자가 자율선택 하도록 허용</p> <p>i) 광역시 개설도매시장중 인구나 상권, 시장규모 등을 고려시 경매가 부적합할 경우</p> <p>ii) 개설자가 2개 이상의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한 경우, 권역별 기준가격결정 기능을 하는 1개시장이외의 나머지 시장</p> <p>나. 지방도매시장 : 경매제, 도매상제중 선택</p>	<p>○ 공영도매시장에서 경매와 병행하여 일정한 자격의 전문중도매법인의 경매 없는 수탁 또는 매취 판매 허용</p> <p>※ 전문중도매법인 : 동일품목을 취급하는 3인 이상 중도매인이 공동설립한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p>

□ 도매상제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

-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상 개념 도입
 - 생산자(또는 중간상인)부터 농산물을 매입하거나 수탁받아 중간도매상·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일정한 규모를 갖춘 법인화된 상인
- 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
 - 출하자의 송장 작성 및 도매상의 품목별 기준가격 고시 의무화
 - 도매상에 기장 의무를 부여하고 정기적인 보고 실시
 - 대금정산의 안정성을 위한 방안 강구(정산법인설립 등)
- 기장 의무나 보고 의무 태만시 제재방안 마련
 - 수탁판매시 수수료 상한 설정 및 별도비용 징수 금지
 - 의무위반시 다른 거래주체에 상응하는 벌칙조항 적용

□ 거래제도의 다양화에 맞게 도매시장 재분류

- **중앙도매시장** 특별시·광역시를 개설구역으로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를 건설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공영도매시장
- **지방도매시장** 위 시장이외의 도매시장을 지칭하되 공판장과 민영도매시장을 포함
 - 지방공영도매시장 : 국고지원 도청소재지 및 일반시 소재 공영도매시장(10개소)
 - 공판장 : 생산자단체 및 그 유통자회사,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사업장(90개소)
 - 민영도매시장 : 도매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신규로 허용하는 민간자본에 의한 도매시장과 기존의 일반법정도매시장 포함
 - 민간자본건설 도매시장 시설기준 별도 마련 및 거래제도 자유화

□ 시장여건,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의매매품목의 탄력적 운용

- 지방도매시장까지 수의매매품목을 확대하고 도매시장간 이동이 많은 품목도 수의매매제도 활용
 - 현 상장 예외품목 : 가락동도매시장 90개, 구리도매시장 61개
- 수의매매 품목에 대한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강구
 - 중도매인의 보증금 납부, 출하대금즉시결제, 추가 수수료부과 제한 등 농안법 준수여부 지도·감독 강화

나. 생산자조직의 도매시장 참여 확대

□ 공판장 개설 대상범위 확대 및 공판장의 자회사 전환

- 생산자조직과 생산자단체 자회사도 공판장 개설 허용
 - 현행 공판장 개설권자 : 농·수·축·임협 및 공익법인
- 운영 효율화를 위해 중앙회 직영 공판장을 자회사로 전환 추진
 - '98년중 농협의 가락·구리공판장 시범 전환

□ 생산자조직의 공영도매시장 참여 확대

- 도매상체제를 도입하는 경우, 생산자조직도 도매상으로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
- 도매시장내 생산자조직이 수의매매 품목을 직접 출하하여 분산시키는 직거래장소 제공

다. 도매시장 관리·운영 일원화 유도

□ 도매시장 관리·운영 일원화 시범도입 유도

- 건설중인 16개 도매시장 중심으로 관리·운영 일원화를 시범 도입하되, 유통전문기관에 위탁의사가 있는 도매시장부터 우선 추진

□ 관리·운영일원화 시장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 신설시장의 경우, 관리운영 일원화 시장에 대해서는 건설비 등에 우대 - 지방비 부담분을 농안기금에서 확대 지원
- 기존시장은 관리공사와 도매법인간 M&A를 유도하고, 일원화 도매시장에 출하촉진자금, 하역기계화 장비지원 및 도매시장평가시 우대 등

라. 전국 도매시장관리위원회 설치 및 도매시장 평가 강화

□ 도매시장 정책 및 제도를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상설 「심의기구」를 중앙 및 개설자별로 설치

- 농림부에 생산자·유통인·소비자·학계, 언론계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국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설치
 -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개선, 공영도매시장 평가결과 심의 등
 - 평가결과에 따른 도매법인 취소 등의 조치를 개설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마련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별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동 위원회에는 출하자대표, 유통인, 소비자대표, 학계전문가를 포함하되, 공익기관대표를 과반수이상 되게 구성·운영
 - 거래제도 선택, 수의매매품목 선정, 상장수수료·하역비 결정, 비포장·비파렛트 출하품 반입제한 등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 수의매매 품목지정을 위한 객관적인 출하자 의견수렴 방안 강구

□ 도매시장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도매시장 평가내용을 유통개혁방향에 맞게 개선
 - 현행 평가내용에 추가하여 하역기계화촉진, 규격출하품 우대, 관리·운영 일원화 노력, 구조조정 노력, 전자경매·선취경매 등을 반영
- 평가결과에 근거한 인센티브와 제재 강화로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우수도매법인 출하촉진자금 30% 가산, 부진법인 50% 감액
 - 일정횟수이상 부진평가 도매법인은 지정 취소, 지정기간 조정 등

과제 5 □ 공정거래질서 정착 및 유사시장의 체계적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 공영도매시장의 경매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아 경매 불신 상존

- 포장화가 미흡하고, 수집상출하가 많은 일부품목은 기록상장·형식경매상존
 - 소수 독과점 중도매인들이 수집상 등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직접수탁 또는 포전매매하여 소매상(중판)에게 판매
 - 서류상으로는 가상의 출하자를 내세워 상장경매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경매를 하더라도 담합으로 특정 중도매인에게 낙찰
- 실질적인 중도매인의 소속제 존속으로 중도매인의 경쟁체제 미흡
- 현 수지식 경매방식은 낙찰가격에 대한 불공정 시비 발생

□ 도매시장내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기능 미약

- 공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사무실 사용료를 면제하고, 점포 임대료도 최소화하는 점을 이용하여 불법전대 성행
 - 중도매인 사업실적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점포 분배로 경쟁체제 미흡
- 법령위반 도매법인, 중도매인, 경매사에 대한 개설자의 고발 및 행정처분이 개설자의 개선의지 부족으로 소극적
 - 관리공사체제의 경우 인허가업무,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등 공권력을 수반하는 업무를 관리공사가 수행하는데 한계

□ 농산물의 40~50%를 담당하는 유사시장의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농안법상 유사시장정비 규정도 사문화

가. 경매제도의 효율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 전자경매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현행 수지식 경매는 경매사의 담합경매, 저가낙찰 의혹 등 불공정 시비가 자주 발생(특히, 포장화가 미흡한 채소류)
- 이러한 수지식 경매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매방식을 단계적으로 전자경매로 전환
 - 등급규격화되어 있고, 거래 물량이 많은 과실류를 우선 실시하고 점차 대상품목 확대(현재 1개법인이 시범실시)
- 실시성과를 평가, 표준모델개발 보급 및 지방공영도매시장에도 도입 추진

□ 「선취매매」·「견본경매」의 실용화를 적극 유도하여 경매시간 단축, 물류비 절감 등 거래의 효율성 제고

- 선취거래는 현행 농안법상에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나 극히 제한적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운용되지 않고 있음
- 경매전 반출·경매후 가격결정을 하는 선취매매 제도를 조기 실용화
 - 현행 관련 제한 규정(예, 해당 품목반입량의 30%) 완화 및 대상 품목 확대
- 우수 출하주의 농산물을 중심으로 「견본 경매」의 시행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견본경매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안전장치도 제도화

□ 「경매사 공영제」와 「품목별 경매제」 시범도입

- 신설시장의 관리·운영일원화를 통해 경매사 공영제와 품목별 경매제 실현
- 기존 도매시장에서는 취급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에 대해 관리공사·관리사무소 또는 도매법인 주관의 「품목별 경매제」도입

나. 중도매인의 실질적인 소속제 해소 등 경쟁여건 조성

□ 중도매인의 실질적인 법인 소속제를 해소하는 방안 강구

- 시장여건에 따라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자율적인 정산회사 설립 추진
 - 농안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개설자 또는 관리공사의 출자 참여
- 거래보증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타법인·타시장 경매참여 확대

□ 도매시장내 중판 등을 매매참가인으로 참여시켜 시장내 경쟁여건 조성

다. 도매시장 불법행위 제재와 감독기능 강화

□ 불법행위에 대한 개설자의 관리·감독기능 강화

- 공권력 수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매시장관련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법무부와 협의)
 - 관리공사에 시장내 거래질서 단속권, 과징금 처분권 등 부여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 중도매인의 허가기간을 단축하여 개설자의 관리기능의 실효성을 제고(예:현행, 3년이상 10년이하→ 3년이상 5년이하)

□ 중도매인의 점포불법전대 일제 조사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일정기간을 정하여 불법임대·전대를 자진 신고토록하고 기간 경과후의 위반자는 점포사용 계약 해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
- 불법전대 억제를 위해 중도매인 점포사용료(시설사용료)를 현실화

□ 공영도매시장내에 「도매시장 불법행위 고발센터」 운영

- 공영도매시장별로 구성될 시장관리위원회에 상설고발센터를 설치
- 일정회수 이상의 불법행위시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상습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라. 유사시장을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하고, 책임관리제 도입

□ 유사시장의 실태조사 및 유형별 대책 수립

-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사시장의 유형, 거래규모, 거래형태 등을 조사
 - 조사대상 유사시장의 기준, 조사내용, 조사표 작성 등
-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할 대상과 유사시장으로 관리할 시장으로 유형화하여 대응
 - 건설중인 16개공영도매시장 건설계획에는 22개 주요유사시장 흡수계획

□ 공영도매시장 건설지역의 유사시장은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

- 2001년 까지 16개 공영도매시장 추가건설로 유사도매시장을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
 - 공영도매시장 : ('97) 18개소 → (2001) 34개소(중 16개소)
 - 주요유사시장 : ('97) 50개소 → (2001) 28개소(감 22개소)
- 공영도매시장 개장시 유사도매시장 흡수를 위한 개설자의 노력강화
 - 유사시장 종사자의 능력에 따라 도매법인 지정이나 중도매인으로 흡수
 - 유사시장의 교통 단속강화 및 과세행정 엄격 수행(국세청 협조)
- 도매상제를 도입하는 신설 도매시장은 유사시장의 도매상 우선 입주

□ 기타 유사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관리제 도입

- 시설물 개·보수 유도 및 소요자금 지원
- 품질관리, 위생검사, 원산지 표시 등 이행 점검
- 거래실적 조사, 유통정보의 수집·전파 등

과제6 도매시장 고비용구조 개선

— < 현황 및 문제점 > —

- **공영도매시장의 상장경매제도 의무화로 상장경매수수료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 상장수수료 : 가락시장 5%, 대전시장 6.5%, 기타 7%
 - 상장수수료의 용도(가락시장 예) : 도매시장 사용료 0.5%, 출하장려금 0.75%, 판매장려금 0.75%, 법인수입 3%
 - 상장수수료를 정율제로 징수함에 따라 공동출하나 대량출하 유도미흡
- **하역노조에 의한 하역작업의 독점성과 수작업에 의존하는 하역시스템으로 하역비용 증가(청과부류 연 216억원 추정)**
 - 하역비를 출하자가 부담하고 있어 도매법인이 하역비 절감에 소극적
 -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징수하여 하역노조에 전달
 - 파렛트 출하비율이 낮고, 공영도매시장 데크시설 미비, 지게차 보급 미흡으로 하역기계화 부진
- **공영도매시장의 시설 낙후, 교통혼잡 등으로 물류효율화 한계로 대대적인 시설 개보수 필요**
 - 공영도매시장이 도·소매 혼재, 하역기계화 및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크시설, 저온저장고 미비 등으로 물류비 증가 요인
 - 가락동도매시장은 적정취급량(4,680톤/일)의 1.7배를 거래(7,686톤/일)하고 시설 노후화로 보수비용 매년 증가
- **관리공사·관리사무소의 비대화, 도매법인·중도매인의 적정수 초과 등으로 구조조정 필요**

가. 도매시장 상장수수료를 단계별로 2%P 수준 인하

□ 도매법인 경영합리화, 시장사용료 인하, 일부 장려금 인하 등을 통한 상장수수료 1%P 이상 인하('98상반기)

○ 장려금폐지 등을 통해 추가인하 추진

※ 상장수수료 1%P 인하시 연 350억원의 출하자 부담경감

□ 도매시장상장수수료 징수방식개선 검토

○ 정액제와 정률제의 병행실시로 대량출하, 대량경매 유도

○ 비포장출하품, 포장품, 파렛트 출하품의 상장수수료 차별

나. 도매시장의 하역체계 개선

□ 하역비 부담주체를 출하자로부터 도매법인이나 도매상으로 전환 하여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하역기계화 촉진

○ 신설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하역회사가 하역업무 수행

○ 기존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하역비 부담을 추진하되, 상장수수료 인하와 연계 추진

□ 도매시장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게차·파렛트 등 하역기계화 장비 지원

○ 산지에서부터 파렛트단위 출하를 유도하고, 파렛트단위 공동출하시 하역비 면제

다. 출하자등록제 및 출하예약시스템 도입

□ 출하자 등록제 실시

○ 출하자는 단계적으로 공영도매시장에 등록하고, 도매시장에서는 출하자의 품목·지역별로 코드부여, 관리

○ 등록된 출하자를 대상으로 하여 출하예약제, 미등록수집상 단속 실시 등 도매시장 출하개선시책 추진

□ 출하예약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경락가격 유지

- 도매시장간 정보망구축으로 도매시장별 적정물량 직출하 유도
- 출하자의 송장작성이 정착되고, 일일 출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 출하자는 도매시장에 2~3일전 출하예약을 한후 출하하되, 예약출하를 이행하지 않는 출하자에게는 경매의 후순위 부여 등 불이익 제공

라. 도매시장 시설보완 및 가락시장 이전방안 검토

□ 34개 공영도매시장 건설은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되, 건설중인 도매시장 규모 축소 및 타 유통시설로 전환 유도

- 개설구역내 유사시장 및 공판장 흡수계획이 있어 도매시장 건설이 필요한 시장은 규모축소 유도
- 도매시장으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것이 예상되는 경우 물류센터 등으로 전환유도

□ 기존 공영도매시장의 도·소매분리, 하역기계화,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개보수 본격추진

- 기존 도매시장은 도·소매구역을 분리하고,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하역시설·저온저장고 등 시설보완('99년부터)
- 도매상제도를 도입하는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개조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

□ 가락동도매시장 주변지역의 교통, 환경문제 해소와 하역기계화·콜드체인시스템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개보수 또는 이전 필요

- 단기적으로 가락동 도매시장의 보수와 보완 등 시설물을 정비
- 장기적으로 현대화된 도매시장의 시설과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전 검토

마. 도매시장관련 조직과 유통종사자의 구조조정

□ 시장 관리공사·관리사무소의 전문화 및 효율화

- 인사제도개선, 보수상 우대 등으로 시장관리주체의 전문성 제고방안 강구
- 시장 관리주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력 및 조직 재정비
 - 청소 등 단순관리업무의 단계적인 민간위탁 추진
- 사용료 수익의 지나친 증대를 지양하고, 사용료 수익은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

□ 도매법인수 축소 등 법인의 구조조정 촉진

- 가락시장 4개이내, 광역시장 3개이내, 기타시장 2개이내(공판장포함).
 - 신규도매시장법인 지정시 적정수 지정유도
- 도매법인간의 M&A와 도매법인 평가를 통해 부진법인 지정 취소
- 임직원의 대폭 감축과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기능 강화

□ 중도매인 법인화 유도 및 일제정리

- 신설시장은 중도매인 법인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점포사용 면적도 우대
- 기존시장은 영세 중도매인의 통합, 법인화를 유도하고, 중도매인 결원시에도 신규허가는 억제
- 중도매인의 불법 점포전대를 근절하고 영업실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불법거래자, 일정거래실적 미달자 등에 대한 일제정리

□ 경매사의 불법행위 엄단 및 관리감독 강화

- 불법경매 발견시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확실히 시행하고 불공정, 불법경매 방지를 위한 자체개선안 마련

□ 하역노조 운영개선 및 하역체계 개선방안 강구

3. 산지유통 혁신과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 현황 및 문제점 >

- 산지유통의 핵심역할을 해야 할 농협이 경제사업의 위험부담, 노하우 부족, 농민과의 신뢰기반 미정착 등으로 산지유통 활동이 아직 미진
 - 최근 농협의 경제활동 강화로 공동출하 등의 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계약재배, 공동계산제 등 질적 내실화는 초보단계
 - 주요 수급불안정품목인 무, 배추, 마늘, 양파는 농협의 계약 재배 비율이 전체 생산량의 6% 수준에 불과
- 생산자의 조직화와 조직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생산자조직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산지 최일선 생산·출하조직인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이 지역별·품목별로 많이 조직되어 있으나 기능면에서 지역조합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상호 보완적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자율적인 생산·출하조절을 위해 「품목별 전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단순한 협의체 성격으로 운영됨에 따라 실질적인 생산·출하조정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음
- 산지유통시설이 확충되었으나 생산자와의 연계체제가 미흡하고, 판로확보의 애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 가중
 - 포장센타가 '97년까지 78개소가 건설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평균가동일수는 93일)
 - 산지가공공장('97년까지 1,349개소)은 규모의 영세성 및 판로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150개소 지정 취소
- 소비의 고급화추세에 비해 농산물의 안정성 및 품질관리 미흡

과제 7 생산자조직 중심의 산지유통 혁신

가. 농협이 산지유통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체제 구축

□ 산지단위농협 합병을 농산물 유통사업의 규모화·전문화 실현 기회로 활용

- 산지농협수 : ('97) 1,286개 → (2001) 800개 → (2004) 500개
 - 기존 전문조합의 광역화 및 신설전문조합의 운영 활성화
- 농협과 지역축협·임협 등과의 협조체제 강화로 경제사업의 효율성 제고
 - 이종조합간에 합병근거를 마련하여 소규모조합의 자율합병 유도

□ 유통관련사업 통합 및 주산지 대상 농협으로 집중 지원

- 각종 산지 유통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사업추진 주체를 농협으로 일원화하여 사업효과를 제고
 - 생산자단체 유통지원사업, 작목반육성사업,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을 산지 유통지원사업으로 통합하고 지원 주체를 농협으로 일원화
- 사업지원대상도 주산지중심, 전략품목에 집중지원하여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대상농협과 지원대상품목 축소
 - 시·군별 또는 조합별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유통관련 자금을 집중지원하고, 농협을 통한 공동출하 의무 부과

□ 생산자조직과 농협에 대한 유통사업 평가 강화로 차등지원

- 국립농산물검사소 주관하에 시·군별로 지역조합, 생산자조직 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생산자조직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공동규격출하·공동계산제 실시가 우수한 조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조직에는 자금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
- 정부, 농협, 산지조합장, 농민대표가 참여하는 중앙단위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협의 산지유통 실적을 평가
 - 산지유통활동이 부진한 농협에 대한 자금지원 축소 등 제재조치 강화

□ 「산지유통시범농협」을 선정, 집중 지원하여 산지 유통의 거점역할 수행

- 채소류 중심으로 공동출하·직거래 등 산지유통을 혁신하는 산지유통시범농협을 육성(150개소)
 - 공동출하 및 공동계산실적, 산지 유통기여 정도 등 종합평가
- 산지유통 시범농협에 대한 농산물유통시설과 운영자금을 중점지원
 - 포장센터, 하역기계 장비, 포장재 등 정부 지원자금과 농협중앙회의 각종 유통자금 우선 지원
- 시범 농협을 중심으로 공동규격출하·공동계산제 및 직거래 등 선진화된 산지유통 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전농협으로 확산
 - 산지유통 시범농협을 물류센터 전속출하조직으로 육성

□ 농협의 공동규격출하 활성화로 산지유통을 주도

- 중간상인의 포전매취와 가격등락이 심한 채소류의 농협 계약재배 확대
 - 주산지 중심으로 관내 생산량의 20~30% 계약재배하여, 공동출하
- 농협의 단순 순회 수집 기능을 공동출하·공동계산 체제로 발전
 - 농협의 농산물 수송차량을 시·군단위 통합운영으로 운송효율 극대화 추진
- 산지에서 공동출하할 수 있는 포장센터·미곡종합처리장등에 농협참여 확대
 - 산지유통시설을 소유한 농협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 우선 지원
- 농협중앙회에 산지 공동출하 지도 전담팀 구성·운영
 - 공동출하 모델 개발·보급, 회원조합, 작목반지도·교육담당
- 농협을 통한 직거래장터, 물류센터,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망 구축
 - 산지조합과 소비자조합과의 대량의 농산물 직거래

⇒ 농협의 공동출하비율을 현재 35%수준에서 선진국수준(70%)으로 제고

나. 우수 작목반을 육성하고 부실 작목반을 정비하여 내실화

□ 산지농협이 작목반을 중점관리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단계적으로 농협과 작목반을 전산망으로 연결

- 농협이 작목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작목반과 연계 체제 강화
- 전산화된 작목반을 중심으로 생산 및 출하정보의 수집 창구로 활용
- 공동출하등 활동 실적이 없는 작목반은 정비하고 소규모 작목반은 주산지 중심으로 규모화 유도
 - 농협내 작목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기준 이하의 작목반은 통합

□ 영농지도 요원을 시·군단위로 통합 운용하여 시·군 특화품목 중심의 전문지도 요원으로 활용

- 품종 및 재배기술 통일, 품질관리, 판매정보 제공 등의 지도를 통한 공동 생산·공동출하 체계 확립(1인 1품목 전문지도요원 확보)

다. 영농조합법인의 활동정도에 따라 차등 육성

□ 경쟁력있는 영농조합법인은 산지유통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지원을 강화

- 유통관련시설, 하역기계화 장비, 유통지원 자금 등 지원 확대
- 전문농협으로 가입을 허용토록하여 산지의 농산물 유통조직으로 육성
 - 운영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제를 도입하여 우수조직으로 유도

□ 소규모 영농조합법인과 사업활동이 미약한 조직은 농협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농협의 계열 조직으로 유도

- 산지농협이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를 지원하여 영농조합법인의 기능보완

□ 영농조합법인의 산지유통활동 추진실적을 정기평가 및 차등지원

라.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육성과 포전매매 감독 강화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및 수집상 참여 제도화

- 주산지별 우수작목반을 중심으로 품목별 시·군단위 작목반 연합체 결성
- 농협 시·군지부의 적극적인 협조
- 산지유통혁신 및 전국적인 출하조절·생산조정을 할 수 있는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으로 발전
- 농협·한농연·전농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수집상(14,000명 등록)의 산지유통에 대한 감독과 지원체제 강구
- 표준계약서 사용유도 및 계약재배 참여 허용

마. 농협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품목별생산자조직과의 연계 강화

□ 지역별 생산자조직 연합회를 결성하고 품종통일, 브랜드개발, 출하 조절 등 종합유통기능 수행

- 시·군별 농협을 중심으로 지역생산자조직과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직체제 구성과 운영
- 우수생산자조직에 대한 자금지원강화, 판로지원 등 실시
- 농안기금 용자지원 방식의 개선으로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원효과 거양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품목별생산자조직에 대하여 농협이 생산·유통 정보제공, 시설공동사용 및 세무·회계 등 경영관리 지도 강화

농협과 생산자조직간의 연계추진 사례

- ◇ 대상조직 : 강진군 원예작목 연합회
- ◇ 연합회 결성
 - 관내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이 농협을 중심으로 연합사업 추진
 - 농협, 군청, 지도소, 농검과 연계하여 추진
- ◇ 자체 공동브랜드 개발
 - 관내 생산 농산물의 상표를 청자골 강진으로 통일

과제8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대량의 규격농산물 출하

가.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주산지의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 확대

- 지역별 생산량, 주산단지 여부 등을 종합고려하여 건설목표를 조정하고, 지역별 포장센터 적정 배치계획을 수립
 - 포장센터 건설목표 확대 추진 : (기존) 160 → (조정) 220개소
- 포장센터건설 방식의 다양화로 활용도 제고
 - 대규모 포장센터 건설 촉진을 위해 생산자조직 연합출자 포장센터 건립을 유도하고, 사업비 지원 우대
 - 「공공소유·민간운영」의 포장센터 건설방식 도입('99년 2개소)
- 산지유통인 등 민간유통업체에게도 포장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민간유통업체에 의한 규격 농산물 출하 촉진
 - 보조(현행 50%)를 축소하는 대신 용자로 전환하여 책임경영의식 고취
 - 생산자조직과 민간유통업체의 지원조건 차별 배제로 경쟁여건 조성
 - 포장센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동식포장센터 시범 지원 검토

□ 포장센터 중심의 계열화 및 운영 활성화

- 포장센터 운영주체와 대형유통업체간의 계열화 체제 구축
 -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과 계약생산 확대로 연중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
 - 물류센터, 대형유통업체와의 지속적인 직거래체계 구축으로 판로의 안정화 도모
- 농산물 포장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우대
 - 포장센터 운영활성화자금 지원 확대, 포장재비, 브랜드 개발비 지원등
- 전문경영컨설팅제(농협, 유통공사) 도입을 통한 포장센터, 경영 및 기술지도 강화

□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소규모 포장센터로 전환

- 간이집하장의 건설확대를 지양하고 운영내실화 추진(3,290개소 완료)
- '98년부터 간이집하장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기설치한 간이집하장에 포장·선별기 등을 지원하여 소규모 포장센터로 육성
 - 농협 자체 건설 간이집하장도 시설개보수 지원대상에 포함
- 간이집하장의 운영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지역특성에 알맞는 활용방안 강구

나. 산지공판장 중심으로 산지경매 활성화

□ 산지 공판장의 신규건설 확대로 산지경매 확대

- 주산지 위주로 전문품목 취급 공판장 개설 확대 : (당초) 67개소→80개소
- 사용일수가 많은 산지의 개장 운영중인 경매식집하장(32개소)중 시설기준이 적합한 경매식 집하장을 공판장으로 전환
- 산지경매식집하장 경매에 참여하는 거래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도매 시장 중도매인 수준으로 인하(국세청 협의)

□ 산지공판장 운영활성화

- 산지공판장에 경매시설과 병행 선별·포장·저장시설 등도 지원하여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지유통시설로 육성
- 산지공판장과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체계 구축

□ 포전경매 및 산지 창고경매제 활성화

- 농가의 포전거래 비율이 높은 무·배추·양파·마늘 등 대상으로 실시
- 주산지 농협이나 공판장이 농가별로 판매시기와 판매규모를 신청받아 포전(창고)에서 판매농가 입회하에 경매실시
 - 산지농협이나 공판장이 거래인(수집상, 대형유통업체 등) 유치
- 경매참가자격, 경매방법, 대금정산방법 등을 제도화하여 확산유도

다. 가공업체 운영활성화

□ 산지 가공공장 건설 목표 축소 및 지원방식 개선

- 기존 가공공장의 경영내실화에 중점을 두되, 신규건설은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효과가 큰 특화품목의 주산지 위주로 선별지원
 - 당초 2,000개소 건설목표에서 1,500개소 수준으로 축소 조정 ('97까지: 1,349개소)
 - 성장 유망업체에 대해서는 공장 증설, 시설현대화 등 추가 지원
- 경영능력이 있는 자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99부터 건설자금의 보조를 중단하고 이를 저리융자로 전환
 - 보조지원율(융자) : ('97) 40(40) → ('98) 30(50) → ('99) 0%(70%)

□ 산지 가공업체 운영활성화 및 구조조정

- 지역내 동일·유사업종간 통폐합 등 가공산업 구조조정
 - 유사업종 통폐합을 위한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제 실시
- 기존업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경영자금 확대지원
- 경영 및 기술지원 강화, 우수업체 차등지원제 실시로 경쟁력 제고 유도
 - 경영·기술 지원(유통공사, 한식연 등)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및 업계의 R & D를 통한 신제품 등 개발촉진

□ 가공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 농·축·수협 등 직판장, 물류센터, 대형소매업체 등의 판매망 확충
- 대량의 주문직거래 촉진을 위해 전자상거래 체제 구축 지원
 - 가공공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EDI 시스템 구축 지원
 - 인터넷에 의한 가공제품 정보제공 및 홍보·판촉 강화
- 주문자생산방식(OEM), 반제품 가공 납품 등으로 유통판매 제휴
- 대형유통업체에 민속주 등과 같은 전통식품 판매코너 설치 유도
 - 전통주 도매업 면허신설, 통신판매 등 주세법령 개정 등 병행 추진

과제9 고품질 · 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안정성 조사 강화

□ 농산물의 안정성 조사를 위한 기반구축 및 조사 확대

- 안전성조사 시설 및 장비확충
- 안전성 조사를 현재 58개품목에서 주요 농산물 120개품목으로 확대하고, 조사지역도 공영도매시장에서 전도매시장으로 확대
- 속성검사방법 도입 및 토양 · 수질조사 강화
 - 공영도매시장에 속성검사기를 도입하여, 간이검사 실시
 - 토양 및 수질오염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활용

□ 생산자 중심의 산지 안전성조사 체제 구축

- 산지농협, 집하장, 포장센터 등에서 안전성조사 강화
- 산지에서 속성검사에 의한 사전 검사후 부적합품 발생시 국립 농산물 검사소에 정밀검사 의뢰
 - 생산자단체의 자체 간이안정성조사 강화
-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안전성 모니터링제 도입

□ 농산물 등에 대한 품위 검정제도 도입

- 수출농산물 등에 대해 소유자가 희망하여 신청할 경우 농산물의 품위, 안전성 등에 대한 검정을 실시
 - 농산물의 당도, 색상, 크기 등 품위와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잔류여부 등 조사
- 검정의뢰품목에 대하여는 조사결과를 표시한 검정서 발급

□ 농산물 안정성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강화

- 조사결과 안정성 기준위반 농산물에 대하여는 폐기, 용도전환, 출하 연기 토록 조치

나. 품질인증 농산물 관리강화

□ 고품질 농산물 및 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확대

- 전국적인 명품 및 지역특산물을 지속적으로 발굴,
 - 현재 사과 등 85개 품목에서 주요농산물 120개 품목으로 확대
- 생산조건, 재배지·재배용수 등 적정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재배 전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품질인증제도 단계적 도입

- 품질인증농가 협의체를 결성, 자율적인 품질관리 유도
- 농가단위 품질인증에서 생산자조직 중심의 브랜드화 추진
- 일정시설과 조직을 갖춘 생산자단체에 자체생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업무를 위탁

□ 환경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 유기·무농약·저농약 농산물 등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제정
 - 생산자재의 사용기준, 품질 및 표시기준, 사후관리방안 등 규정
- 시판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강화, 품질기준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표시사용 금지

다. 농산물 품질관리체제 정비

□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제 도입 및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표시제 도입

-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국제적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제 도입
-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 보건안전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표시토록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

□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정

- 농산물안전성, 품질인증, 원산지표시, 지리적표시 근거마련

4. 농산물 물류 및 정보체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대량집하·분산의 특성을 갖고 있는 농산물 물류체계가 출하단위, 수송단위, 판매단위간의 표준화가 되지않아 물류비 과다

농산물 물류비(6조 2천 억원)						
수송비 (28%)	선별·포장비 (15%)	가공비 (14%)	하역비 (11%)	보관비 (11%)	감모 등 (15%)	관리비 (6%)

- 대량으로 유통되는 무, 배추, 수박 등의 비포장 출하와 포장출하품의 표준파렛트 적재효율이 낮아 쓰레기 발생과 물류비용 증가 요인
 - 산지에서부터 파렛트적재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농산물 수송차량 단위가 적으며, 파렛트 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수송의 효율성이 낮고, 기계화 하역 곤란
 - 포장센터, 도매시장 등 유통시설이 데크나 랙 설치 미비로 파렛트 출하에 의한 물류효율화 곤란
- 산지예냉, 냉장수송, 저온저장, 저온경매 등 콜드체인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유통과정에서 감모가 발생하고, 고품질 농산물 출하곤란
 - 예냉처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으로 예냉 농산물에 대한 가격차별화가 정착되지 않아 예냉처리의 경제성이 없음
-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통정보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농산물전자상거래(EDI/EC) 기반 미비
 - 산지와 소비지의 상거래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지원체계 미흡
 - 농림부문 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반요소의 표준화 및 기반시설의 미흡

과제10 효율적인 농산물물류체계 구축

가. 농산물 규격포장화로 물류개선 기반마련

□ 농산물 포장 및 등급 규격 정비

- 124개 농산물표준출하규격을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에 맞게 정비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포장규격 개발 확대
 - 농산물표준출하규격은 농산물 품종개량, 유통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시조정 보완(공산품 KS규격 : 5년)
- 농산물 등급규격을 크기 위주에서 품질, 특성, 소비자의 기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규격 설정과 보급확대
 - 출하량이 많고 품질상의 차이가 뚜렷한 사과, 배 등 품목부터 추진
 - 품목별 품질등급 규격집을 제작 보급
- 환경친화적이고 여러농산물의 포장, 수송 등이 가능한 플라스틱상자 보급 확대

□ 농산물의 규격포장화 및 브랜드화 유도

- 무·배추·파 등 포장출하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지속적인 포장화 추진
 - 물류센터,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유통부터 포장화 우선 추진
 - 골판지박스 포장, 플라스틱상자 및 매쉬파렛트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포장방법 강구
- 포장출하가 정착된 품목에 대한 포장재비 지원은 축소(40→12개)하고 비포장품에 대한 지원 위주로 개편
 - 도매시장의 쓰레기유발부담금과 유통발전기금(도매시장법인협회)을 포장화 추진 자금으로 확대 지원
 - 포장재비 지원 지방비 부담 완화
(국고 20%, 지방비 20% → 국고 30%, 지방비 10%)
- 농산물 고유브랜드 확대로 신용판매제도의 정착
 - 소규모 생산자조직별 브랜드를 광역단위 브랜드화 유도

□ 비포장 농산물의 공영도매시장 반입 제한 추진

- 도매시장의 포장품과 비포장 출하품의 차별강화로 포장품 출하유도
 - 포장품 우대조치 : 포장재비 지원, 하역료 징수, 쓰레기유발 부담금 부과, 경매순서 등에 대한 우대조치 실시
 - 비포장품 제재조치 : 쓰레기 유발부담금, 하역료 인상 및 시장내 다듬기 금지, 출하촉진자금 지원중단
- 단계적으로 공영도매시장내 비포장출하품의 반입제한 추진
 - 1단계로 월동배추·마늘, 2단계로 배추, 무, 파, 수박 등으로 확대
 - 도매시장여건, 유통종사자 의견, 산지출하자 의견을 종합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장기적으로 하역기계화와 연계, 비파렛트 출하농산물의 도매시장 반입 제한 검토

□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속박이를 근절하고 규격화 촉진

- 생산자조직의 자율검사체제 구축
 - 등급판정, 포장개선, 속박이 근절지도를 전담하는 농협의 농산물 품질관리사 제도 도입 확대
 - 규격미달품은 자체소비 또는 가공원료로 사용 유도
- 농산물 생산자 실명제 실시 및 속박이 출하자 명단 공개
 - 일정 횟수이상 적발시 도매시장 판매제한 실시
- 속박이 농산물의 반품교환제(Recall)의 단계적 도입

나. 일관수송 및 하역기계화 체계 구축

□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규격에 맞는 차량 지원

- 정부 및 농협 자체지원 차량은 광폭차량 구입 조건부로 지원
 - ※ '97.10.1 부터 중형트럭(5톤)의 광폭적재함 생산 의무화(건교부)
- 기존 수송차량은 산지유통 시범농협을 중심으로 보유차량 개조 유도
- 냉장차, 탑차도 파렛트 수송, 기계화 하역이 가능하도록 적재함 광폭화

□ 지게차, 파렛트 등 수송·하역기계화 장비 보급 확대

- 파렛트적재·하역기계화에 필요한 파렛트·지게차 등 하역장비 보급
 - 하역기계화장비 보급을 유통시설 개보수와 통합 지원하고 지원조건도 우대(용자 80% → 보조 50%, 용자 30%)
- 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을 포장재지원 뿐만 아니라 수송·하역기계화에도 지원
- 파렛트 출하품에 대한 하역료면제 및 도매시장 하역요율체계 조정으로 파렛트 적재출하 촉진
- 포장센터 및 도매시장 등의 지게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소형 지게차 운전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에서 제외토록 요건완화 협의(건교부)하고 지게차의 보험가입도 협의추진(재정부)

□ 농산물 파렛트화(Palletization) 추진 및 파렛트풀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파렛트 회수관리를 위하여 농협과 한국파렛트풀(주)와 연계 추진
 - 농협, 영농조합 등 생산자단체와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대형유통업체 등 유통시설간 종합연계망 구성
 - 농협조직을 파렛트 집배소로 활용함으로써 파렛트 공급회수의 원활화 도모
- 농산물 파렛트 풀 시범사업을 위한 이용료 지원대책 강구

□ 농산물 수송차량의 공차율 최소화로 수송효율제고

- 농산물 수송단위를 현행 5톤 위주에서 8톤이상으로 확대 공산품과 연계, 수송이 가능토록하여 수송효율 제고
- 화물운송정보시스템을 농산물 분야에도 활용
 - 건설교통부의 중앙전산센터('97.11완공)와 연계하여 농협차량을 지역별로 통합관리하는 방안 검토

다. ULS체계에 맞는 농산물 유통시설 건설 및 개보수

□ 정부지원 신규건설 유통시설은 ULS체계에 맞게 건설

- 농산물포장센터, 저온저장고 등과 같은 유통시설은 표준설계도 제작보급 확대
- 도매시장 하역기계화를 위한 데크시설, 저온저장고시설 설치 의무화
- 파렛트 등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방식 개선(음자 80%→보조 50%, 음자 30%)

□ 기존유통시설의 물류진단을 통한 시설개보수

- 기존 도매시장, 포장센터 등에 물류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파렛트적재·하역기계화 점검 및 활용도 제고 강구
-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전담팀을 구성, 물류진단을 실시하여 가장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으로 시설을 개조토록 유도
- 시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자금 우선지원

라. 농산물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시스템) 구축

□ 콜드체인시스템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확대

- 신규 유통시설 지원시 저온·예냉 시설과 저온수송차량의 지원을 포함하고, 기존시설에는 저온보관 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
- 산지 예냉 및 저온저장시설 표준모델 개발 보급
- 수확이후 부터 소비단계까지 일관된 표준모델 개발 및 운영
- 도매시장내의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 콜드체인농산물 표시제 도입

- 콜드체인시스템 조기 확산을 위하여 농산물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실현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저온수송 효과가 크고 소비자관심이 큰 채소류 중심으로 산지유통 시설과 농산물 물류센터간에 실시하여 문제점 발굴·개선 보완
- 품질차별화로 콜드체인 농산물 포장상자에 「예냉처리」표시를 품질인증제와 병행 추진하여 수취가격 제고

과제11 수요자 중심의 농산물 유통정보 개선

가. 수요자 위주의 농산물 유통정보 지원체계 강화

□ 농산물 출하전략 정보시스템 구축

- 유통정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시간(real time)대로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의 출하의사결정 지원
 - 가격위주의 단순정보에서 주요산지별 출하물량·가격 등 시황정보와 기상·관측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제공
 - 도매시장의 전자경매시스템과 연계하여 시황정보가 즉시 분석 제공되는 시스템을 농림수산정보센터에 구축
- 장기적으로 유통정보를 생산정보와 연계시켜 농산물 출하조절시스템 구축
 -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가 생산·유통정보를 이용하여 농산물 출하를 스스로 조절함으로써 생산자의 경영수익 증대 도모
 - 시설오아팻고추 참외를 대상으로 9개시군 200여 작목반, 지역농협, 산지공판장을 연결한 『시설채소 생산유통종합정보화시스템』 시범사업 운영중
 - '99년말까지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분석·보완하여 2000년부터 확대실시

□ 소비자를 위한 유통정보 제공

- 소비자들이 싼값의 고품질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지 대형 소매점 등의 농산물판매가격을 비교조사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
 -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주요농산물(25품목) 판매가격을 '98년 하반기부터 조사, 제공
- 일방적인 정보제공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유통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통정보상담실을 설치·운영

□ 농산물 출하정보 전산화를 위한 EDI 시스템 도입 확산

- 도매시장 및 물류센터와 산지 생산자단체, 포장센터간 EDI시스템 도입으로 유통거래의 활성화 촉진
 - 송품장, 정산서 등을 고속통신망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전자경매를 촉진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 산지에서 제공된 EDI 출하정보를 출하전략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생산자에게 신속히 정보 제공
- 농산물 EDI 시범사업 실시 및 농업부문 표준 EDI 제정
 - '98년 하반기에 농협물류센터와 산지포장센터간 EDI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0년부터 대상지역을 확대 실시
 - 시범사업의 평가를 통한 농업부문 표준 EDI 제정
- 보다 발전된 모델인 인터넷 EDI 실용화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 유통정보 조사분석·분산의 전문화

- 유통공사, 관리공사, 생산자단체, 농림수산정보센터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유통정보기능을 재조정하고, 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 유통정보의 생산·분석·가공 기능 전문화 : 생산자단체(산지유통정보), 관리공사(도매시장정보), 유통공사(소비자정보),
 - 농업관련 생산·유통·경영정보의 종합적인 수집·분산기능 강화 (농림수산정보센터)
- 유통정보의 조사·분석의 전문성 제고
 - 농산물 유통정보만 전담하는 조사원배치 및 농산물의 품질, 규격 등이 동일한 기준에서 조사될 수 있도록 교육·실습 강화
 - 유통정보의 인력을 전산전문가 위주에서 유통전문가 위주로 확보
- PC통신, 인터넷, 신문·잡지 등을 통한 정보분산 수단의 다양화

나. 유통정보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농산물 거래서식 및 상품코드 표준화

- 유통종사자, 업체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코드, 거래서식을 '98년중 표준화하여 유통정보화 기반 구축
 - 거래서식 : 송품장, 정산서, 세금계산서, 판매원표, 낙찰명세서 등
 - 코드 : 품목코드, 지역코드, 규격·등급코드 등
- ※ 농산물코드·거래서식 표준화 추진반을 구성 운영
- 기존 물류센터나 도매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래서식이나 상품코드를 감안하여 표준서식 및 코드 마련
- 농산물 표준 서식 및 코드의 보급 확대
 - 서식, 코드저장 CD-ROM 등 제작, 일정기간 무상 보급
 - 표준서식 및 코드사용자에 대한 유통자금 우선지원, 도매시장내 우대방안 마련

□ 농업전용통신망 구축

- 낙후된 농업·농촌지역정보화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 도시와 농촌지역의 정보화격차 축소
 - 도단위 10개 거점지역과 54개 접속관문국 연결, 현재의 통신속도를 고속화(9.6Kbps → 56Kbps이상)
- 농업인이 인터넷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관련 단체, 법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비용절감 및 통합정보체계를 강화
 - 통신시설 기반을 확충하여 농촌지역 주민 및 농업인이 인터넷 EDI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농업인과 농업관련기관·단체 이용자가 농업정보를 편리하게 수집·공유할 수 있는 체제 구축

5.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체제 확립

< 현황 및 문제점 >

- 가격진폭이 큰 채소류에 대한 다양한 가격안정대책이 추진되었으나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함
 - 농협중심으로 생산·출하약정제도, 채소계약재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농협의 소극적 참여와 농업인의 인식부족등으로 성과 미흡
 - 사후적인 정부수매 대책도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가격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불신 상존
 - WTO체제 출범, OECD가입으로 가격정책에 정부개입 한계

- 수급조절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농업관측제도가 미비하고, 생산조정과 연계되지 못함
 - 농업관측 및 유통예고, 유통정보 등 상황판단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분석 제공하는 농업관측체제 미정비
 - 농업관측에도 불구하고 생산조정과 연계되지 못함
 - 전국적인 농업관측, 생산조정, 출하조절 등 일관적인 수급조절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품목별 조직구축 미흡
 - 생산자조직이 자율적인 생산조정을 할 수 있는 자조금 조성 등 제도적장치 미비

- 단기대책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정책효과 미흡
 - 수급안정목적의 개별사업이 여러추진 주체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추진 되어 사업·정책간 연계부족
 - 기금 규모에 비해 가격안정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제기
 - 단계별 조치수단이 제도화·공식화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응급처치 방식으로 추진
 - 사전적 생산조정보다는 사후적 출하조정·정부비축등에 치중

가. 농산물의 적정생산과 가격안정 프로그램 운영

□ 부패·변질이 심한 채소류·우유 등의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

-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조직화 되어 있고, 주산지 생산비율이 높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우유, 감귤, 고랭지배추 등)
-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와 필요시 미국과 같은 농민투표 검토
- 저급농산물 유통금지 명령 등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관리가 쉬운 사업부터 추진하고, 재배면적 조정, 출하량조절 등 사업까지 확대
- 유통명령 대상 농산물 생산자·출하자의 전산관리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생산·출하조절기획단 설치 운용

-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명령 시행이 불가능한 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사업 추진을 위해 「생산·출하조절기획단」 설치·운영 - 중앙 및 주산지 시·군에 생산농업인·협동조합·자치단체·관련유통인 등으로 구성
- 파종기에 수요 및 재배전망 예측에 의한 파종면적 자율조정하고, 수확기에 과잉생산시 저급품 자율폐기와 출하조절 등 사업추진

□ 가격폭락시 시장 자동개입 시스템 구축

- 무·배추·마늘·양파 등 주요채소류의 도매시장 가격이 경영비의 80% 수준으로 3일이상 유지시 농가 또는 도매시장으로 부터 자동개입하여 수매 - 수매물량과 연계하여 유통명령하고 이행농가에 대해 우선 수매부여
- 저장성이 없는 수매물량은 고아원·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기증하거나 산지 폐기처분하고, 저장성이 있는 수매물량은 비축후 수급상황에 따라 수출 또는 단경기 시장판매

나. 채소계약재배 제도개선

□ 과거 다양한 채소류 가격안정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나 정착에 미흡한 점을 감안,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발전 시키는데 중점

- 계약재배 대상품목이 많고 계약재배 물량부족(전체생산량의 6%)으로 수급안정효과에는 부족
- 가격상승시 농민들의 계약파기 등 계약문화 미정착
 - 계약재배 대상품목 :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파, 당근
- 산지농협은 손실부담을 우려 사업에 소극적

□ 주산지 중심으로 계약재배규모 확대

- 농안기금 지원중 정부수매, 민간저장·가공업체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계약재배자금을 확대하여 계약재배 물량을 일정수준까지 확대
 - 계약재배자금 : ('98) 2,865억원(6%) → (2001) 4,500억원수준(10%)
- 주산지중심으로 20~30% 계약재배 실시가 가능하도록 주산지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재배자금 집중지원('97 지원조합 405개)

□ 사업조합의 「경영안정장치」를 마련하여 사업운영의 안정성 확보

- 사업 및 자금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조합별로 「손실보전계정」 설치관리
 - 사업주체의 손실 보전재원등으로 사용 제한
- 사업주체의 「손실보전계정」 적립금 일부를 중앙회에 설치된 「채소 수급조정자금」 계정에 「자조금」 재원으로 예치, 적립
 - 동 자금은 수급안정 관련 활성화자금으로 활용
- 가격안정대(현행 $\pm 20\%$)를 품목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

□ 농협이외의 영농조합법인·산지유통인의 참여 확대

- 주산지 우수영농조합법인 참여('97년 8개) 유도
 - 영농조합법인의 참여요건 완화
- 산지유통인도 품목별 주산단지에서 채소류 생산·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로서 참여 허용
 - 사업참여시는 사업수행능력, 자금능력, 지역여건등을 종합고려
 -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지원과 계약재배에 따른 의무 이행은 다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
- 가격 폭·등락시 가격안정을 위한 산지출하조절 적극 실시

□ 사업자의 전산관리 및 평가에 따른 차별화

- 사업주체에 대한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합은 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의욕 고취
 - 상습적으로 계약재배 이행실적이 낮거나 위약금 징수 등 사후관리가 부실한 조합은 자금회수 등 제재
- 계약재배농가('97년 36천호)를 전산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한 농가는 계약우선권을 부여하고 위약농가에 대하여는 제재강화
 - 일정기간(예 : 3년) 계속 참여한 농가부터 우선 계약권 부여 및 계약 미이행 농가는 일정기간(예 : 3년) 계약재배 대상농가에서 제외

□ 수집상의 포전매매에 대한 감독 강화

- 포전매매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수집상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계약서 내용 개정('98)
- 계약 미이행 수집상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 강화

다. 농업관측을 내실화하고 수급조정과 직접 연계

□ 정부와 생산자조직의 농업관측 기능 강화

- 정부의 농업관측조사에 있어 표본추출, 조사일정 등을 현실에 맞게 설계
 - 현행 주산단지 표본농가 조사에서 최근 재배면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 신뢰도 제고
 - 조사일정을 수요자가 필요한 시기 및 수급조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
 - 원격관측(Remote Sensing) 자료를 보완자료로 활용하여 정기관측 보완
- 생산자조직도 지역별 관측정보를 조사하여 생산·출하조정에 활용
 - 단협 또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지역별 재배의향·과종실적·작황, 생산예상량 재고·출하 등 생산·유통정보 수집, 분산체계 구축
- 수집상, 도매시장 유통인, 종자판매상 등을 농업관측에 참여시켜 정보수집처를 다양화하고 정보수집 보강

□ KREI 중심으로 관측정보 분석·분산기능 강화

- 유관기관에서 조사된 모든 관측정보를 KREI에서 종합하도록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등 관측의 전문성과 정확성 제고
 - KREI에 농업관측전담팀을 구성·운영, 수급 및 가격전망의 계량적 분석과 생산·출하방향까지 제시
 - 농업기상정보, 지역별 작황, 출하동향, 소비동향, 해외시장정보 등 사전예측적 기능을 갖는 정보를 가공·생산하여 제공
- 관측내용은 공중통신망 및 관측월보를 통해 신속하게 분산
 - 생산·출하·구매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발표시까지 대외비로 관리

□ 농업관측과 생산조정·출하조절사업의 연계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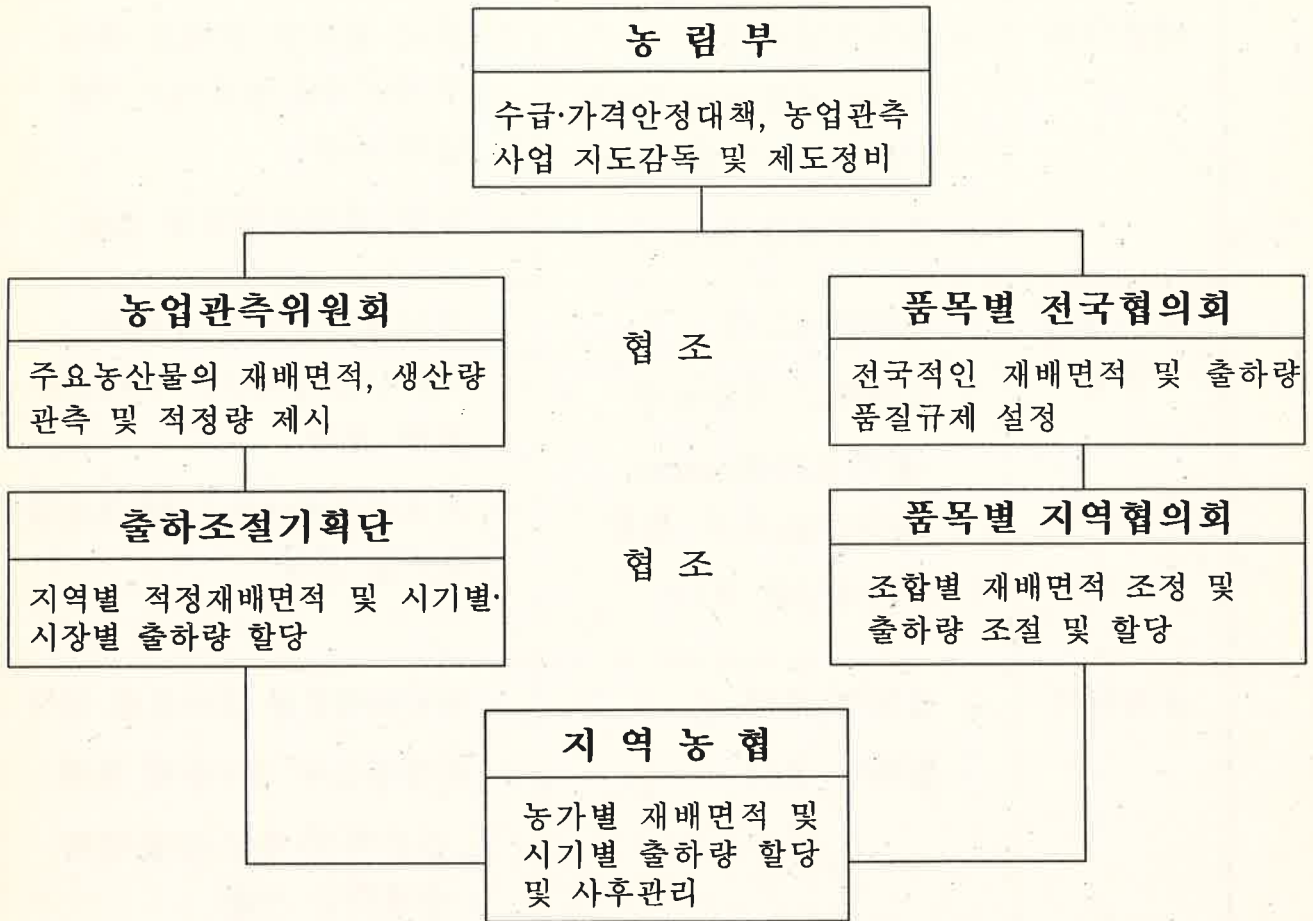
- 관측결과에 따라 품목별 전국조직에서 생산조정, 출하조절 실시

라. 생산조정·출하조절의 제도화

단 계	농업관측	대응조치
과종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의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관측체계이외에 작목반장 등을 이용 ○ 종자판매량 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품목별 조직을 통해 주산단지별·생산자조직별 면적 조정 ○ 농협 계약재배물량 조절
과종·생육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종면적조사 ○ 정기적인 작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관측(Remote Sensing)으로 보완 ○ 생산예상량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잉생산예상시 수확전 「산지폐기」나 타 작목으로 전환 유도 ○ 과소생산예상시 「예비모공급 등」 등 조치
출하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량 조사 ○ 출하량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재배물량 출하조절 실시 ○ 과잉생산시 정부수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저장·가공·수출업체 수매자금 지원 - 수확후 산지폐기 실시 ○ 출하예약제 실시로 단기적인 출하조절 ○ 농·소·상·정간 유통협약 ○ 생산자-소비자조직간 직거래 확대
비축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비축량 조사 ○ 수출입량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접근물량 도입시기, 물량조정 ○ 정부수매물량 방출 및 수출 조절 등

마. 농산물가격정책 추진체계 정비

□ 수급조정 및 출하조절체제 정비



□ 수급안정의 주체로서 전국 품목별 조직 육성

- 품목별 전국조직 강화 및 문호확대
 - 사업농협이외 작목반연합회, 법인 등 생산자조직의 사업참여 확대
 -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을 생산·출하조정, 공동계산의 핵심단위로 육성
- 채소수급안정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사업실시의 통합관리
 - 「채소수급안정사업단」을 농협중앙회에 설치하되 「품목별전국협의회」의 심의결정한 내용을 집행하는 기구로서 사업의 총괄추진
- 지역단위(읍·면→시·군) 작목반연합회등 생산자조직을 결성운영
 - 주산지의 품목별 우수작목반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연합조직체 육성
 - 사업집행의 애로 및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협의 개선

【 축산물 유통개선 】

1. 소·돼지

< 현황 및 문제점 >

-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가 부진하고, 시설현대화가 미흡하여 유통비용이 과다 소요
 - 산지유통은 주로 상인문전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가축시장 이용율은 19%에 불과(가축시장 143개소)
 - 유통관련 시설이 도매시장 8개소, 공판장 5개소, 도축장 108개소, 도계장 58개소 등으로 확충되었으나 시설낙후
 - 영세규모의 식육판매업소가 난립되어 있어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유통이 어려움

-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생축 수송·도축에 따른 물류비 증가와 공해발생 및 민원야기
 - 서울 3개 도매시장은 2000년까지 생축수송, 도축작업이 어려움
 - 냉동육, 지육 위주로 유통되고 있으며 냉장육·부분육유통을 위한 냉장 유통체제(cold chain system)가 미흡함

-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연동되지 않아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 소매단계에서 유통마진이 30~40%발생(적정이윤 15~20%)
 - 소매점의 판매원가중 임대료, 전기료등 부대비용이 35%를 점유, 가격담합행위도 성행(하방경직성)
 - 축협을 통한 축산물 직거래와 직판비중은 5%에 수준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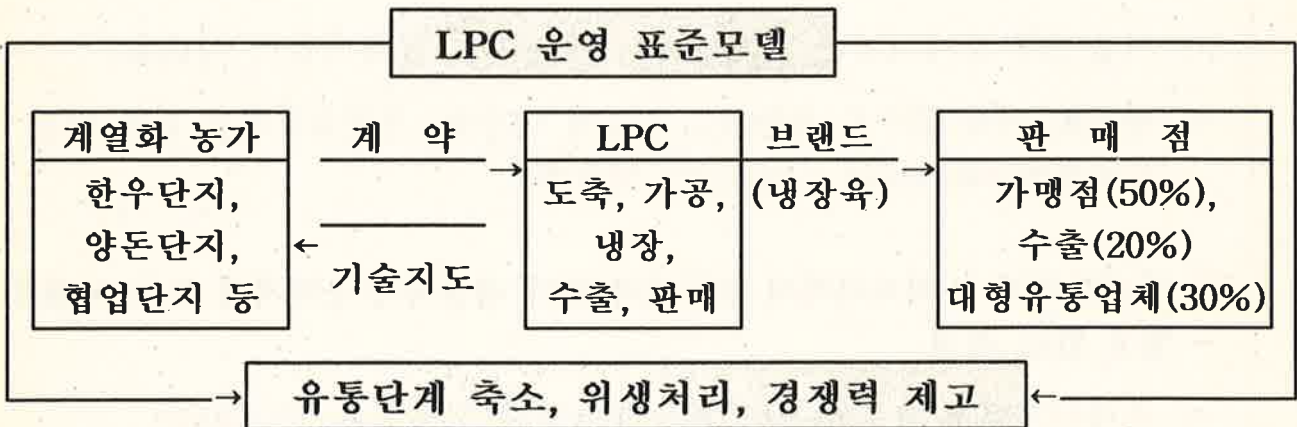
가. 축협과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산지유통혁신

□ 가축시장 기능개선 및 생산자조직의 산지유통 참여 확대

- 영세 가축시장의 통폐합 유도과 시장기능 활성화
 - 가축시장 정비 : ('97) 143 → (2004) 77개소
 - 대규모 가축시장(300두이상 출하)은 상설경매시장으로 육성
- 차량확보와 순회지도 및 시장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농·축협의 계통출하 확대(19 → 30%)
 - 축산물 수송 전용차량 보급(계통출하용, 계약생산농가용 등)
 - 계통출하 자금을 활용한 출하확대 유도

□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을 거점으로 냉장유통체계 구축

- 2001년까지 12개소를 건설하여 유통량의 30~40% 공급
 - '97년까지 2개소, '98년중 4개소, '99년 3개소 2000년 3개소 건설 추진
- 도축·가공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판매를 계열화하고 냉장육·부분육으로 브랜드화하여 유통
 - 생산계열화 : 소·돼지 농가와 계약생산, 기술지도
 - 가맹점설치 : 축산물종합처리장 1개소당 100개소 총 1,100개소 설치



□ 축산물 브랜드육성 및 품질인증제 실시

- 지역특성을 감안한 브랜드로 얼굴있는 상품을 생산 공급
 - 불량품에 대하여는 자진회수제(Recall System) 추진
- 브랜드화된 축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제를 실시하여 품질향상 유도

나. 축산물 도매시장 기능전환

- **현행 소비지 도축경매제를 산지도축 소비지 경매(부분육·지육) 체제로 전환**
 - 축협서울공판장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 시범결과에 따라 타 공판장(4개소) 및 민간도매시장(8개소)으로 확대
- **공판장에 권역별 집·배송센타를 설치하여 권역별 부분육 직거래 공급센타로 육성**
 - 수도권 : 서울공판장, 영남권 : 고령공판장, 김해공판장, 호남권 : 니주공판장
- **수도권지역의 시설이 현대화되고 규모화된 도축장을 도매시장으로 육성**
 - 서울지역 도매시장의 도축기능폐쇄에 따른 대체기능 수행
 - 축협중앙회 부천공판장을 건설하여 서울공판장의 도축장 기능이전
 - 민간도축장의 도매시장 개설 유도

다. 쇠고기 전문판매점 육성 및 구분판매제 조기정착

- **쇠고기의 종류별 전문판매점 설치로 시장차별화 유도**
 - 대형유통업체에 입주하는 형태로 한우고기, 육우고기 전문판매점을 확대하여 일괄쇼핑(One stop shopping) 기회 제공
 - 한우고기 : ('97까지) 548개소 → ('98) 593 → ('99) 700
 - 육우고기 : ('97) 23개소 → (2000까지) 100
 - 농협, 수협판매점에 한우·육우 전문판매점 동시 입점 추진
- **식육구분 판매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 구축**
 -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쇠고기 품종별 구분 판매
 - 식육의 부위별 구분 : 쇠고기 10개 부위, 돼지고기 7개 부위
 - 쇠고기 등급별 구분 : 1⁺,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
 - 쇠고기 품종별 구분 : 한우고기, 육우고기, 젓소고기
 -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를 서울 및 광역시 이외에 도청소재지와 중도시 까지 확대('99. 7. 1)
- **수퍼·편의점·식당의 식육판매 취급 지원**

라. 축산물 가공업무의 농림부 일원화에 따른 일관된 위생관리

□ 육류유통단계별 위생적 처리공정 확립

- 도축·가공·포장·운송·판매단계별 냉장육 처리기술 개발
 - 적정시설 및 포장·저장기간별 관리조건 확립
- 식육처리공정단계별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도입(HACCP)에 따른 관리기술 확립

□ 보관·운송단계의 위생관리

- 수입육 및 국내산 육류를 비축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에 대한 위생 시설기준 및 운용기준마련 시행
 - 시설, 위생관리 부문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실시
- 지육운반차량은 식육운반업허가와 위생검사를 필한 차량 이용

□ 소매단계 위생관리 강화

- 식육판매업 종사자에 대한 위생관리교육 강화
- 식육판매업소의 냉장·냉동시설, 쇼케이스설치 권장기준 마련 등
- 도축이후 소비까지의 합리적인 저장온도 등을 설정하여 유통중 오염 및 부패에 따른 위생문제 발생 방지

마. 개방화에 맞는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 소 수매제도 개선 추진

- 정가수매를 시가수매로 전환하여 구조조정 촉진
-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와 연계하여 정부 수매제 개선

□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

-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로 쇠고기의 30%이상 국내 자급기반 마련
 - 송아지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지원
- 시범사업('98-'99) 성과를 분석하여 실시여부 결정

2. 닭 · 계란

< 현황 및 문제점 >

□ 생산자조직과 양계산물 전문축협 기능이 미흡하여 중간상인이 유통의 주도권 행사

- 육계생산량의 67%는 수집반출상, 30%는 계열업체, 나머지 3%는 군납
- 계란의 83%는 수집반출상, 15%는 축협, 나머지 2%는 군납

□ 양계산물은 도매시장이 없어 도매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냉장유통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고품질유지나 위생관리에 어려움

- 도계장(58개소)이 영세하고, 가동율이 낮으며 양계산물 전용판매장이 없음

□ 양계전문조합을 지역별로 설립하여 양계산물의 유통 전담

- 양계단지 등 집단양계농가 지역에 설립 유도

□ 육계의 계열화 사업을 통한 계약 생산체계 구축

- 육계 유통량의 50% 수준을 계열업체에서 생산 공급
 - 계열업체 : ('97) 17개소 → (2004) 25
- 계열업체의 가맹점 등을 통한 전용판매점 설치

□ 농·축협 출하조직을 통해 계란을 수집·선별·등급·포장(Grading & Packing) 비축하는 계란집하장 시설 확대

- 산란계 40~50만수 기준(1일 30만개 처리)으로 50개소를 설치 하여 계란유통의 40~50% 처리
 - 계란집하장 설치자금과 경영자금의 지원을 통한 운영개선
- 대량수요처와 직거래유통체계 확립

□ 양계산물의 도매가격 형성기능 수행을 위한 공판장 건설

- 수도권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지역별로 확대
 - 축협서울공판장 시설을 활용한 도매시장 개설 추진

3. 우 유

< 현황 및 문제점 >

- 개별유업체별로 점유하고 검사함에 따라 비용이 과다발생하고, 검사에 대한 불신 상존
 - 원유부족시 점유선 확보를 위한 업체간 웃돈거래·점유분쟁 등 발생
- 시장개방에 맞는 우유의 수급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소비부진에 따른 분유체화 등으로 낙농업계 어려움 가중
 - 시장개방으로 저장성있는 유가공품은 대부분 수입제품으로 대체 되고 국내에서는 저장성이 없는 신선우유위주로 생산
 - 국내 수급체계가 각 유업체별로 이루어져 생산조절이 어려움
- 영세우유대리점(15천개소)이 유통량의 80%이상을 점유하여 소매 단계의 유통마진이 과다발생
 - 대리점, 보급소 및 가정배달 위주의 판매에 따른 중간비용 과다로 시유 가격이 높아 우유소비감소 요인이 됨

가. 점유·검사의 일원화 및 품질관리 강화

- 원유수집을 지역별로 일원화하여 비용절감 및 품질개선 촉진
 - 중복집유에 따른 분쟁방지와 집유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제고
 - 집유를 지역축협 또는 낙협으로 일원화
 - 원유는 생산농가에서 유가공공장으로 직송
- 원유검사의 공영화로 생산자와 소비자 신뢰 회복
 -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생산농민의 불만 해소
 - 원유검사는 제 3기관인 사·도(가축위생시험소) 에서 실시
 - 원유검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여 우유 소비확대에 기여

나. 시유·유제품의 소매유통구조개선

□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비용 절감 및 신선도 유지

- 대형 유통업체와 유업체간 OEM 방식에 의한 제품생산·판매확산 유도
 - 유통비용(대리점 미경유 및 광고비)절감으로 소비자에게 저가(약 25%)공급
(예 : 축협중앙회 ↔ 농협유통, 삼양식품 ↔ E마트)
-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가정배달 위주에서 슈퍼체인 등에 직공급 체계 유도
- 포장단위를 점진적으로 중대형화(200ml→500~1,000ml)

□ 유가공조합의 시유처리 및 판매능력 확충으로 가격견제기능 수행

- 조합과 조합간 OEM 방식에 의한 생산, 판매체계 도입
- 축협 생산우유의 공동 브랜드사용에 의한 신뢰도 제고

다. 개방화에 맞게 가격관리제도 개선

□ 낙농진흥회를 설립하여 민간자율로 수급 및 가격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

- 업계공동의 소비수요확충, 생산조절 등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정부가 결정하는 원유가격 체계를 시장상황이나 품질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등화하는 자율결정 체계로 전환

- 계절별·용도별·위생등급별 가격차등제 추진

IV. 지원체계 정비

1. 유통지원 조직 기능 강화

< 농림부 >

- 농업관측, 유통정보, 물류 등 유통정책국의 유통기획기능 강화
 - 산지유통과 유통정보 담당 전문인력의 확충
- 상설 도매시장제도개선 심의회 설치
- 소비자정책이나 품질관리 전담부서 설치

< 지방자치단체 >

- 농업관련 행정조직의 유통기능 강화
- 공영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 관리·감독 관련공무원의 전문화
- 관리공사의 자율경영권 확대 및 단속권 부여

< 농수산물유통공사 >

- 확충된 유통시설의 컨설팅업무와 유통사업 평가업무 강화
- 거시적인 유통정책 수립이나 효과분석을 위한 유통마진, 물류비조사 등 실태조사기능 강화
-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유통정보 및 전자상거래 기능 강화

< 생산자단체 >

- 생산자단체의 산지유통기능 강화
-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는 품목별 전국협의회 사무국으로 개편, 전국적인 농업관측, 수급조절, 수매 등 일관적인 수급안정대책 추진 지원
- 지역조합은 경제권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전문조합을 육성하여 유통기능 강화

2. 유통개혁 투자의 대폭 확대

□ 타 분야 농림예산을 삭감하여 유통분야에 집중투입

- 공공유통사업 투자를 현 수준보다 30% 증액(국고기준, 연평균)
 - ('97~'98) 3천억원 → ('99~2002) 4천억원 이상
- 주요 유통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도매시장 : 50%(광역시 30%) → 70(광역시 50)
 - 하역기계화 : 0%(용자 80%) → 50(용자 30)
- 생산자단체와 민간기업간 지원조건 격차해소(쌀종합처리장, 물류센터 등)

□ 「공공소유·민간운영」 방식의 유통시설 확대

- 지방자치단체는 부지를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건설을 지원하며, 운영은 농·축·임협 또는 전문유통업체가 맡는 체제 도입
- 물류센터·포장센터·직거래망 등에 적용하고, 운영자금 지원

□ 농안기금은 생산자조직의 수급안정 및 유통시설의 운영자금으로 집중 지원

- 정부수매, 저장·가공업체의 지원을 축소하고, 생산자조직의 가격안정사업 위주로 지원
- 생산자나 생산자조직관련 농안사업자금은 통폐합하여 운영
 - 작목반 육성, 회원조합 육성, 전국생산자조직 육성과 채소계약재배 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 추진
 - 품목별 전국조직이 자율적·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전국단위로 당해품목을 책임지고 사업을 수행
- 우수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단체에 가격안정을 위한 장기저리자금 융자

3. 관련법령 정비

□ 농안법 개정

-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개념 재정립(제2조)
 - 상장개념 재정립, 도매상개념 도입 등
- 거래방식 다양화, 매매방법(제29조)
- 도매법인지정, 중도매업의 허가(제17조, 제23조)
- 농산물직거래지원규정 보완(제57조의3)
- 수급조정위원회, 자조금제도 규정 신설 등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품질관리 부문을 분리하여 품질관리법 제정
- 농산물 안전성조사, 품질인증, 원산지표시, 지리적 표시 등 근거마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

-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농산물 직거래 지원근거 마련
- 관계부처와 협의, 법제정 추진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 도매시장 관련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 개발제한 구역내 물류센타 및 대형직판장 설치 허용

4. 유통종사자의 유통교육 강화

< 유통인 >

- 도매시장법인 : 농수산물 집하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형식적인 기록 상장을 배제하고 출하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판매하려는 노력
 - 경매사 : 공영도매시장 운영의 핵심주체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매를 통해 도매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
- 중도매인 : 담합경매, 점포불법전대 등 불법 행위를 지양하고 정정당한 경매로 적정마진을 확보하려는 노력
- 하역인 : 하역은 독점적인 권리가 아닌 서비스사업으로 인식하여 하역기계화 및 서비스개선을 통한 하역비 절감 노력
- 수집상 : 포전거래의 투명성제고 및 실명출하 노력

< 생산자단체 >

-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토록 하고, 농산물판매는 생산자단체가 책임지고 추진하여 농업인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
- 신용사업 위주에서 농산물 유통에 적극 참여하여 생산자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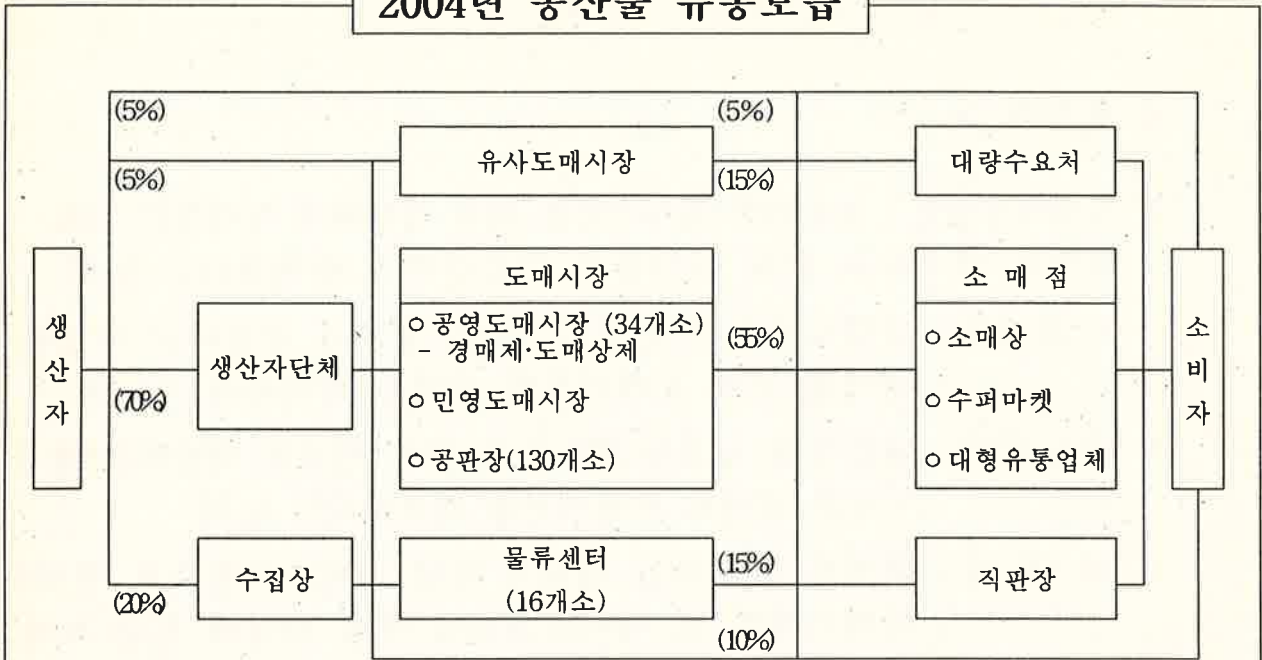
< 농업인 >

- 유통개선, 가격불안을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의식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유통개선, 가격안정을 꾀하려는 노력
- 숙박이근절, 공동출하, 공동계산으로 신용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정보화 능력함양으로 정보화시대의 생존능력 배양

< 소비자 >

- 농산물 유통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유통업체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정 노력과 직거래 참여 확대

2004년 농산물 유통모습



- ◇ 산지생산자조직이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계약재배된 농산물을 규격화, 브랜드화하여 대량으로 공동출하함에 따라 생산자의 시장교섭력이 강화되고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비 절감기반 마련
- ◇ 주요거점지역에 34개 공영도매시장, 16개 물류센터가 개장되고, 유사도매시장이 제도권으로 흡수될 뿐만아니라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의 탄력적 운영에 따라 출하자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경쟁에 의한 공정거래질서가 정착
- ◇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의 다양한 직거래체제가 구축되고, 생산자단체의 소비자 직판기능이 강화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농산물 구입
- ◇ 산지에서부터 소비지시장까지 파렛트에 의해 수송, 지게차에 의해 하역되고 파렛트별로 경매, 소비지 대형유통매장까지 운반된후 진열·판매되는 일관체제와 냉장유통체제가 구축됨으로써 물류비용을 30% 수준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 공급

농산물 유통비용 6조원 절감

농축산물 유통개혁 지표

	단 위	'97	2001	2004	비 고
<산지유통>					
○ 생산자단체 공동출하 비율 (산지유통시범농협)	% (개소)	35 (30)	50 (150)	70 (150)	농 협
○ 포장센타 출하 비율 (농산물포장센타) (소규모포장센타)	% (개소) (“)	8 (78) (269)	15 (160) (1,000)	30 (220) (1,000)	간이집하장전환
○ 미곡종합처리장 처리비율 (RPC)	% (개소)	20 (235)	30 (350)	40 (400)	
○ 축산물종합처리장 처리비율 (LPC)	% (개소)	- (-)	25 (10)	30 (12)	
○ 가축시장 출하율 (가축시장)	% (개소)	19 (143)	20 (93)	20 (77)	일반45 대형32개소
<도매유통>					
○ 공영도매시장 경유율 (공영도매시장) (소비지공판장) (법정도매시장)	% (개소) (“) (“)	45 (17) (31) (16)	55 (34) (48) (6)	55 (34) (48) (6)	청과기준
○ 물류센타 경유율 (물류센타)	% (개소)	- (-)	13 (12)	15 (16)	광의직거래
○ 유사시장 경유율 (주요유사시장)	% (개소)	48 (50)	20 (28)	15 (28)	
<소매유통>					
○ 직거래 비중	%	7	12	15	협의직거래
<물 류>					
○ 농산물 유통량	만톤	3,500	3,850	4,080	농·축산물
○ 유통비용	조	19.3	16.0	12.8	△34%절감
○ 산물출하채소포장출하 비율	%	10	50	90	그물망 포함
○ 파렛트적재 출하비율	%	-	30	70	
○ 하역기계화 비율	%	-	30	70	

사업별 주관 및 협조부서

사업별 주관 및 협조부서

코드번호	사업내용 및 세부과제	총괄	주관	협조
①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1 - 가	유형별 특성에 맞는 농산물직거래	시장과	-	-
1 - 가 - 1	생산자단체-소비자(소비자조직)직거래 장터 확대	-	시장과	농·축협
1 - 가 - 2	생산자단체의 소비지 직판기능 효율화	-	시장과	농·축협
1 - 가 - 3	산지 생산자조직-대형유통업체· 실수요업체 직거래 기반 구축	-	시장과	유통 정책과
1 - 가 - 4	통신판매·택배·전자직거래 등 무점포 방식의 직거래 추진	-	시장과	경영유통 정보과
1 - 나	직거래 제도화 지원체제 구축	시장과	-	-
1 - 나 - 1	중앙 및 지방정부, 생산자단체의 협조체제 강화	-	시장과	지자체 농·축협
1 - 나 - 2	직거래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부여	-	시장과	투자 심사과, 지자체 재경부
1 - 나 -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직거래 규정 제정	-	시장과	-
②	물류센타 조기 확충으로 새로운 직거래망 형성			
2 - 가	물류센타 조기 확충	시장과	-	-
2 - 가 - 1	2001년까지 12개소 물류센타 건설	-	시장과	예산청, 지자체
2 - 가 - 2	민간등의 물류센타 참여 확대유도	-	시장과	예산청
2 - 나	유형별로 구분 운영활성화	시장과	-	-
2 - 나 - 1	지역여건과 사업체 특성에 맞게 기능 및 운영 방식 다양화	-	시장과	-
2 - 나 - 2	산지포장센타, 소비자유통업체와 거래선 확보	-	시장과	-

코드번호	사업내용 및 세부과제	총괄	주관	협조
2 - 나 - 3	산지 포장센터와 대형유통업체간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	시장과	농협, 경영유통정보과
[3]	소매단계의 유통마진 절감 및 소비자 정책 강화			
3 - 가	소매단계 유통마진 절감으로 소비자 부담 경감	유통정책과	-	-
3 - 가 - 1	생산자단체의 일반소매업체 견제 역할 제고	-	유통정책과	농·축협
3 - 가 - 2	유통업체와 물류센터, 도매시장과의 직배송체계 구축	-	시장과	지자체, 농협
3 - 가 - 3	유통업체의 시설현대화 및 임대료 인하 방안 강구	-	유통정책과	산자부·건교부
3 - 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	유통관리과	-	
3 - 나 - 1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감시강화	-	유통관리과	농검, 유통공사
3 - 나 - 2	농산물 반품교환제 도입으로 소비자 보호	-	유통관리과	농협
3 - 나 - 3	소비자의 농산물 유통정책 참여 확대	-	유통관리과	시장과
[4]	도매시장 거래제도 및 관리·운영 개선			
4 - 가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탄력적 운용	시장과	-	-
4 - 가 - 1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다양화로 출하자 선택폭 확대	-	시장과	지자체
4 - 가 - 2	도매상제 도입에 따른 운영 방안 마련	-	시장과	지자체
4 - 가 - 3	도매시장별 여건과 품목 특성을 감안하여 수의매매 품목의 탄력적 운용	-	시장과	지자체

코드번호	사업내용 및 세부과제	총괄	주관	협조
4 - 나	생산자조직의 도매시장 참여확대	시장과	-	-
4 - 나 - 1	공판장 개설 대상범위 확대 및 공판장 자회사 전환	-	시장과	농·축협
4 - 나 - 2	생산자조직의 공영도매시장 참여 확대	-	시장과	생산자 단 체
4 - 다	전국 도매시장관리위원회설치 및 도매시장 평가 강화	시장과	-	-
4 - 다 - 1	도매시장 정책 및 제도를 계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기 위한「심의회」를 중앙 및 개설자별로 설치	-	시장과	지자체
4 - 다 - 2	도매시장 평가제의 실효성 제고	-	시장과	유통공사
⑤	공정거래질서 정착 및 유사시장의 체계적 관리			
5 - 가	경매제도의 효율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시장과	-	-
5 - 가 - 1	전자경매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시장과	경영유통 정보과, 법인협회
5 - 가 - 2	「선취매매」·「견본경매」의 실용화	-	시장과	지자체
5 - 가 - 3	「경매사 공영제」와 「품목별 경매제」 도입	-	시장과	지자체, 법인협회
5 - 나	중도매인의 경쟁여건 조성	시장과	-	-
5 - 나 - 1	중도매인의 실질적인 법인 소속제 해소	-	시장과	지자체
5 - 나 - 2	도매시장내 중판을 매매참가인으로 참여	-	시장과	지자체
5 - 다	도매시장 불법행위 제재와 감독 기능 강화	시장과	-	-
5 - 다 - 1	도매시장내 불법행위에 대한 개설자의 관리·감독기능 강화	-	시장과	지자체

코드번호	사업내용 및 세부과제	총괄	주관	협조
5 - 다 - 2	중도매인 점포 불법전대 일제조사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시장과	지자체
5 - 다 - 3	『도매시장 불법행위 고발센터』 운영	-	시장과	지자체
5 - 라	유사시장 정비	시장과	-	-
5 - 라 - 1	유사시장의 공영도매시장으로의 흡수 방안 강구	-	시장과	지자체
5 - 라 - 2	지방자치단체 책임관리제 도입	-	시장과	지자체
[6]	고비용구조 개선			
6 - 가	상장수수료 인하 및 하역비 절감	시장과	-	-
6 - 가 - 1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인하	-	시장과	지자체
6 - 가 - 2	상장수수료 징수 방식 개선	-	시장과	지자체
6 - 가 - 3	하역비 부담주체를 출하자로부터 도매법인이나 도매상으로 전환	-	시장과	지자체
6 - 가 - 4	지게차·파렛트 등 하역기계화 장비지원	-	유통정책과	지자체, 법인협회
6 - 나	도매시장 관리·운영 일원화유도	시장과	-	-
6 - 나 - 1	도매시장관리·운영 일원화 시범 및 우대방안 강구	-	시장과	지자체
6 - 다	출하자등록제 및 출하예약시스템 도입	시장과	-	-
6 - 다 - 1	출하자 등록제 실시	-	시장과	지자체
6 - 다 - 2	출하예약 시스템 도입	-	시장과	지자체
6 - 라	도매시장 시설보완	시장과	-	-
6 - 라 - 1	공영도매시장의 건설규모조정, 시설개보수, 타시설로 전환 등	-	시장과	지자체
6 - 라 - 2	가락시장 시설개보수 또는 이전방안	-	시장과	서울시

코드번호	사업내용 및 세부과제	총 관	주 관	협 조
6 - 마	도매시장 구조조정	시장과	-	-
6 - 마 - 1	시장관리공사·관리사무소의 전문화 및 효율화	-	시장과	지자체
6 - 마 - 2	도매법인수 축소 등 법인의 구조조정	-	시장과	지자체
6 - 마 - 3	중도매인 법인화 유도 및 일제 정리	-	시장과	지자체
6 - 마 - 4	경매사 부조리 근절 방안 강구	-	시장과	지자체
[7]	생산자조직 중심의 산지유통 혁신			
7 - 가	농협이 산지유통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체제 구축	유통정책과	-	-
7 - 가 - 1	산지농협의 합병 및 정비	-	농업 금융과	농협
7 - 가 - 2	산지유통 시범농협을 육성하여 선진 유통모델 확산	-	유통 정책과	농협
7 - 가 - 3	유통관련사업 통폐합 및 생산자조직 평가 강화	-	유통 관리과	농협
7 - 가 - 4	농협의 공동출하비율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농협	-
7 - 나	작목반·영농조합법인등의 내실화 및 농협과 협조체제 강화	유통정책과	-	-
7 - 나 - 1	부실한 작목반 정리 및 정예화 유도	-	유통 정책과	농협
7 - 나 - 2	유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육성	-	유통 정책과	농촌 인력과
7 - 나 - 3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운영 활성화	-	유통 정책과	농협
7 - 나 - 4	농협과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과의 연계 강화	-	유통 정책과	농협
[8]	대량의 규격농산물 출하			
8 - 가	포장센터 건설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유통정책과	-	-
8 - 가 - 1	주산지의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 확대	-	유통 정책과	예산청

코드번호	사업내용 및 세부과제	총괄	주관	협조
8 - 가 - 2	포장센타를 중심으로 농가와 물류센타와의 계열화 및 운영활성화	-	유통정책과	농협
8 - 가 - 3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소규모 포장센타로 전환	-	유통정책과	농협
8 - 나	산지공판장 중심으로 산지경매 활성화	시장과	-	-
8 - 나 - 1	산지 공판장의 확대 건설	-	시장과	예산청
8 - 나 - 2	산지 공판장의 운영활성화	-	시장과	농협
8 - 나 - 3	포전매매 및 산지경매제 활성화	-	시장과	농협
8 - 다	산지 가공업체 운영활성화	가공산업과	-	-
8 - 다 - 1	산지 가공공장 건설 목표 축소 및 지원방식 개선	-	가공산업과	예산청
8 - 다 - 2	산지 가공업체 운영활성화 및 구조조정	-	가공산업과	유통공사
8 - 다 - 3	가공제품의 안정적인 판로확대	-	가공산업과	농협
[9]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9 - 가	농산물 안정성 조사 강화	유통관리과	-	-
9 - 가 - 1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조사범위 확대	-	유통관리과	농검
9 - 가 - 2	수출입농산물 등에 대한 품위 검정제도 도입	-	유통관리과	농검
9 - 가 - 3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강화	-	유통관리과	농검
9 - 나	품질인증 농산물 관리강화	유통관리과	-	-
9 - 나 - 1	고품질 농산물 및 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확대	-	유통관리과	농검
9 - 나 - 2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품질인증제도 도입	-	유통관리과	농검
9 - 나 - 3	환경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	유통관리과	농검

코드번호	사업내용 및 세부과제	총괄	주관	협조
9 - 다	농산물 품질관리체제 정비	유통 관리과	-	-
9 - 다 - 1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제 및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제 도입	-	유통 관리과	농 검
9 - 다 - 2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정	-	유통 관리과	농 검
10	효율적인 농산물물류체제 구축			
10 - 가	농산물 규격포장화	유통 정책과	-	-
10 - 가 - 1	농산물 포장·등급 규격의 정비·보급	-	유통 정책과	농 검
10 - 가 - 2	농산물의 규격포장화 및 브랜드화	-	유통 정책과	농 검
10 - 가 - 3	포장·비포장 농산물의 차별강화 및 공영도매시장 반입제한	-	유통 정책과	지자체
10 - 가 - 4	품질관리 강화로 속박이 근절	-	유통 정책과	농 협
10 - 나	일관수송 및 하역기계화 체계 구축			
10 - 나 - 1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규격에 맞는 차량적재함 보급	-	유통 정책과	건교부
10 - 나 - 2	지게차, 전동차 등 수송·하역기계화 장비 보급	-	유통 정책과	예산청
10 - 나 - 3	농산물 파렛트화(Palletization)추진 및 파렛트풀시스템 구축	-	유통 정책과	농 협
10 - 나 - 4	농산물 수송차량의 공차율 최소화로 수송 효율 제고	-	유통 정책과	건교부
10 - 다	유통시설건설 및 개보수	유통 정책과	-	-
10 - 다 - 1	신규 및 기존유통시설의 ULS 체제에 맞게 건설 및 개보수	-	유통 정책과	시장과

코드번호	사업내용 및 세부과제	총 관	주 관	협 조
10 - 라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유 통 정 책 과		
10 - 라 - 1	콜드체인시스템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확대	-	유 통 정 책 과	식품개발 연구원
10 - 라 - 1	콜드체인농산물 표시제 도입	-	유 통 정 책 과	농 검
Ⅱ	농산물 유통정보 개선			
11 - 가	수요자 위주의 농산물 유통정보 지원체계 강화	경영유통 정 보 과	-	-
11 - 가 - 1	농산물 출하전략 정보시스템 구축	-	경영유통 정 보 과	유통공사
11 - 가 - 2	소비자를 위한 유통정보 제공으로 알뜰 구매유도	-	"	유통공사
11 - 가 - 3	농산물 출하정보 전산화를 위한 EDI 시스템 도입 확산	-	"	농 협
11 - 가 - 4	유통정보 조사분석·분산 전문화	-	"	유통공사, 관리공사, 농축협, 정보센터
11 - 나	유통정보화를 위한 기반 구축	경영유통 정 보 과		
11 - 나 - 1	농산물 거래서식 및 상품코드 표준화	-	경영유통 정 보 과	유통공사
11 - 나 - 2	농업전용통신망 구축	-	"	정 보 통신부
Ⅻ	생산자조직 중심의 농산물 수급 안정			
12 - 가	적정생산과 가격안정 프로그램운영	유 통 정 책 과		
12 - 가 - 1	유통명령제 도입	-	유 통 정 책 과	농·축협
12 - 가 - 2	출하조절기획단 설치·운영	-	채 소 특 작 과	농 협
12 - 가 - 3	가격폭락시 자동개입	-	채 소 특 작 과	농 협
12 - 나	채소계약재배제도 개선·보완	채 소 특 작 과	-	-
12 - 나 - 1	주산지 중심으로 채소계약재배 확대	-	채 소 특 작 과	농 협

코드번호	사업내용 및 세부과제	총괄	주관	협조
12 - 나 - 2	사업참여조합의 경영안정장치 마련 및 사업자 관리강화	-	채소특작과	농협
12 - 나 - 3	농협이외의 영농조합법인·산지유통인 참여 확대	-	채소특작과	생산자조직
12 - 나 - 4	수집상의 포전매매에 대한 관리강화	-	채소특작과	농협
12 - 다	농업관측을 내실화하고 수급조정과 직접 연계	채소특작	-	-
12 - 다 - 1	정부와 생산자조직의 농업관측 기능 강화	-	채소특작과	농협
12 - 다 - 2	KREI 중심으로 농업관측정보의 분석·분산 기능 강화	-	채소특작과	KREI
12 - 다 - 3	농업관측과 생산조정·출하조절과 연계체제 구축	-	채소특작과	농협
12 - 라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의 제도화	유통관리과	-	-
12 - 라 - 1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의 자율화·정형화	-	유통관리과	채소특작과
13	축산물 유통개선			
13 - 가	소·돼지 유통개선	축산물유통과	-	-
13 - 가 - 1	축협과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산지유통혁신	-	축산물유통과	축협
13 - 가 - 2	축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전환	-	축산물유통과	축협

코드번호	사업내용 및 세부과제	총괄	주관	협조
13 - 가 - 3	쇠고기 전문판매점 육성 및 구분판매제 조기정착	-	축산물 유통과	-
13 - 가 - 4	수퍼, 음식점의 식육판매지원	-	축산물 유통과	-
13 - 가 - 5	축산물의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성 확보	-	가축 위생과	-
13 - 가 - 6	개방화에 맞는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	축산물 유통과	축협
13 - 나	닭, 계란 유통개선	축산 경영과	-	-
13 - 나 - 1	양계전문조합 중심의 계통출하 확대 및 계약생산체제 구축	-	축산 경영과	축협
13 - 나 - 2	양계산물의 도매가격 형성기능을 위한 공판장 건설	-	축산 경영과	축협
13 - 다	우유 유통개선	축산 경영과	-	-
13 - 다 - 1	원유수집·검사 일원화 및 품질관리 강화	-	축산 경영과	가축위생 시험소
13 - 다 - 2	낙농진흥회 설립으로 민간자율 수급 관리체제로 전환	-	축산 경영과	낙농진흥회
13 - 다 - 3	시유·유제품의 소매유통 구조 개선	-	축산 경영과	-
14	유통개혁 투자확대 및 조직정비	-	축산 경영과	-
14 - 가	유통분야 집중투입	유통 정책과		
14 - 가 - 1	공공유통투자 30% 증액		유통 정책과	예산청

코드번호	사업내용 및 세부과제	총괄	주관	협조
14 - 가 - 2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	유통정책과	예산청
14 - 가 - 3	농안기금 제도개선	-	유통관리과	-
14 - 가 - 4	생산자단체와 민간의 지원조건 해소	-	유통정책과	시장과 식량정책과
14 - 가 - 5	공공소유·민간운영방식 도입	-	유통정책과	시장과
14 - 나	조직정비 및 유통교육 강화	유통정책과	-	-
14 - 나 - 1	유통공사 기능개편	-	유통공사	-
14 - 나 - 2	농협조직 개편	-	농업금융과	농협
14 - 나 - 3	유통교육 기능강화	-	유통공사	-

IX. 1999년

國政改革報告會議

새千年 農業元年 準備

1999. 4. 3

農 林 部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목 차

I. 협동조합개혁 추진상황.....	327
II. 농산물유통개혁 본격 추진	331
III. 새천년 농업원년 준비	338

I. 협동조합개혁 추진상황

1. 협동조합개혁 추진경위

-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협동조합개혁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
 - 지난 1년동안 「협동조합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4개 협동조합별로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함과 동시에 중앙회 개편 등 공동개혁방안을 논의
 - 자체구조조정 결과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협동조합간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공동개혁방안을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정부가 밝힌대로 지난 3.8 정부가 나서서 개혁방안을 발표

2. 그동안 추진상황

- 매스컴을 통한 홍보, 설명회·간담회 및 홍보물·설명자료 송부 등을 통해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
 - 일반국민들과 많은 농업인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나, 일부 협동조합임직원들은 조직이기주의적 차원에서 반대
- '99.3.8 각계대표 28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와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40여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개혁추진 실무작업단」을 운영하여 세부실천방안과 관련법령 정비작업
 - 중앙회 통합, 일선조합의 대폭적인 통폐합, 일선 조합장 선거제도 개편 등 논란이 많은 과제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어 나가고 있음

3. 개혁방안에 대한 쟁점정리

(1) 협동조합중앙회 통폐합 과제

쟁 점

- 농·축·인삼협중앙회를 통폐합하고 그 기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
 - 축협임직원(노조 포함)과 일부 일선조합장 등은 전문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합중앙회내에 독립법인체인 농협연합회와 축협연합회를 각각 설치하자는 주장을 제기

개혁방안(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3.26 합의)

- 통합중앙회에 농업 및 유통, 축산, 신용의 3개 사업부서를 설치·운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
 - 부회장급 축산사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축산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비지 유통사업은 경종·축산분야를 통합하여 운영
 - 자금이 경제사업 부문으로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면서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독립적인 신용사업 담당 부서를 설치·운영
 - 통합중앙회장은 총괄대표권을 가지고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인 지도·교육·정보·농정활동 등의 기능을 보장하여 수행
-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에 경합되는 사업(하나로마트·클럽, 돈육·우유가공·사료사업 등)은 일선조합에 이관하거나 공동출자·공동경영방식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등 중앙회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슬림화

(2) 일선조합을 1군 1조합 원칙으로 통합하는 과제

쟁 점

- 유통 등 경제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경제사업단위로 규모화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 단기간내 1군 1조합으로 통합할 경우 부실조합의 합병으로 오히려 경영상태가 건전한 조합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고 대농업인 서비스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

개혁방안(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3.26 합의)

- 1군 1조합 원칙으로 하되 경제권·생활권 등 지역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통합원칙과 기준을 정한 다음 구체적인 실천계획 마련
 - 조합이 더욱 건실화되도록 철저한 실사를 거쳐 통합하고, 경제사업 중심의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
 - 유통경제사업 비중을 높이고(유통사업비중 24 → 50%, 신용사업비중 70 → 40%) 지도 및 정보사업은 더욱 강화되도록 육성
 - 읍·면단위 현 일선조합은 지소·출장소 등으로 전환하여 농업인 서비스 기능 보장
- 통합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유통·경제사업과 상호금융 금리인하 등에 사용되도록 하여 그 효과를 조합원에게 환원

<일선조합·중앙회 통합효과 (농촌경제연구원 분석)>

- 통합초기 3개년간 약 2조원의 순편익이 발생하고 상호금융 금리도 10%이하로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농가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추정

* 농협중앙회는 인력감축·고정자산매각 등으로 약 1,500억원의 이차보전재원을 마련, 약 4조원(조합원 가구당 3백만원)을 현재의 상호금융금리 13.25%보다 낮은 9.75%로 4.10부터 지원 예정

(3) 일선조합장 선거제도 개편과제

쟁 점

- 과열선거 및 경영능력이 부족한 조합장이 선출될 수 있는 등 폐해가 있는 직선제 원칙의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는 의견과 민주화 과정에서 얻어진 직선제원칙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립
 - 현재는 직선제와 대의원 총회에서 간선제중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조합이 직선제를 채택(1,442개중 29개 조합만 간선제)

개혁방안(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3.26 합의)

- 조합장 선거제도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조합장에 의하여 책임 경영체제가 확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
-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조합이 선택하도록 하되 직선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선거관리기능 및 조합장의 경영책임 강화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강구
 - 조합장이 대표권과 함께 실질적인 경영권을 동시에 행사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강구
- 조합장선거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농업인조합원과 외부인이 참여하는 경영평가단을 설치,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감시체제를 보장

◇ '99.4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최종 개혁방안을 확정하고 '99 상반기중 관련법률 개정완료를 목표로 추진

II. 농산물유통개혁 본격 추진

1. 농산물유통의 현황과 과제

- ◇ 쌀은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브랜드 출하가 확대되어 유통 마진이 매우 낮은 16% 수준
- ◇ 과일류는 산지유통센터 확충과 포장규격화 지원으로 포장화율이 90%이상이고 평균마진율은 48% 수준
- ◇ 채소류는 상품의 특성 및 유통구조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

□ 무·배추 등 채소류는 상품의 특성상 유통비용 과다 발생과 수급불안요인 내재

- 소비는 연중 일정한데 비하여, 생산·출하는 계절적 또는 기상여건에 따라 풍흉이 심하여 수급불안요인이 상존
-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고 부패·변질이 쉬워 물류비가 높음.

□ 유통구조상 해결해야 할 「고비용·저효율」의 문제점이 상존

- 산지 :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영세한 생산농가로부터 생산되고 품목별 생산자의 조직화도 미흡하여 소량·분산출하
- 도매 : 도매시장의 경직된 거래제도 및 낙후된 물류시스템
- 소매 : 높은 임대료·인건비, 소규모경영 등으로 유통마진 과다(50%)
 - 산지에서 포기당 370원 하는 고랭지배추가 2,000원에 소매되는데 고정적인 유통비용이 1,010원 수준으로 산지가격이 폭락하더라도 소매가격 하락은 미미

□ 소비자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영농의식은 이를 따르지 못해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신 상존

2. 채소류의 상품특성상 문제점 해결방안

- ◇ 수급불안과 부피가 크고 부패·변질이 쉬운 상품특성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수급안정제도를 정착하고 규격포장화, 하역기계화 및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하여 해결

① 새로운 수급안정제도 정착

- 「농·소·상·정」이 중심이 되어 생산·출하 등을 자율조절하는 유통협약 실시(양파) 및 경영비 수준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예시제(가을무·배추, 마늘, 양파) 도입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안정
 - 재배면적·기상조건에 따라 일시적·계절적으로 가격등락이 심하고 자율적인 유통협약만으로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근본적인 수급안정에 한계
 - '98.7월초 5톤 트럭당 70만원까지 폭락한 고랭지 배추가 집중호우로 부패·폐기량이 많이 발생하여 한달후인 8월말에는 750만원으로 10배 폭등
- 생산계획 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토록 하는 수급안정제도를 강화
 - 「농업관측센터」를 설치('99.1)하여 생산·출하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재배면적·출하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적기 제공
 - 유통협약 품목을 양파에서 무·배추·마늘까지 확대하고, 필요시 이를 강제적으로 조절하는 유통명령제 도입
 - 가격예시제 품목을 점차 확대 실시 : 봄배추(85원/kg), 봄무(90원)에 대해서 실시중
- 수출확대 등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 수급안정에 기여
 - 김치수출 55백만불 달성으로 세계 김치시장의 70% 점유

② 규격포장화 및 하역기계화 촉진

- 물류센터에서의 하역기계화율은 15% 수준까지 제고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규격포장 및 기계화 하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미비
 - 증가된 유통예산으로 규격포장화 및 기계화 적재·하역(파렛트화)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
 - 무·배추에 대해서는 박스형 파렛트이용료(매당 3,500원중 3,000원)를 지원하고, 수박 등에 대해서는 대형 8각형 포장박스 구입비(개당 1,900원중 1,580원)를 지원(60억원)하는 한편 - 비포장 농산물의 공영도매시장 반입제한('99:마늘, 2000:월동 배추)을 병행하여 포장규격 출하를 유도
 - 파렛트·지게차의 보급을 확대(58억원 → 144)하고, 하역 노조에 의한 현 하역방식 개선
- ⇒ 2002년까지 규격포장화, 기계하역율을 50% 수준으로 제고

③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및 가공처리 확대

- 주산지에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마늘·양파 등 양념채소류의 장기간 보관은 가능해 졌으나 저온수송체계 및 도매시장의 저온저장시설은 미비하여 콜드체인에 의한 유통이 저조한 실정
- 산지 저온저장고를 계속 확충하고, '99년부터 냉장탑차 및 기존 도매시장 내의 저온저장시설 설치 등을 본격 지원(280억원)하여 채소류의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 김치가공공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배추의 가공 또는 반가공처리 유통량을 현재 생산량의 20%(50만톤)에서 2002년까지 30%수준으로 제고

3. 채소류의 유통단계별 문제점 해결방안

◇ 산지·도매·소매의 유통단계별 문제점은 협동조합 중심의 산지유통혁신, 도매시장거래제도 다양화 및 물류효율화, 직거래 확대 및 소매유통개선 등으로 해결

1] 산지단계 : 협동조합중심으로 산지유통혁신

- 소량·분산출하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유통센터 등을 확충('98까지 112개소)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출하를 확대해 왔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
 - 공동출하율은 41%에 불과(일본 78%)하고, 브랜드 출하율은 10% 미만
 - 협동조합개혁과 연계, 규모화·전문화 된 일선협동조합이 생산단계부터 품목단일화, 영농지도, 공동출하·브랜드화 유통 및 출하조절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유통 혁신
 - 산지유통센터를 거점으로 기계화·자동화에 의한 선별·포장·브랜드 출하비율을 10% 수준에서 2002년 40% 이상으로 제고
 - 산지유통센터 정비·확충(112 → 220개소), 포장화 및 브랜드개발 지원
 - 주산지 협동조합에 계약재배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적시·적소 배송을 위한 농협의 수송망 체계 확충
 - 계약재배자금 : ('98) 2,810억원(37만톤, 6%) → ('99) 3,000(42만톤, 7%)
 - 유통사업자금 지원방식도 품목별·농가별 지원에서 일선 조합을 통한 종합지원방식으로 전환('99년 3,000억원)
 - 농업기술센터·도매시장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일선협동조합을 생산·유통의 지역정보센터화
- ⇒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출하비율을 2002년까지 60% 수준으로 제고

② 도매단계 :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및 물류효율화 촉진

- 공영도매시장을 확충(18개소)한 결과, 공영도매시장을 통한 거래량이 47%(570만톤) 수준으로 확대
 - 경매에 의한 거래만 하도록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출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고, 형식적인 경매 등 부조리가 있어 경매에 대한 불신이 상존
 - 공영도매시장 거래방식을 다양화하여 출하자 선택기회 확대
 - 현재의 경매제도 외에 도매상제도를 지방도매시장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택하에 시범실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개방
 - 중앙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원칙으로 하되, 출하자의 선택에 따라 수의매매거래가 가능한 품목을 대폭 확대
 - 경매예외품목('99.1) : 서울가락시장(90→110개), 구리시장(54→81개)
 - 도매시장의 고비용구조를 타파하고 부조리 근절
 - 200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14개 도매시장은 기계하역시설과 정보화 시스템을 갖춰 건설하고, 기존도매시장의 하역시설 개선을 본격 추진
 - 2002년까지 경매가 실시되는 모든 도매시장에서 전자경매가 실시되도록 하여 경매비리 근절
 - (현재) 서울·대전 2개법인 → (2000) 20개법인 → (2002) 전면실시
 - 전 도매시장의 정보망 구축, 도매시장 가격정보의 실시간 제공 (real time) 및 출하예약제 도입으로 도매시장간 출하량이 조절되도록 하여 시장간 轉送 및 이중경매를 최소화, 유통비용 축소
- ⇒ 공영도매시장 거래비율을 2002년까지 55% 수준으로 제고하고 비용감축

③ 소매단계 : 직거래 확대 및 소매유통개선

□ 물류센터, 직거래장터, 도·농 자매결연 장터 개설 및 차량 순회판매 등 다양한 직거래를 추진한 결과 직거래 비중이 '97년 5%에서 '98년 12% 수준(4.5조원)으로 확대

○ 직접적인 유통비용 절감(1조원)과 인근 도·소매상의 가격인하 효과

□ 보다 다양한 직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직거래 비중을 확대

○ 물류센터는 현재의 4개소 외에 '99년중 5개소(천안·군위·전주·용인·성남)를 추가 개장하고 8개소 건설 추진

○ 중소도시 중심으로 농업인이 참여하는 새로운 직거래형태인 Farmers' Market이 2002년까지 150개소가 운영되도록 지원

○ 생산자단체의 전자쇼핑몰을 개설하고 민간의 전자쇼핑몰과 연계한 종합쇼핑몰을 만들어 농산물 Cyber Market 개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생산자협동조합간의 연계를 유도('99)

□ 민간식품 소매유통업체의 대형화·체인화·직거래로 소매 단계 유통마진 축소

○ 물류센터의 직배송 가맹점(326개소)을 확대하고, 민간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점포를 직판점으로 활용(예 : 롯데마그넷)

○ 민간유통업체가 산지 유통센터와 직거래 할 경우 저리자금 지원('99년 100억원)

⇒ 농산물거래액중 직거래 비중을 200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

4. 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농업인들의 의식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변화되도록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안전성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출하 연기·폐기 등 조치를 강화
 - 안전성조사 : ('96) 750점(33개품목) → ('97) 3,557(58) → ('98) 10,607(80)
- 원천적으로 생산·출하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에 대한 지도와 조사를 강화하여 부적합한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
 - 유통단계 안전성조사 기준외에 생산단계의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농약잔류검사를 강화
 - 산지에서부터 부적합품 사례가 많은 들깨잎, 상추 등 신선채소류 25개 품목을 중점 지도
 - 안전성 부적합률을 4% 수준에서 2002년까지 1% 미만으로 축소
 - 근본적으로 농약·비료를 적게 쓰는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보급과 친환경직불제를 확대
 - 친환경농산물 표시제를 정착하고 판로·판매망 확충 지원

- ◇ 대폭 확대되는 유통예산은 시설확충보다는 광역화된 협동조합의 유통예산지원과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소프트웨어 위주로 집중투자 되도록 하여 유통개혁을 뒷받침
- ◇ 협동조합개혁을 조기 완수하여 농·축산물 산지유통 및 정보화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협동조합 공동출하율을 현재 41%에서 2002년까지 60% 수준으로 제고
- ◇ 「농안법」 개정안이 조기에 통과되도록 하여 새로운 가격안정 제도 도입과 도매시장 거래제도개선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

Ⅲ. 새천년 농업원년 준비

1. 우리농업·농촌의 새로운 여건 및 전망

- 「개방과 경쟁」이 가속화(‘99년말 WTO 차기협상 시작, 2001년 쇠고기 시장개방)됨에 따라 가격지지·수입제한 등 보호위주에서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시장지향적 정책으로 전환이 불가피
- 토지·노동·자본이 생산요소로 중시되던 산업사회에서는 농업의 비교우위성이 열악하여 농업경시풍조가 팽배했으나 신지식·생명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응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식기반 농업으로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
 - 미래는 농업과 첨단과학의 접목이 가시화되는 시대(앨빈 토플러)
- 농업노동력의 감소·고령화·여성화 추세에 대응한 기계화·정보화·협동화도 진전될 전망
- 국민소득증가로 식품소비구조가 고도화·다양화됨에 따라 식품안전성, 품질 차별화, 유통 및 가공방법의 다양화 등 비가격적 경쟁요소의 중요성이 대두
 - 생산은 量 위주의 공급자 중심에서 質 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 편의식품과 가공·외식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맞춤식품」과 기능성 식품 등 다품목 소량유통체제의 성장도 두드러질 전망
- 농업과 농촌에 대한 공익적·다면적 기능이 중시되어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통일 시대에 대비한 농정수요가 증대

2. 새천년맞이 농정 기본방향

◇ 지식·기술·정보를 생산요소로 삼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농업의 우위성을 확보하여 선진농업 실현

< 농업·농업인·농촌의 미래상 >

20C 산업사회	21C 지식기반사회
· 농 업 : 비교열위산업	지식농업으로 우위성 회복
· 농업인 : 사회적으로 경시	지식농업인으로 어엿한 경제주체
· 농 촌 : 문화·교육여건 및 SOC열악	삶의 질이 높은 쾌적한 생활공간

3. 중점 추진과제

(1)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 21세기를 대비하여 수립한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45조원 농업·농촌투융자 세부실천계획을 확정('99.4)
 - 새로운 농업·농촌여건에 부응한 투융자방향을 정립
 - 품목·사업·하드웨어 → 사람·경영·소프트웨어 중심
 - 가격지지 중심의 소득안정 → 시장기능 중심의 소득·경영안정
 - 증산정책 중심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 공익적 기능 증대
 - 농업인들의 정부의존적인 의식을 변화시키는 정책은 확대하고, 국제관행과 시장기능을 왜곡하는 정책은 전환 또는 축소
- 경쟁제한적인 규제개혁과 각종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불편 해소
 - 농업금융자금의 연대보증 개선 및 연체이자 인하 등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규제 및 관행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
 - 지난해에는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폐지에 중점을 두고 농림분야 규제 991건중 51%인 507건을 폐지하고 253건을 완화

(2) 기술·시장혁신과 신지식농업인 육성으로 지식농업 실현

- 전통농업기술과 생명과학 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미래형 기계화·정보화 농업을 육성
 - 농업분야 연구개발비를 농업 GDP의 2%(4천억원)수준까지 확대하고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촉진
 - 「산·학·관·연」 협력강화로 현장중심의 실용적인 기술개발
- 농촌의 정보통신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유통에 정보기술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증대와 유통혁신 가속화
 - 농가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지원, 가족농과 여성농업인 위주의 정보화교육 확대(2004년까지 15만명), 「농업정보 119 서비스」 확대 등으로 Cyber Market 활성화 도모
- 신지식농업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이들의 사례를 농업인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를 유도
 -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계획에 농업분야도 포함시켜 신지식농업인의 창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

(3) Agri-business(농업관련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 국내농업과 연관성이 큰 농산물가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신규 경영체설립 위주에서 기존경영체의 경영혁신·구조조정을 우선하여 경쟁력 강화
 - 협동조합 주도의 가공 및 전통식품 판매점 설치 및 판촉 지원
- 종자·종묘, 농기계·농약·비료 등 농업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
 - 농업기자재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고용 창출

(4)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

- 토양·수질오염이 최소화되도록 2004년까지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30% 수준이상 절감
 - 병해충종합방제(IPM)와 작물양분종합관리(INM) 체제를 정착하고 미생물농약 개발·보급 및 천적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확대
 - 들녘별·필지별 토양의 특성을 조사, 이를 DB화하여 체계적인 토지이용·토양개량·시비관리 등을 지원('99)
- 친환경농업의 조기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 품질인증제 확대로 공신력 제고
 - 한국형 가족농의 특성을 살린 유기농 등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

(5) 식량안보시대에 대비한 주곡자급기반 마련

- 쌀자급에 필요한 우량농지확보(110만ha)와 수리시설확충 등 재해대비 생산기반정비 조기 완료
 - 우량농지는 타용도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산업용 등 비농업용 토지는 가급적 산지를 활용토록 유도
 - 상습적인 재해대비 생산기반정비 사업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물 부족시대에 대비 물살리기 운동과 물관리자동 시스템의 실용화 추진
 - 쌀 등 주곡의 생산과 저장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
- WTO협정에 따라 쌀수매 지원금이 축소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선진국들이 널리 채택하고 있는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를 확대 도입, 현재의 “쌀 약정수매제”를 보완

(6) WTO 차기 농산물협상 및 통일대비 농정추진

- '99년말부터 본격 시작될 차기 WTO협상은 농업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가운데 일본이 쌀관세화로 전환하는 등 협상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므로 철저히 대비
 - WTO 등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EU 등 주요국과 공조체제를 확립
 - 차기 WTO협상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급 상당의 협상책임자를 농림부에 두고, 협상전담직원의 고정배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통상전문변호사 활용 등으로 협상역량 제고
 - 일본은 농림수산성, 미국은 농무성에서 협상총괄 차관급 운영
- 남북 농업교류·협력은 남북한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초적인 수단이고 통일에 대비하여 식량안보와 직결되므로 철저히 준비
 - 남북관계개선 단계에 따라 농업기술협력·계약재배·농업분야 공동개발 및 합작투자 등의 교류·협력추진

(7) 삶의 질이 높은 쾌적한 농촌사회 건설

- 도시수준에 접근하는 농촌생활환경개선과 교육·의료 등 농업인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의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
 - 전통문화자산의 DB화 및 녹색관광(green tourism)·농촌지역 체험학습장 운영활성화 등으로 전통문화와 농업환경이 상품화되도록 하고 다양한 도·농교류사업 촉진

◇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는 각오로 농업분야 제2건국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 국민을 감동시키는 농업실현 ◇

